##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현황 통계분석

여유진

한국보건시회연구원

## 머리말

빈곤은 인간의 복지를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인이며 다른 저해 요인들을 직간접으로 매개하는 촉매 요인이기도하다. 복지국가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빈곤이 또다시 강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빈곤을 예방하거나, 빈곤에 대응하여 최소한의 인간답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에서는 나름의 공공부조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다. 공공부조제도는 그러나양날의 칼과 같아서 한편으로는 수혜자 집단과 비수혜자 집단 간의 형평성문제와 근로유인 문제 등의 논란을 끊임없이 유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다른 소득보장제도의 정착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거나 실제보다 과장되고 부풀려지기 마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의 쏠림'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러한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다.

본 보고서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상의 기초보장 수급자와 치상위계층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받고 있는 급여 현황과 수준 등을 비교·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과 문제들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여유진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보고서 집필 과정에서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보건복지부 기초보장과 권병기 과장, 한영규 사무관, 강혜경주무관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박경만 주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이태진 연구위원, 최현수 부연구위원과 성실하게 자료를 정리해 준 송치호, 권영혜 연구원에게도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1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
제3절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6
제2장 분석 가구의 특성 및 분류	11
제1절 분석 대상 가구 선정	11
제2절 분석 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14
제3절 가구 유형, 자산, 급여의 분류	18
제3장 자산 실태	35
제1절 전체 가구의 자산 실태	35
제2절 노인 · 장애인 가구의 자산 실태 ·····	39
제3절 한부모가구의 자산 실태	51
제4절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가구의 자산 실태	59
제4장 복지급여 수급 실태	······ 73
제1절 전체 가구의 수급 실태	73
제2절 노인 · 장애인 가구의 수급 실태 ·····	······ 79
제4절 한부모가구의 수급 실태	91
제5절 대학생 또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수급 실태	99
제6절 2차 추출 결과 복지급여 수급 실태	111
제7절 종합	119
제5장 결론 및 제언	129
제6장 부표	135

## 표 목차

## Contents

〈표 3-8〉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비율:
장애인 1인가구50
⟨표 3−9⟩ 가구유형별 소득인정액: 한부모 2인가구 54
〈표 3−10〉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비율:
한부모 2인가구 54
$\langle { { m \Xi } } \; 3{-}11  angle \;$ 가구유형별 소득인정액: 한부모 $3$ 인가구 $58$
⟨표 3−12⟩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비율:
한부모 3인가구58
⟨표 3−13⟩ 가구유형별 소득인정액: 대학생이 있는 가구 62
⟨표 3−14⟩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비율:
대학생이 있는 가구62
〈표 3−15〉 가구유형별 소득인정액: 이동 1인을 포함한 3인가구 65
⟨표 3−16⟩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비율:
아동 1인을 포함한 3인가구65
$\langle$ 표 $3-17 angle$ 가구유형별 소득인정액: 이동 2인을 포함한 $4$ 인가구 $\cdots$ $68$
⟨표 3−18⟩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비율:
아동 2인을 포함한 4인가구69
$\langle \Xi \ 4-1  angle$ 주요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전체 가구 $75$
〈표 4-2〉 기타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 수급갯수 및 수급률:
전체 가구76
$\langle { { m H} }   4-3  angle $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전체 가구 78
$\langle \Xi \ 4-4  angle$ 주요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노인 1인가구 80
〈표 4-5〉 기타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 수급갯수 및 수급률:
노인 1인가구81

$\langle$ 표 $4-6 angle$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노인 $1$ 인가구 $82$
$\langle \Xi 4-7  angle$ 주요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노인 2인가구84
〈표 4-8〉 기타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 수급갯수 및 수급률:
노인 2인가구85
$\langle \pm 4-9 \rangle$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노인 2인가구 $86$
$\langle \pm 4-10  angle$ 주요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장애인 1인가구88
$\langle \pm 4-11  angle$ 기타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 수급갯수 및 수급률:
장애인 1인가구89
$\langle$ 표 $4-12 angle$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장애인 $1$ 인가구 $\cdots$ $90$
$\langle \pm 4-13  angle$ 주요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한부모 2인가구92
$\langle \pm 4-14 \rangle$ 기타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 수급갯수 및 수급률:
한부모 2인가구93
$\langle$ 표 $4-15 angle$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한부모 $2$ 인가구 $\cdots$ $94$
$\langle { {\rm I\! E} }   4 - 16  angle $ 주요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한부모 3인가구96
$\langle \pm 4-17 \rangle$ 기타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 수급갯수 및 수급률:
한부모 3인가구97
$\langle$ 표 $4-18 angle$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장애인 $1$ 인가구 $\cdots$ $98$
$\langle \pm 4-19  angle$ 대학생이 있는 가구의 수급유형별 평균 가구원수99
⟨표 4−20⟩ 주요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대학생이 있는 가구100

## Contents

$\langle \pm 4-21  angle$ 기타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 수급갯수 및 수급률:
대학생이 있는 가구101
⟨표 4−22⟩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대학생이 있는 가구102
⟨표 4−23⟩ 주요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아동1인포함 3인가구104
⟨표 4−24⟩ 기타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 수급갯수 및 수급률:
아동1인포함 3인가구 105
⟨표 4−25⟩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아동1인포함 3인가구106
〈표 4-26〉 주요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아동2인포함 4인가구 108
$\langle \pm 4-27  angle$ 기타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 수급갯수 및 수급률:
아동2인포함 4인가구 109
$\langle \pm 4-28  angle$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장애인 $1$ 인가구 $\cdot$ $110$
$\langle \pm 4-29  angle$ 복지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112$
$\langle \pm 4-30  angle$ 가구유형 $\cdot$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113$
$\langle \pm 4-31  angle$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가구주 성별115
$\langle \pm 4-32  angle$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가구유형 $115$
⟨표 4−33⟩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주거유형 116
$\langle \pm 4-34  angle$ 수급유형 및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소득인정액 $117$
$\langle \pm 4-35  angle$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복지급여 현황(평균) $118$
〈표 4-36〉 공적이전 전후 소득변화(평균)119
〈부표 $  -1 \rangle$ 수급유형별 소득: 전체 가구(단위: 원) 135
〈부표 I-2〉 수급유형별 소득: 노인 1인가구(단위: 원) ················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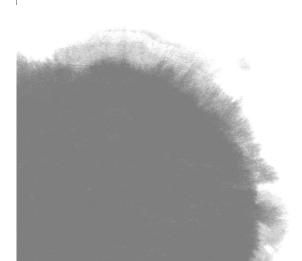
$\langle$ 부표 $\mid$ $-3 \rangle$ 수급유형별 소득: 노인 2인가구(단위: 원) 137
$\langle$ 부표 $\mid -4 \rangle$ 수급유형별 소득: 장애인 $1$ 인가구(단위: 원) $138$
〈부표   $-5$ 〉 수급유형별 소득: 한부모 2인가구(단위: 원) 139
〈부표 $ -6\rangle$ 수급유형별 소득: 한부모 3인가구(단위: 원) 140
〈부표 $\mid -7 \rangle$ 수급유형별 소득: 대학생이 있는 가구(단위: 원) $141$
⟨부표   −8⟩ 수급유형별 소득:
아동 1인을 포함한 3인가구(단위: 원) 142
⟨부표  −9⟩ 수급유형별 소득:
아동 2인을 포함한 4인가구(단위: 원) 143
〈부표 $\parallel -1$ 〉 수급유형별 재산: 전체 가구 $144$
〈부표 $II-2$ 〉 수급유형별 재산: 노인 $1$ 인가구 $145$
〈부표 $II-3$ 〉 수급유형별 재산: 노인 2인가구 $146$
〈부표 $II-4$ 〉 수급유형별 재산: 장애인 $1$ 인가구 $147$
〈부표 $II-5$ 〉 수급유형별 재산: 한부모 2인가구 $148$
〈부표 $II-6$ 〉 수급유형별 재산: 한부모 3인가구 $149$
〈부표 $II-7$ 〉 수급유형별 재산: 대학생이 있는 가구 150
〈부표 $II-8$ 〉 수급유형별 재산: 아동 $1$ 인을 포함한 $3$ 인가구 $151$
〈부표 $II-9$ 〉 수급유형별 재산: 아동 2인을 포함한 4인가구 $152$
〈부표 $   -1\rangle$ 수급유형별 복지급여 수급액: 전체 가구 $153$
<부표 $   -2\rangle$ 수급유형별 복지급여 수급액: 노인 $1$ 인가구 $155$
〈부표 III $-3$ 〉 수급유형별 복지급여 수급액: 노인 2인가구 $157$
〈부표 III $-4$ 〉 수급유형별 복지급여 수급액: 장애인 1인가구 159
〈부표 $   -5\rangle$ 수급유형별 복지급여 수급액: 한부모 2인가구 $161$
〈부표 III $-6$ 〉 수급유형별 복지급여 수급액: 한부모 3인가구 $163$
〈부표 $   -7\rangle$ 수급유형별 복지급여 수급액: 대학생이 있는 가구 $165$
〈부표 $   -8\rangle$ 수급유형별 복지급여 수급액: 아동 $1$ 인 포함 $3$ 인가구 $167$

## Contents

〈부표	III-9>	수급유형별 복지급여 수급액: 아동 2인 포함 4인가구 169
〈早班	IV−1>	(2차 추출 결과)가구특성별 소득인정액171
〈毕班	<b>IV</b> −2>	(2차 추출 결과) 가구특성별 복지급여 수급액 173
〈毕班	I <b>V</b> -3>	(2차 추출 결과) 가구특성별 복지급여 수급가구의
		급여액
〈毕班	$ V-4\rangle$	(2차 추출 결과)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변화 177
〈毕丑	IV-5>	(2차 추출 결과) 가구특성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변화 178
〈毕班	<b>V</b> −1>	(2차 추출 결과) 수급유형에 따른 근로능력유무별
		소득인정액 182
〈毕班	<b>V</b> -2>	(2차 추출 결과)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근로능력유무별
		복지급여 수급액183
〈毕班	<b>V</b> -3>	(2차 추출 결과)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근로능력유무별
		수급가구의 급여액184
〈毕班	<b>V</b> −4>	(2차 추출 결과) 기초보장 비수급 가구의
		근로능력유무별 복지급여 수급액 185
〈毕班	<b>V</b> –5>	(2차 추출 결과) 기초보장 비수급 가구의
		근로능력유무별 수급가구의 급여액186
〈毕표	<b>V</b> -6>	(2차 추출 결과) 수급유형에 따른 근로능력유무별
		공적이전전후 소득변화 187

## 그림 목차

[그림 2-1] 수급유형별 평균 가구원수16
[그림 3-1] 수급유형별 소득 및 재산 분포: 전체 가구36
[그림 3-2] 수급유형별 자산 실태: 전체 가구37
[그림 3-3] 수급유형별 소득 및 재산 분포: 노인 1인가구 40
[그림 3-4] 수급유형별 자산 실태: 노인 1인가구 41
[그림 3-5] 수급유형별 소득 및 재산 분포: 노인 2인가구 44
[그림 3-6] 수급유형별 자산 실태: 노인 2인가구45
[그림 3-7] 수급유형별 소득 및 재산 분포: 장애인 1인가구48
[그림 3-8] 수급유형별 자산 실태: 장애인 1인가구
[그림 3-9] 수급유형별 소득 및 재산 분포: 한부모 2인가구52
[그림 3-10] 수급유형별 자산 실태: 한부모 2인가구53
[그림 3-11] 수급유형별 소득 및 재산 분포: 한부모 3인가구 56
[그림 3-12] 수급유형별 자산 실태: 한부모 3인가구57
$[$ 그림 $3-13$ $]$ 수급유형별 소득 및 재산 분포: 대학생이 있는 가구 $\cdots$ $60$
[그림 3-14] 수급유형별 자산 실태: 대학생이 있는 가구61
[그림 3-15] 수급유형별 소득 및 재산 분포:
아동 1인을 포함한 3인가구63
$[$ 그림 $3-16$ $]$ 수급유형별 자산 실태: 아동 $1$ 인을 포함한 $3$ 인가구 $\cdots$ $64$
[그림 3-17] 수급유형별 소득 및 재산 분포:
아동 2인을 포함한 4인가구66
$[$ 그림 $3-18$ $]$ 수급유형별 자산 실태: 아동 $2$ 인을 포함한 $4$ 인가구 $\cdots$ $67$
$[$ 그림 $4-1$ $]$ 수급유형별 기초보장외 복지급여의 수혜율과 급여액 $\cdots$ $123$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각종 지원이 집중되어 수급자가 탈수급시 지원의 감소로 탈수급을 꺼리게 되는 빈곤함정이 심각하다는 인식 확산
    -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저소득층 지원 현금·현물급여 및 서비스를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에게 분산하려는 움직 임 증가

#### [2011년 연두 업무보고 中]

수급자에게 집중 지원되는 각 부처 사업을 탈수급 가구에게 분산지원하기 위한 연계·조정 방안 마련

- 이와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 및 치상위 계층이 지원받고 있는 지원의 규모와 수준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 적인 실태 파악은 거의 이루어진 바 없음.
  - 효과적인 제도 정비를 위해 우선 수급자가 지원받는 각종 지원의 규모파악 및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수급자에 대한 '지원의 집중'이 회자되고 있는 반면 정확한 지원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가구유형별로 지원 규모나 형태가 다양하고, 각 부처 및 지방 자치단체 별로 지원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종합적인 실태파악 이 곤란

#### □ 연구 목적

- 특정 집단에 대한 복지지원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효 과적인 복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통계 구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빈곤충(차상위계충)등 빈곤층 유형 별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수준 비교 분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 실태 파악과 통계자료를 기반 으로 적절한 지원 수준의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저소득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되는 각종 급여 및 서비스 현황을 파악할 필요
  - 공공부조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된 『빈곤정책 제도개선 기획단』 의 빈곤정책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탈빈곤 및 빈곤 예방·보호 등 정책 방향 제시, 욕구별·빈곤 유 형별·인구범주별 정책 대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비수급 빈곤층·차상위계층에 대한 각종 현금 지원 실태 파악
  - 부처별 및 지자체의 지원 유형 및 대상 파악
    - (보건복지부) 장애이동수당,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 금,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

#### 원 등

- (교육과학기술부) 차상위계층 장학금지원,
- (지식경제부) 난방연료 긴급지원, 저소득층 연탄보조 등
- 가구유형별 현금지원의 형태 및 규모 파악
  - 가구주 근로능력 유무별
  - 가구주 성별
  - 가구특성별(노인·장애인·한부모)
- 수급자 유형별 복지지원에 대한 현황 통계 작성
  - 기초보장수급 · 비수급 빈곤층 · 차상위계층
- 이러한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설계의 방향 모색 자료로 활용
- 2. 연구방법
- 가. 사회통합전산망 및 지자체의 저소득층 지원 실태 조사
- □ 실태 조사 방법
  - 1차 조사
    -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한 대상자 추출(20,000가구)
    - 기초수급자, 신청후탈락자, 차상위대상자를 각 지역별로 구분한 값으로 추출함
    - 1차 추출 결과 표본이 편포되어 재추출(2차 추출)을 실시함.
  - ※ 1차 추출과 2차 추출은 다소의 시차를 두고 실시되었음.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서는 1차 추출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참고자료로 2 차 추출 결과도 부분적으로 반영하였음.
  - 2차 조사
    - 조사대상: 1차 추출 결과 표본대상 2만가구
    - 조사방법: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지원 실태조사

- 조사내용: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지 않는 지자체 지원 및 타 부처의 지원 내역 파악

#### 나. 실태조사 결과 통계분석

#### □ 분석대상

- 자료출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및 지자체 조사 결과
- 분석대상: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이하 수급가구), 수급신 청후 탈락가구(이하 신청탈락가구), 차상위 자격대상 가구(이하 차상 위가구)

#### □ 분석방법

- 수집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가구유형별 복지지원 현황 분석
- 수급자 및 비수급빈곤충·차상위계층간의 지원 현황 비교 분석

#### 제3절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 기대 효과
- □ 특정 집단에 대한 정책지원 쏠림 현상 방지, 효율적인 복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통계 구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빈곤층(차상위계층)등 빈곤층 유형별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수준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지원 수준의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 탈빈곤 및 빈곤 예방・보호 등 정책 방향 제시
  - 욕구별·빈곤유형별·인구범주별 정책 대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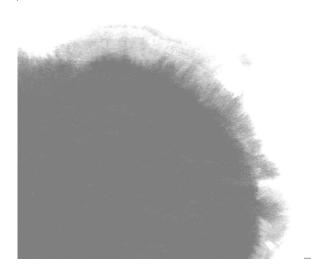
- □ 빈곤정책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지원받는 각종 지원의 규모파악 및 실태 파악
  -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외에 다른 법에 근거한 부가지원 현황 파악
- □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의 전반적 설계 방향에 대한 모색 자료로 활용

7

제1장 서로

# 02

분석 가구의 분류 및 특성



## 제2장 분석 가구의 분류 및 특성

#### 제1절 분석 대상 기구 선정

- 1. 1차 추출 결과 분석 대상 가구
- □ 지역별·수급유형별 가구 빈도 및 비율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각각 1만가구(50%), 6천가구(30%), 4 천가구(20%)를 추출하여, 총 2만 가구 추출
  - 이 중 기초수급자(시설수급자 포함) 1만가구, 수급신청 후 탈락자(보 장중지자 포함) 5천가구, 그리고 차상위급여 대상자 5천가구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됨.

⟨표 2-1⟩ 지역별・수급유형별 빈도 및 비율

(단위: 가구, %)

			(セカ. / ۲ ۲ , 1
모수추출구분	빈도	비율	누적비율
대도시 기초수급자	5,000	25.0	25.0
중소도시 기초수급자	3,000	15.0	40.0
농어촌 기초수급자	2,000	10.0	50.0
대도시 수급신청후탈락자	2,500	12.5	62.5
중소도시 수급신청후탈락자	1,500	7.5	70.0
농어촌 수급신청후탈락자	1,000	5.0	75.0
대도시 차상위대상자	2,500	12.5	87.5
중소도시 차상위대상자	1,500	7.5	95.0
농어촌 차상위대상자	1,000	5.0	100.0
<u>합</u> 계	20,000	100.0	

#### □ 분석 대상 가구의 재분류

- 집단 간 비교를 위하여 집단 구분에 혼란을 주거나, 결과의 해석을 오도할 수 있는 사례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가구원수가 10인 이상인 기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
    - 특히, 시설수급자가 아닌 기구원 중 10인 이상 가구(61가구<sup>1</sup>)) 는 미인가 복지시설의 수급자일 가능성이 높고, 가구당 급여액 이 높아 분석 결과 해석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함.
  - 시설 수급자, 특례 수급자, 기타(분류 불분명)의 경우도 분석 대 상에서 제외함.
    - 시설 수급자(4,864기구)의 경우 시설 생계급여와 각종 시설 단위 급여를 받고 있어 개인별·기구별 급여액을 왜곡할 기능성이 높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단, 가구원 중 일부가 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분석 대상에 포함함.
    - 특례 수급자의 경우 사례 수가 적고(43기구), 일반 수급자에 비해 소득이 높고, 현금급여를 거의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 석 대상에서 제외함.
    - 기타 행복이음 데이터상 분류가 불명확한 가구(18가구)도 분석 에서 제외됨.
- 본 연구가 기초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의 비교에 주안점을 둔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산 수준이 높은 일부 가구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액)이 최저생 계비의 200%<sup>2)</sup> 미만이 넘는 가구(1,873가구)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sup>1)</sup> 일부는 시설수급자로 분류되어 있고, 일부는 일반수급자로 분류되어 있음.

<sup>2)</sup> 소득인정액을 선정 기준으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제도들 중 최대 기준(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임.

- 최종적인 분석 대상 가구는 다음 표와 같음.
  - 본 연구에서는 자산과 급여 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 가 구를 "기초보장 수급가구"(이하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 상위가구"로 분류함.
    -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대상가구가 각각 4,894가구 (37.2%), 3,917가구(29.7%), 4,363가구(33.1%)임.
  - 수급가구에는 일반 수급가구와 조건부 수급가구가 포함되어 있음.
    - 신청탈락가구에는 기초보장 수급을 신청하였으나,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등의 이유로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한 가구 포함. 또한, 기존에 수급가구였으나 해당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증가, 부양의무자의소득이나 재산 증가 등의 이유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도 여기에 포함됨.
    - 차상위가구는 조건상 기초보장 수급가구로 선정되지 못하였으 나,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구 지원 등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을 일컬음.

#### ⟨표 2-2⟩ 분석 대상 가구

(단위: 가구, %)

			( - 11 11 , 1 1 )
구 분	빈도	비율	누적비율
신청탈락가구	3,917	29.7	66.88
차상위가구	4,363	33.1	100
합 계	13,174	100.0	

#### 2. 2차 추출 결과 분석 대상 가구

□ 1차 추출 결과 편포가 심하여, 2차 추출을 실시함3).

<sup>3)</sup> 이하 분석 결과에서는 1차 추출 결과를 주로 제시하였음. 2차 추출 결과를 보완적으로 제 시한 경우 (2차 추출 결과)로 표시해 두었음.

○ 기초수급자, 신청후탈락자, 차상위대상자를 각 지역별로 구분한 값으로 추출함. 추출 대상은 다음과 같음.

#### ⟨표 2-3⟩ 2차 추출대상

(단위: 명, %)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대도시	5,000(50.00)	2,500(50.00)	2,500(50.00)
중소도시	3,000(30.00)	1,500(30.00)	1,500(30.00)
농어촌	2,000(20.00)	1,000(20.00)	1,000(20.00)
계	10,000(100.00)	5,000(100.00)	5,000(100.00)

- 2차 추출 결과 무응답 및 입력 오류에 해당하는 사례 제외4)
  - 최종분석대상은 수급가구 9,666가구, 신청탈락가구 3,781가구, 차 상위가구 4,118가구로 총 17,565가구임.

#### 제2절 분석 대상 기구의 일반적 특성

#### □ 지역 분포

- 1차 추출 결과, 분석 대상 가구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급자의 경우 대도시 38.72%, 중소도시의 경우 33.45%, 농어촌의 경우 27.83%의 순임.
  - 신청탈락가구와 차상위기구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비율이 거의 50:30:20으로 나타남.

#### 4) 제외된 사례

해당변수	사례수	제외 사유
성별	5	무응답(4) 및 입력오류(1)
가구유형	1,327	무응답
주거유형	1,667	무응답
가구원수	10	입력오류
소득인정액	5	무응답
근로소득	282	무응답

⟨표 2-4⟩ 분석 대상 가구의 지역별 분포

(단위	0/2
(114	/0

	지역 구분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1차	대도시	38.72	50.47	50.22
1시 추출	중소도시	33.45	29.77	29.84
十五	농어촌	27.83	19.76	19.94
	합 계	100.00	100.00	100.00
2차	대도시	50.13	52.31	51.97
2시 추출	중소도시	29.88	29.62	29.33
十五	농어촌	19.99	18.06	18.70
	합 계	100.00	100.00	100.00

#### □ 가구 규모와 평균 가구원수

- 1차 추출 결과, 수급유형별로 볼 때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경우 1인 가구가 80.98%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으며, 1, 2인가구를 합할 경우 전체의 약 97%를 차지함.
  -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1인가구가 68.22%, 2인가구가 19.38%를 차지하며, 차상위가구의 경우 1인가구가 55.03%, 2인가구가 32.52%를 점하고 있음.
- 2차 추출 결과, 가구규모가 2인 이하인 수급가구는 81.08%, 신청탈 락가구는 79.93%, 차상위가구는 81.22%로, 세 집단 모두 대부분이 가구규모 2인 이하임

#### ⟨표 2-5⟩ 수급유형별 가구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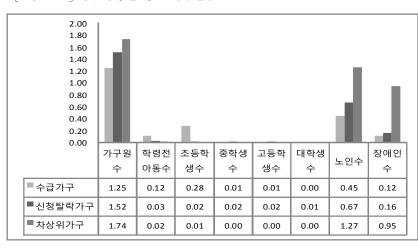
(단위: %)

	가구원수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 11 ゼエ	丁日/厂	건경달력기기	^['6T]/['I
	1인	80.98	68.22	55.03
	2인	15.61	19.38	32.52
1차 추출	3인	2.29	7.33	5.25
추출	4인	0.61	3.29	2.89
	5인	0.22	1.25	1.76
	6인 이상	0.29	0.54	2.54
	합 계	100.0	100.0	100.0

	1인	62.60	60.70	52.74
	2인	18.48	19.23	28.48
2차	3인	11.19	11.72	14.06
2차 추출	4인	5.33	5.47	3.55
	5인	1.55	2.20	0.78
	6인 이상	0.84	0.70	0.39
	합 계	100.00	100.00	100.00

- 1차 추출 결과, 상대적으로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평균 가구원수가 1.25명으로 신청탈락가구(1.52명)나 차상위가구(1.74명)보다 더 적음.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초보장 수급가구에서 1인가구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과 관계가 있음.
  - 학령전 아동수나 초등학생수는 기초보장 수급가구에서 평균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노인과 장애인 수는 차상위 가구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차상위가구에서 노인과 장애인 수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의 차상위가구가 주로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복지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그림 2-1] 수급유형별 평균 가구원수



#### □ 주거 점유 형태

- 1차 추출 결과, 전체적으로 전체 무료임대 혹은 부분 무료임대에 거 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수급자의 경우 분석 대상 가구의 약 2/3에 해당하는 64.2%가 전체 혹은 부분 무료임대에 거주하며, 신청탈락가구와 차상위가구도
     1/3 내외의 가구가 무료임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차상위가구와 수급가구의 경우 무료임차 다음으로 자가 거주자의 비율이 높았음.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월세 혹은 보증부월세 가구 의 비중이 2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2차 추출 결과, 주거유형은 월세나 무료임차인 경우가 수급가구가 60.24%, 신청탈락가구가 65.72%, 차상위가구가 57.9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임

#### ⟨표 2-6⟩ 수급유형별 가구 규모

(단위: %)

	주거유형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자카	14.46	16.59	30.21
	전세	3.31	10.59	11.73
1차	월세(보증부월세 포함)	7.97	27.99	12.69
추출	임대주택(아파트)	4.04	7.96	5.98
	무료임차(부분 또는 전체)	64.20	32.82	38.57
	기타	6.03	4.06	0.82
	합계	100.00	100.00	100.00
	자가	13.19	12.96	17.19
	전세	9.48	9.20	9.23
2차	월세(보증부월세 포함)	30.33	30.23	23.53
추출	임대주택(아파트)	14.25	8.42	13.40
	무료임차(부분 또는 전체)	29.91	35.49	34.44
	기타	2.82	3.70	2.22
	합계	100.00	100.00	100.00

#### □ 가구주 성별

-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경우 여성 가구주가 65.%로 약 2/3을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성비는 거의 1:1로 나타남. 차상위가구의 경우 여성 가구주가 55.56%로 남성 가구주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임.
- 2차 추출 결과,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수급가구는 56.86%로 가장 높으며, 신청탈락가구는 43.99%, 차상위가구는 52.67%로, 전반적으로 세 집단 모두 여성 가구주의 높은 비중을 보임

#### ⟨표 2-7⟩ 가구주의 성별

(단위: %)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1차	남	35.01	48.26	44.44
추출	여	64.99	51.74	55.56
	합계	100.00	100.00	100.00
2차	남	43.14	56.02	47.33
추출	여	56.86	43.99	52.67
	합계	100.00	100.00	100.00

#### 제3절 기구 유형, 지산, 급여의 분류

1. 가구 유형 분류

#### □ 가구유형 분류

- 본 연구에서는 수급유형별 기구의 자산과 급여를 좀 더 엄밀히 분석 하기 위하여 가구유형별 비교 분석을 시도함.
  - 가구유형은 노인 1인가구, 노인 2인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한부 모 2인가구, 한부모 3인가구, 장애인 1인가구, 장애인 2인가구, 대학생이 있는 가구, 아동 1인을 포함한 3인가구, 아동 2인을 포

함한 4인가구로 구분함.

○ 각 가구유형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음.

#### ⟨표 2-8⟩ 가구유형의 조작적 정의

가구유형	조작적 정의
노인 1인가구	65세 이상 노인 1인으로 구성된 단독가구
노인 2인가구	가구원 2인이 모두 65세 이상 노인인 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조손가구 포함 18세 미만 소년 · 소녀 가장가구
한부모 2인가구	한부모 1인과 18세 미만 아동 1인으로 구성된 모부자 가정
취보고 2이기기	한부모 1인과 18세 미만 아동 2인으로 구성된 모부자
한부모 3인가구	가정
아동 1인 포함 3인가구	고등학생 이하의 아동 1인을 포함한 3인가구
아동 2인 포함 4인가구	고등학생 이하의 아동 2인을 포함한 4인가구
장애인 1인가구	장애인 1인으로 구성된 단독가구
7 Alallol 2017 7	가구원 2인이 모두 장애를 가진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
장애인 2인가구	구
대학생이 있는 가구	가구원 중 대학생이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 가구유형별 분포

-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추출 결과, 일부 칼럼은 사례수가 매우 적어 통계적으로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
  - 예컨대, 신청탈락가구와 차상위가구의 소년소녀가장가구(각 1가구와 2가구), 수급가구 중 장애인 2인가구(4가구), 수급가구 중 대학생이 있는 가구(6가구), 차상위가구 중 이동 1인을 포함한 3인가구(5가구),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이동 2인을 포함한 4인가구(각각 5가구와 1가구) 등임.
    - 이 중 비교의 의미가 비교적 낮은 소년소녀가장가구와 장애인 2인가구는 가구유형에서 제외.
    - 아동 1인을 포함한 3인가구와 아동 2인을 포함한 4인가구의 경우 사례수가 매우 적으나, 비교 분석상의 중요성—표준가구에 가까운 가구 유형이라는—을 감안하여 분석에 포함시킴.
  -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가구유형별로 자산 및 수급실태를

비교 분석할 때에만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계에도 불구하고 가구유형별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 다만, 이러한 사례 수의 제약으로 인해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 ⟨표 2-9⟩ 가구유형별 분석 대상 가구수

(단위: 가구, %)

	(ਦੀ). /			
	가구유형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노인 1인가구	1,695	1,381	1,510
	노인 2인가구	112	219	712
	소년소녀가장가구	588	1	2
	한부모 2인가구	83	86	83
1차	한부모 3인가구	26	82	33
추출	장애인 1인가구	73	94	525
	장애인 2인가구	4	7	82
	대학생이 있는 가구	6	37	11
	아동1인 포함 3인가구	11	19	4
	아동2인 포함 4인가구	5	11	1
	미분류	2,291	1,980	1,400
	전 체	4,894	3,917	4,363
	노인 1인가구	2,396(24.79)	863(22.82)	285(6.92)
	노인 2인가구	243(2.51)	131(3.46)	121(2.94)
	소년소녀가장가구	122(1.26)	19(0.50)	2(0.05)
	한부모 2인가구	448(4.63)	166(4.39)	338(8.21)
2차	한부모 3인가구	528(5.46)	179(4.73)	424(10.30)
추출	장애인 1인가구	65(0.67)	48(1.27)	18(0.44)
	장애인 2인가구	48(0.50)	17(0.45)	8(0.19)
	대학생이 있는 가구	1,263(13.07)	176(4.65)	1,411(34.26)
	아동1인 포함 3인가구	343(3.55)	76(2.01)	482(11.70)
	아동2인 포함 4인가구	113(1.17)	51(1.35)	11(0.27)
	미분류	4,097(42.39)	2,055(54.35)	1,018(24.72)
	전 체	9,666(100.00)	3,781(100.00)	4,118(100.00)

- 2차 추출 결과, 미분류를 제외하고, 수급기구와 신청탈락기구는 노 인 1인가구가 각각 24.79%, 22.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반 면, 차상위가구는 장애인 1인가구가 34.26%로 가장 높음
  - 차상위가구는 노인 1인가구, 노인 2인가구의 비중이 9.86%에 지

나지 않은 반면, 한부모 3인가구는 10.30%로 수급가구(5.46%)와 신청탈락가구(4.7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임

#### 2. 소득 및 재산 분류

#### □ 소득 및 재산 분류

-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포함된 소득과 재산의 세부 항목
  -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상에 포함되어 있는 소득, 재산, 부채, 공제액은 아래 표와 같음.

#### ⟨표 2-10⟩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조사된 급여 항목

제도	세부 급여 항목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가구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추정소득
	일반재산
→]	금융재산
가구재산	자동차
	기타산정되는재산
 부채	임대보증금
구세	부채
고기에	장기저축
공제액 	생활준비금

- 소득, 재산, 부채, 공제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010)의 조사방식에 따라 분류
  -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입력되는 주요 소득 및 재산 항목과 공적 자료는 아래 표와 같음.

#### $\langle {\tt H} \ 2{-}11 angle$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포함된 소득과 재산에 대한 공적 자료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통보내용	행복e음(사회 복자통합관리망) 통보시기(주기)*	
	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최근 3개월 평균 보수월액	매분기 초	
		상사근로소득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최근 3개월 평균 기준소득월액	매분기 초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연 1회	
		소득	일용근로소득	국세청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최근 3개월 평균소득	연 1회
		지횔근로소득	지활근로자 근로내역	전월소득	매월	
		공일자라	노동부 '일모야' 근로내역	최근 3개월 평균소득	매분기 초	
			국세청 종합소득(시업소득)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1회	
		농업소득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농지 등록(변동)현황	매분기 초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직불금(고정+변동)/12	연 1회	
	사업 소득	어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시업 소득)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1회	
	- '	임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시업소득)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1회	
		기타사업소득 (지영업자)	국세청 종합소득(시업소득)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1회	
소득			시업자등록증	신규사업자등록자료	매분기 초	
	재산 소득	임대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시업소득)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1회	
		라시지0	국세청 종합소득(시업소득)	0 자소득/12	연 1회	
		연금(개인)소 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연금의 월 수령액	연 2회	
	기타 소득		국민연금급여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시학퇴직연금급여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공무원퇴직연금급여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국방부퇴직연금급여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별정우체국연금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전월 지급된 실업급여	매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전월 지급된 산재급여	매월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통보내용	행복e음(사회 복자통합관리망) 통보시기(주기)*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전월 지급된 보훈급여	매월
			보훈처 보훈대상지보상급여	전월 지급된 보훈급여	매월
	일반산	퇴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매월
			국토부 지적대장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 된 토지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매분기
재산		건축물 (주택,건물, 시설물)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시기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 의 시기표준액(취득기액)	매월
			국토부 건축물대장 (시설물체외)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된 건축물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매월
		선박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국토부 선박원부	최근3개월내 취득한 선박(어선 제외) 정보 ※ 가액정보 없음	매분기 초
			농림수산식품부 아선정보	최근3개월내 취득한 어선 정보 ※ 기액정보 없음	매분기 초
		행기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어업권	지방세정(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기액)	매월
		입목재산	지방세정(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기액)	매월
		회원권	지방세정(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분양권	금융결제원 분양권당첨자	최근3개월내 취득한 분양권 당첨 내역 ※ 가맥정보 없음	매분기 초
		조합입주권	지방세정(취득세)	최근3개월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내역 ※ 기맥정보 없음	매분기 초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통보내용	행복e음(사회 복지통합관리망) 통보시기(주기)*
금융재산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재산별 기액 ※ 요구불 예금 : 3개월 평균 잔액	연 2회
7	다 <b>동</b> 차	국토부 치적정보	전월에 취득한 차량정보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기액 포함	매월

자료: 보건복지부(2011),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공적이전소득에는 이외에도 복지부의 각종 급여─기초노령연금, 장애 연금, 한부모지원금 등─이 포함됨.
  - 아래 표와 같은 다양한 급여 항목들이 공적이전소득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 이들 항목은 모두 공적이전항목으로 입력되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가구특성지출비용으로 인정되어 전부 혹은 일부가 실제소득 산정시에는 제외됨.
  - 본 연구에서는 기초보장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의
     소득을 표준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아래 공적이전항목을 소득인
     정액 산정시에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였음.
    - 따라서,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보다는 다소 과다 산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표 2-12⟩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기구특성지출비용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득 포함 여부	가구특성 지출비용 포함여부
복지 급여 연계	노인	기초노령연금		0	Δ
	장애인	장애연금		0	0
		장애수당		0	0
		장애이동수당		0	0
	한부모	아동양육비(한부모)		0	0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득 포함 여부	가구특성 지출비용 포함여부
		지립촉진수당		0	0
	야동	소년소녀기정 지원금		0	0
	V6	가정위탁이동 양육보조금		0	0
	olok	입양이동이육수당(양육보조 금)		0	0
	입양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양육보조금)		0	0
	국민연금급여			0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0	X
	군인퇴직연금급여			0	X
	사학퇴직연금급여			0	X
	별정우체국연금			0	X
	실업급여			0	×
		휴업급여		0	×
	산재보험급여	장해급여		0	×
	[ 전세포함답어	유족급여		0	×
타		상병보상금		0	X
기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0	Δ
연계		국가유공자 급여	보상금	0	×
			간호수당	0	×
			무공영예수당	0	×
	보훈급여		생활조정수당	X	×
			기타	0	X
		독립유공자 급여	보상금	0	×
		татом ым	생활조정수당	X	×
		참전명예수당		X	×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고정, 변동직불금		0	Δ
	(노동부)직업훈련수당			0	X
	(교통안전공단)자동차손	재활보조금		0	0
미 연계	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	피부양보조금		0	×
_ "	희귀난치성 질환자	호흡보조기 대여료		0	0
	의료비	산소호흡기 대여료		0	0

구 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득 포함 여부	가구특성 지출비용 포함여부
	지원	간병비		0	0
		이·통장 직책수당		0	×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0	0
	지자체 지원	교통수당		0	0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0	×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0	0
	기타	장애인올림픽연금		0	0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보험료(50%)		X	0
	상기 외 가구특성 지출비용	만성질환의 6개월이성	상 의료비	×	0
		중고등학생의 입학금	금수업료	X	0

자료: 보건복지부(2011),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3. 복지급여 분류

#### □ 복지급여의 조사 방식

- 주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지급되는 현금급여로서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에 입력되어 있는 급여 항목들은 원자료를 그대로 활용함.
- 이외의 주요 현금 및 현물 복지관련 급여들로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급여 항목들은 시·군·구 지자체에서 자료를 직접 입력하여 받음.
-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으로서 주요한 현금 혹은 현물급여는 최대 6 개까지 입력하도록 함.

#### □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활용해 조사된 급여 항목의 분류

- 조사된 세부 급여 항목
  - 기초보장급여, 긴급급여, 각종 한부모 및 조손가구 급여, 장애인 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주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현금급여 들은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상의 급여지급 현황 데이터를 활용함.
  - 기준연도는 2010년이며, 급여액은 연간 기준임.

 $\langle {\tt H} \ 2{-}13 
angle$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조사된 급여 항목

제도	세부 급여 항목
기초생활수급	해산급여
기초생활수급	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	자활 장려금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일반)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시설)-주,부식비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시설)-월동대책비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시설)-생일파티준비금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시설)-피복비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시설)-동내의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시설)-신발비
기초생활수급	운영보조금(시설)
기초생활수급	기능보강보조금(시설)
기초생활수급	사업비(시설)
기초생활수급	교육급여(일반)-입학금
기초생활수급	교육급여(일반)-수업료
기초생활수급	교육급여(일반)-교과서대
기초생활수급	교육급여(일반)-부교재비
기초생활수급	교육급여(일반)-학용품비
기초생활수급	시설위로금-특별위로금
기초생활수급	시설위로금-송년위로금
기초생활수급	시설위로금-생일축하금
	소년소녀가정 지원금(부가급여)
	사할린한인(특별지원금)
긴급	생계지원
긴급	교육지원
긴급	의료지원
긴급	주거지원
긴급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긴급	연료비
긴급	전기요금
긴급	해산비 지원
긴급	장제비 지원
자활	자활인건비
의료급여	요양비(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
모자기족	모자가정자녀학비-입학금
모자기족	모자가정자녀학비-수업료
모자기족	모자가정아동양육비

제도	세부 급여 항목
조손가족	조손가정자녀학비-수업료
조손기족	조손가정아동양육비
부자기족	부자가정자녀학비-입학금
부자기족	부자가정자녀학비-수업료
부자기족	부자가정아동양육비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차상위)
차상위장애인	장애아동수당(차상위)
일반장애인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지원
입양이동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입양이동 양육수당지원
입양아동	장애아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청소년특별지원	생활지원
청소년특별지원	학업지원
청소년특별지원	상담지원
청소년특별지원	기타지원
기초노령	기초노령연금
긴급생계	생계급여(긴급)
영유아(양육수당)	양육수당
장애인복지	장애수당(기초)
장애인복지	장애인급여(지자체)
장애인복지	장애이동수당(기초)
장애인복지	장애이동수당(지자체지원)
장애인복지(교육)	장애인자녀교육비-입학금
장애인복지(교육)	장애인자녀교육비-수업료
장애인복지(교육)	장애인자녀교육비-교과서대
장애인복지(교육)	장애인자녀교육비-부교재비
장애인복지(교육)	장애인자녀교육비-학용품비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 분석의 간소성과 비교의 용이성을 위하여 위의 급여 항목들을 다음 과 같이 재분류

# ⟨표 2-14⟩ 분석을 위한 급여의 재분류 항목(사통망 조사)

재분류 항목
기초보장관련급여
긴급지원
노인관련급여
장애인관련급여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아동,청소년관련급여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현금급여 총액
기초보장급여 제외 현금급여 총액

# ○ 지자체에서 조사된 급여 항목

# ⟨표 2-15⟩ 지자체에서 조사된 중앙부처의 복지급여 항목

생애주기-급여성격	소관부처	세부 급여 항목
영유아기-보건의료	복지부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영유아기-보건의료	복지부	임산부및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
영유아기-보건의료	복지부	신생아난청조기진단
영유아기-보건의료	복지부	국가필수예방접종실시
영유아기-보건의료	복지부	취학전아동실명예방
영유아기-보건의료	복지부	6세미만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기-보호양육	여가부	유아학비-차등교육비
영유아기-보호양육	여가부	유아학비-만5세이무상교육비
영유아기-보호양육	여가부	유아학비-두자녀이상교육비
영유아기-보호양육	여가부	아이돌보미서비스
영유아기-보호양육	농식품부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영유아기-보호양육	복지부	차등보육료지원
영유아기-보호양육	복지부	만5세아무상보육료지원
영유아기-보호양육	복지부	장애이무상보육료지원
영유아기-보호양육	복지부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영유아기-보호양육	복지부	시간연장형보육료
영유아기-보호양육	복지부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아동청소년기-보건의료	복지부	저소득충본인일부부담금경감
이동청소년기-보호양육	여가부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지원
아동청소년기-보호양육	복지부	방과후보육료지원

생애주기-급여성격	소관부처	세부 급여 항목
아동청소년기-보호양육	복지부	드림스타트
아동청소년기-생계	복지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아동청소년기-생계	복지부	디딤돌사업
아동청소년기-생계	여가부	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
청년기-보건의료	복지부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및철분제지원
청년기-보건의료	복지부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청년기-보건의료	고용부	근로자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
청년기-생계	복지부	자활근로기초/차상위
청년기-생계	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청년기-생계	농식품부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
청년기-생계	농식품부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
청년기-생계	보훈처	참전명예수당
청년기-생계	보훈처	무공영예수당
청년기-생계	보훈처	보상금
청년기-생계	복지부	자활공동체창업자금지원
청년기-생계	복지부	저소득층생업자금(창업지원)
장년기-보건의료	복지부	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
장년기-생계	보훈처	6.25자녀수당
장년기-생계	보훈처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노년기-보건의료	복지부	노인장애인의치보철
노년기-보건의료	복지부	노인건강진단
노년기-보건의료	복지부	노인안검진및개안수술
노년기-보건의료	복지부	노인의치보철
노년기-보호양육	복지부	특별현금급여
노년기-보호양육	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년기-보호양육	복지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년기-보호양육	복지부	재가급여
노년기-보호양육	복지부	시설급여
노년기-보호양육	복지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노년기-생계	복지부	특별지원금
노년기-생계	복지부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사망-생계	보훈처	독립유공자제수비
사망-생계	보훈처	사망일시금
전생애-보건의료	복지부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전생애-보건의료	복지부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전생애-보건의료	복지부	방문보건
전생애-보건의료	복지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전생애-보건의료	보훈처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전생애-보건의료	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전생애-보건의료	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전생애-보건의료	복지부	의료급여중증환자지원
전생애-보건의료	복지부	의료급여
전생애-보호양육	복지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수혜자)

생애주기-급여성격	소관부처	세부 급여 항목
전생애-보호양육	복지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전생애-보호양육	소방청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및정비사업
전생애-생계	복지부	장애인차량LPG세금인상분지원
전생애-생계	보훈처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
전생애-생계	복지부	기초생활양곡할인
전생애-생계	복지부	차상위계층양곡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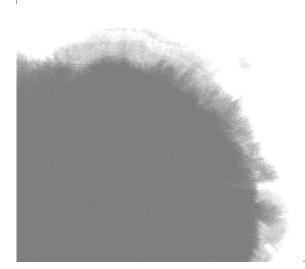
- 지자체에서 조사된 복지 관련 급여 역시 분석의 간소성과 비교의 용 이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분류
  - 지자체의 조사 결과는 표준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물급여
     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금액 산출 불가능. 따라서, 급여의 수급
     여부만을 분석함.

## ⟨표 2-16⟩ 분석을 위한 급여의 재분류 항목(지자체 조사)

재분류 항목
영유아임산부 의료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청소년,한부모지원
청장년지원(자활사업 등)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보호
보훈관련 급여(의료지원 제외)
일반 의료지원
양곡할인
지자체 자체예산사업

# 03

자산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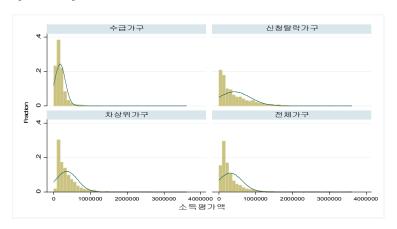
# 제3장 자산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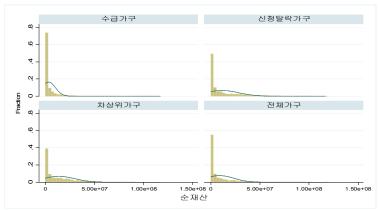
#### 제1절 전체 기구의 지산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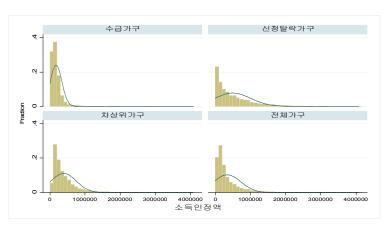
#### □ 소득평가액

- 전체적인 소득평가액은 수급가구가 평균 172,071원, 신청탈락가구 417,784원, 차상위가구 352,440원으로 나타나 신청탈락가구의 소득 평가액이 가장 높았음.
  - 수급 〈 차상위 〈 신청탈락
- 세부 항목 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신청탈락가구가 135,613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차상위(48,844원), 수급가구(12,394원) 순으로 나타남.
  - 수급 〈 차상위 〈 신청탈락
-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차상위가구가 88,625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수 급가구(64,103원), 신청탈락가구(41,739원) 순으로 나타남.
  - 신청탈락 〈 수급 〈 차상위
- 공적이전 소득의 경우에는 차상위가구가168,817원으로, 신청탈락가 구(91,429원)와 수급가구(75,193원)보다 높게 나타남.
  - 수급 〈 신청탈락 〈 차상위

# [그림 3-1] 수급유형별 소득 및 재산 분포: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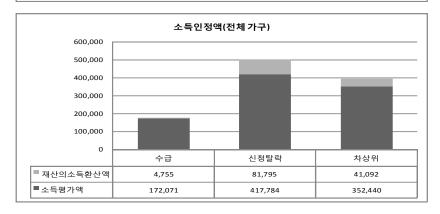






	소득평	평가액(전체 가구)	
450,000 400,000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수급	신청탈락	차상위
■추정소득	1,860	42,838	8,211
■ 공적이전소득	75,193	91,429	168,817
■부양비	15,472	88,492	20,248
■ 사적이전소득	64,103	41,739	88,625
■재산소득	471	1,388	1,821
■ 사업소득	2,579	16,285	15,874
■근로소득	12,394	135,613	48,844

	재산(	전체 가구)	
16,000,000			
14,000,000			
12,000,000			
10,000,000			
8,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0	수급	신청탈락	차상위
■ 기타산정되는재산	19,365	607,377	73,487
■자동차	34,006	22,746	13,838
■ 금융재산	1,454,678	2,646,603	3,214,436
■ 일반재산	2,058,699	8,660,616	11,100,000



37

제3장 자산실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차상위가구 신청탈락가구 수급가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자동치는 수급가구에서, 기타 산정되는 재산은 신청탈락가구에서 높게 나타남.
- 전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신청탈락가구가 81,795원으로 가장 높으며, 차상위가구는 41,092원, 수급가구는 4,755원으로 분석됨.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은 수급가구 176,826원, 신청탈락가구 499,579원, 차상위가구 393,532원으로 신청탈락가구가 가장 높게 분석됨.

#### ⟨표 3-1⟩ 가구유형별 소득인정액: 전체 가구

(다의· 원)

			(단귀: 원)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소득평가액	172,071	417,784	352,440
재산의 소득환산액	4,755	81,795	41,092
소득인정액	176,826	499,579	393,532

#### □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비율

- 수급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세 기 준에서 모두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 비율이 99% 이상
-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으로는 97.2%가 최저 생계비 미만에 속하나, 소득평가액 기준으로는 76.8%임.
- 차상위가구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으로 98.5%, 소득평가액 기준으로는 90.4%가 최저생계비에 속함.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차상위가구는 87.1%가 신청탈락가구는 70.1% 가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인 것으로 분석됨.

#### ⟨표 3-2⟩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비율: 전체 가구

(단위: %)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99.5	76.8	90.4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99.9	97.2	98.5
소득인정액 기준	99.1	70.1	8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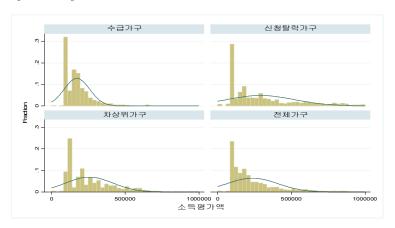
## 제2절 노인·장애인 기구의 지산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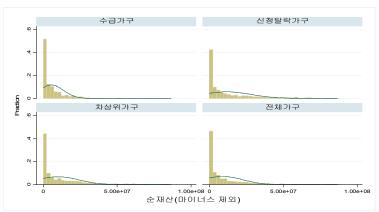
#### 1. 노인 1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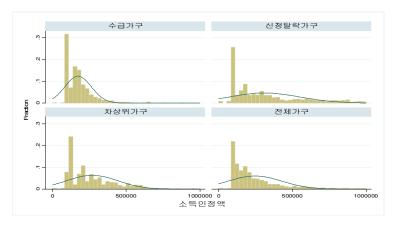
#### □ 소득평가액

- 노인 1인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수급가구가 172,142원, 신청탈락가구 가 290,598원, 차상위가구가 255,500원으로 신청탈락가구의 소득평 가액이 가장 높음.
  - 하지만 앞선 전체가구의 소득평가액과 비교했을 때, 수급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비슷하나, 신청탈락가구는 417,784원(전체)에서 290,598원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음.
- 근로소득은 신청탈락가구가 14,872원으로, 차상위가구(4,087원)와 수 급가구(118원)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으나, 노인가구의 특성 상,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이 낮음.
-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차상위가구가 87,754원으로 가장 높게, 수급가 구가 50,969원, 신청탈락가구 43,110원으로 나타남.
- 공적이전소득은 차상위가구가 140,588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청탈락가구(107,803원), 수급가구(100,553원)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 수급유형별 소득 및 재산 분포: 노인 1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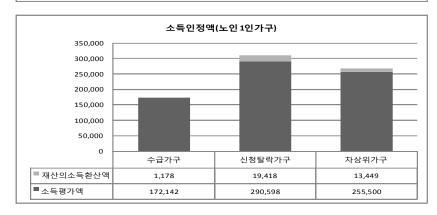






소득평가액(노인 1인가구)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수급	신청탈락	차상위	
■추정소득	299	1,105	965	
■공적이전소득	100,553	107,803	140,588	
■부양비	16,356	116,886	15,927	
■사적이전소득	50,969	43,110	87,754	
■재산소득	1,247	1,105	1,242	
■사업소득	2,601	5,716	4,936	
■근로소득	118	14,872	4,087	

	재산(노	인 1인가구)	
14,000,000			
12,000,000			
10,000,000			
8,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0			
	수급	신청탈락	차상위
■ 기타산정되는재산	0	799,077	74,426
■자동차	36,357	1,412	4,137
■금융재산	2,480,702	3,156,282	2,666,682
■ 일반재산	3,131,772	8,276,683	7,640,552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자동차를 제외한 금융재산, 일반재산, 기타 산정되는 재산부분에서 모두 신청탈락가구의 재산금액이 높게 나타남.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신청탈락가구 19,418원, 차상위가구 13,449원, 수급가구 1,178원 순임

#### □ 소득인정액

○ 노인 1인가구의 가구유형별 소득인정액은 수급가구 173,320원, 신 청탈락가구가 310,016원, 차상위가구 268,949원으로 신청탈락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3〉 가구유형별 소득인정액: 노인 1인가구

(단위· 원)

			(단기: 단)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소득평가액	172,142	290,598	255,500
재산의 소득환산액	1,178	19,418	13,449
소득인정액	173,320	310,016	268,949

#### □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비율

- 수급가구는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세 기준에서 모두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율이 99% 이상임
- 신청탈락가구와 차상위가구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으로는 두 가구 유형 모두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비율이 98.9%이며, 소득평 가색 기준으로는 각각 81.2%, 89.5%임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신청탈락가구는 78.9%가, 차상위가구는 87.7% 가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구로 나타남.

#### 〈표 3-4〉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비율: 노인 1인가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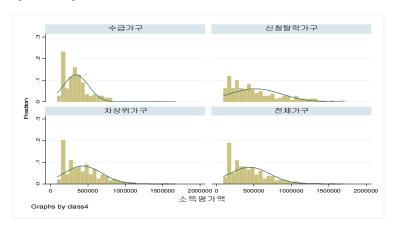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99.4	81.2	89.5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99.9	98.9	98.9
소득인정액 기준	99.1	78.9	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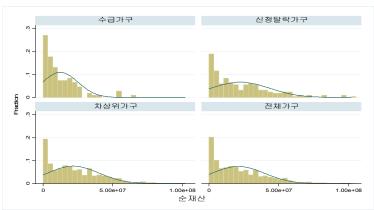
#### 2. 노인 2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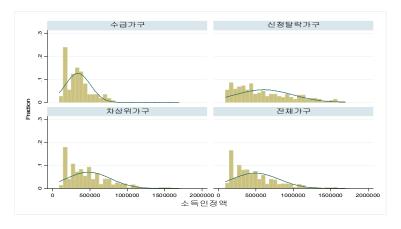
#### □ 소득평가액

- 노인 2인가구의 가구유형별 소득평가액은 수급가구 340,518원, 신청 탈락가구 518,539원 차상위가구 432,972원임
- 근로소득의 경우, 수급가구는 9,732원, 신청탈락가구 45,616원, 차 상위가구 25,140원으로 신청탈락가구의 근로소득이 가장 높음.
  - 노인 1인가구의 근로소득과 비교 해 볼 때, 신청탈락가구의 소득 증가(14,872원 → 45,646원)와 더불어,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근로소득 또한 각각 118원(1인가구) → 9,732원(2인가구) / 4,087원(1인가구) → 25,140원(2인가구)로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음
- 사적이전소득은 차상위가구가 116,081원으로 수급가구(57,625원)의 약2배, 신청탈락가구(36,462원)의 약3배로 나타남
  - 노인 1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등에 비해 차상위기구의 사적이전소득이 높은 편임.
- 공적이전소득은 차상위가구(231,798원) 신청탈락가구(203,799원) 수급가구(183,131원)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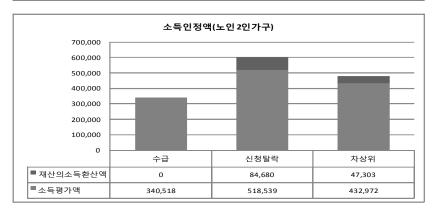
[그림 3-5] 수급유형별 소득 및 재산 분포: 노인 2인가구







	재산(노	인 2인가구)	
25,000,000			
20,000,000			
15,000,000		_	_
10,000,000		_	_
5,000,000			
0	수급	신청탈락	차상위
■ 기타산정되는재산	123,045	851,123	1,888
■ 자동차	15,866	13,840	8,318
■금융재산	4,110,339	4,666,324	5,014,965
■일반재산	8,295,087	17,700,000	18,300,000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과 일반재산에서 신청탈락가구와 차상위가구는 비슷한 규모 을 보이나, 차상위가구의 재산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수급가구의 경우 0원이며, 신청탈락가구는 84,680원, 차상위가구 47,303원임.

#### □ 소득인정액

○ 노인 2인가구의 가구유형별 소득인정액을 살펴보면, 수급가구 340,518원, 신청탈락가구 603,220원, 차상위가구 480,276원임.

#### 〈표 3-5〉 가구유형별 소득인정액: 노인 2인가구

(단위: 원)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소득평가액	340,518	518,539	432,972
재산의 소득환산액	0	84,680	47,303
소득인정액	340,518	603,220	480,276

#### 〈표 3-6〉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비율: 노인 2인가구

(단위: %)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100.0	81.3	92.4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00.0	97.7	98.3
소득인정액 기준	100.0	74.0	87.9

#### □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비율

- 수급가구의 100%가 모든 기준에서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나타남.
- 신청탈락가구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으로 97.7%가 최저생계비 미만이나, 소득평가액기준으로는 81.3%임.
- 차상위가구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으로 98.3%,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92.4%가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구임.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신청탈락가구는 전체의 74.0%가, 차상위가구는 87.9%가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구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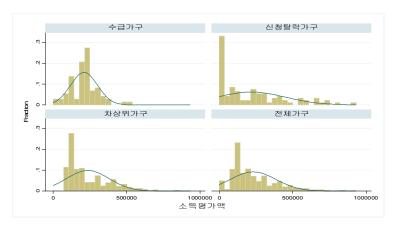
#### 3. 장애인 가구의 자산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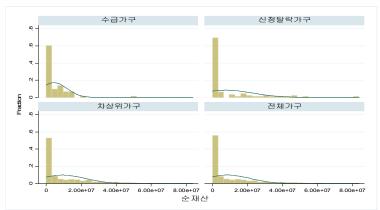
#### □ 소득평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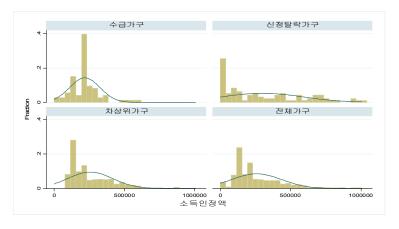
- 장애인 1인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수급가구 210,740원, 신청탈락가구 217,611원, 차상위 235,804원으로 나타남.
  - 장애인 1인가구의 소득평가액은 타 가구유형에 비해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음.
- 근로소득의 경우, 수급가구는 0원이며, 신청탈락가구는 36,255원, 차 상위가구는 3,284원임.
- 사적이전소득은 치상위가구(79,044원)와 신청탈락가구(77,643원)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수급가구는 40,912원임.
  -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앞서 살펴본 노인가구(1인 43,110원 / 2인 36,462원) 및 전체가구(41,739원)와 비교 시, 사적이전소득이 다소 높게 나타남.
- 공적이전소득은 수급가구가 164,848원으로 가장 높고, 차상위가구 (139,831원), 신청탈락가구(60,671원)순임.
  - 신청탈락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60,671원으로, 노인가구 (1 인 107,803원, / 2인 203,799원) 및 전체가구(91,429원)와 비교 시, 상대적으로 낮음.

- 장애인 1인가구 일반재산의 경우, 신청탈락가구가 월등히 높으며, 그 외 자동차, 금융재산, 기타 산정되는 재산은 차상위가구가 제일 높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신청탈락가구가 81,459원, 차상위가구 20,092 원, 수급가구 6,914원 순임.

[그림 3-7] 수급유형별 소득 및 재산 분포: 장애인 1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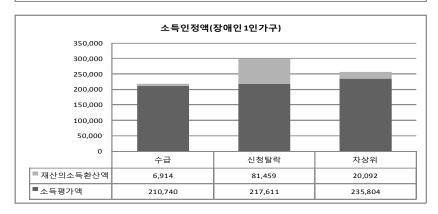






소득평가액(장애인 1인가구)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_			
0				
	수급	신청탈락	차상위	
■추정소득	73	94	525	
■공적이전소득	164,848	60,671	139,831	
■부양비	3,884	32,579	5,148	
■사적이전소득	40,912	77,643	79,044	
■재산소득	0	443	2,593	
■사업소득	1,096	1,596	5,747	
■근로소득	0	36,255	3,284	

	재산(장이	H인 1인가구)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_
40,000			_
20,000			
0	수급	신청탈락	차상위
■ 기타산정되는재산	40,912	77,643	79,044
■ 자동차	0	443	2,593
■금융재산	1,096	1,596	5,747
■ 일반재산	0	36,255	3,284



49

제3장 자산실태

#### □ 소득인정액

- 장애인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수급가구가 217,654원, 신청탈락가 구 299,069원, 차상위가구 255,895원임
  - 소득평가액과 마찬가지로,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간 의 소득인정액의 금액차이가 크지 않음

#### ⟨표 3-7⟩ 가구유형별 소득인정액: 장애인 1인가구

(단위: 원)

			(단키. 편)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소득평가액	210,740	217,611	235,804
재산의 소득환산액	6,914	81,459	20,092
소득인정액	217,654	299,069	255,895

#### □ 최저생계기 미만 가구 비율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으로는 수급기구 100%, 신청탈락가구 91.5%, 차상위가구 98.9%가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임.
-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수급가구는 98.6% 신청탈락가구는 86.2%, 차 상위가구는 93.9%가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임.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는 최저생계비 미만 가 구가 90% 이상이나, 신청탈락가구는 74.5%가 최저생계비 미만 가 구로 나타남.

#### ⟨표 3-8⟩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비율: 장애인 1인가구

(단위: %)

			( = 1,11 / 4)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98.6	86.2	93.9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00.0	91.5	98.9
소득인정액 기준	95.9	74.5	91.6

# 제3절 한부모기구의 지산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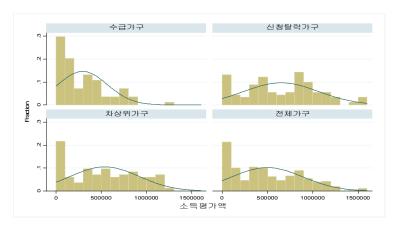
#### 1. 한부모 2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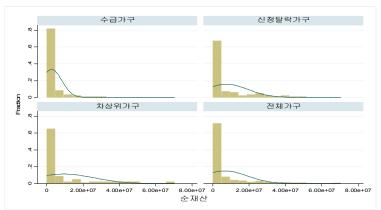
#### □ 소득평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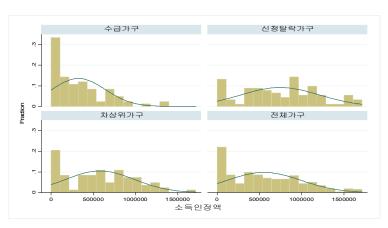
- 한부모 2인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수급가구가 293,680원, 신청탈락가 구 651,788원, 차상위기구 537,590원으로 신청탈락가구의 소득평가 액이 가장 높음.
- 한부모 가구의 근로소득은 노인 및 장애인가구보다 높아, 2인가구의 경우 수급가구는 158,485원, 신청탈락가구는 357,953원, 차상위가구는 317,644원으로 나타남.
-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차상위가구가 94,559원으로 가장 높고, 신청탈락가구(78,550원), 수급가구(60,225원)순임.
  - 전체적으로 노인 및 장애인가구보다 사적이전소득이 다소 높게 나타남.
- 공적이전소득은 차상위가구(61,387원), 신청탈락가구(50,403원), 수 급가구(36,645원) 순임.
  - 공적이전소득은 사적이전소득과 달리, 노인 및 장애인가구이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음.

- 일반재산은 차상위기구에서, 금융재산과 기타 산정되는 재산은 신청 탈락가구에서 높게 나타남.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신청탈락기구 92,484원, 차상위기구 40,733원, 수급기구 31,876원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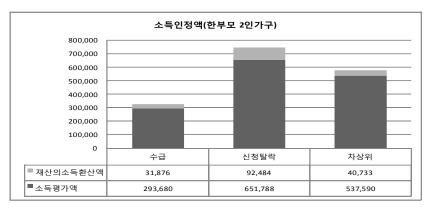
[그림 3-9] 수급유형별 소득 및 재산 분포: 한부모 2인가구







재산(한부모 2인가구)			
10,000,000			
9,000,000			
8,000,000			
7,000,000			
6,000,000			
5,000,000			
4,000,000			
3,000,000			
2,000,000			
1,000,000			
0	수급	신청탈락	차상위
■ 기타산정되는재산	0	306,632	0
■ 자동차	127,888	15,229	12,048
<sup>■</sup> 금융재산	847,031	1,573,037	1,242,569
■ 일반재산	2,245,667	6,538,749	8,166,210



#### □ 소득인정액

○ 한부모 2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수급가구 325,556원, 신청탈락가구 744,271원, 차상위가구 578,323원으로 신청탈락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타남.

⟨표 3-9⟩ 가구유형별 소득인정액: 한부모 2인가구

(단위: 원)

			(단키. 편)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소득평가액	293,680	651,788	537,590
재산의 소득환산액	31,876	92,484	40,733
소득인정액	325,556	744,271	578,323

#### □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 비율

- 수급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에서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가 각각 98.8%이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는 94%가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신청탈락가구의 최저생계비 미만 기구 비율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 준으로는 96.7%이나, 소득평가액 기준으로는 58.2%로, 소득인정액 기준, 53.8%만이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에 포함됨.
- 차상위가구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으로는 97.6%가 최저생 계비 미만 가구에 속하나, 소득평가액 기준으로는 75.9%, 소득인정 액 기준으로는 73.5%임.

⟨표 3-10⟩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비율: 한부모 2인가구

(단위: %)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98.8	58.2	75.9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98.8	96.7	97.6
소득인정액 기준	94.0	53.8	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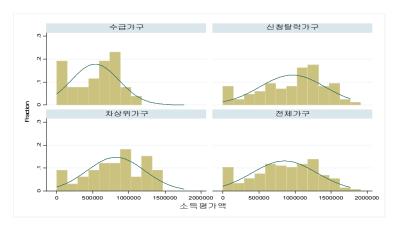
# 2. 한부모 3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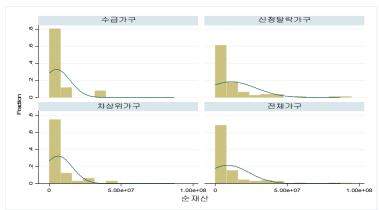
#### □ 소득평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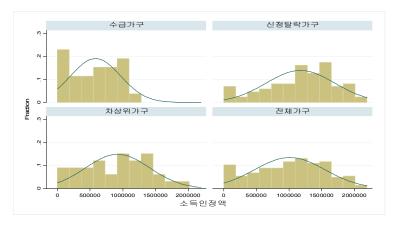
- 한부모 3인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살펴보면, 수급가구의 경우 532,180 원, 신청탈락가구는 963,408원, 차상위가구는 819,353원임.
  - 한부모 2인기구보다 수급가구는 약 24만원, 신청탈락가구는 약 31만원, 차상위가구는 약 28만원 증가됨.
- 근로소득의 경우, 차상위가구가 681,142원으로 가장 높고, 신청탈락 가구(580,062원), 수급가구(372,423원) 순으로 나타남.
  - 한부모 2인가구를 비롯하여 노인 및 장애인가구에서 모두 신청탈 락가구의 근로소득이 더 높았던 것과 다른 양상을 보임.
- 사적이전소득은 수급가구(81,888원) 신청탈락가구(78,261원) 차 상위가구(60,157원) 순임.
  - 한부모 3인가구에서는 수급가구의 사적이전소득이 가장 높고, 차 상위가구의 사적이전소득이 제일 낮아, 전체적으로 수급가구 보다 차상위가구에서 사적이전소득이 높았던 앞선 결과들과 대조됨.
-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차상위가구가 64,262원으로 가장 높고, 신청탈락가구 55,715원, 수급가구 24,902원으로 나타남.
  - 한부모 3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한부모 2인가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수급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2인가구(36,645원)보다 3인가구(24,902원)의 금액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한부모 3인가구의 일반재산은 신청탈락가구의 규모가 가장 크며, 금 융재산의 경우 수급가구와 신청탈락가구는 250만원 선으로 비슷하 나, 오히려 차상위가구가 약 136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이 눈에 띔.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신청탈락가구가 211,919원으로 가장 높으며, 차상위가구 101,129원, 수급가구 50,889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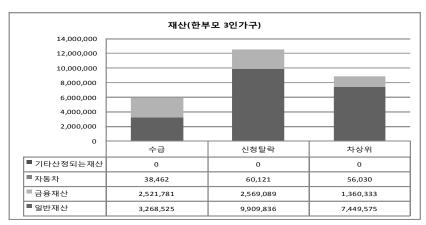
[그림 3-11] 수급유형별 소득 및 재산 분포: 한부모 3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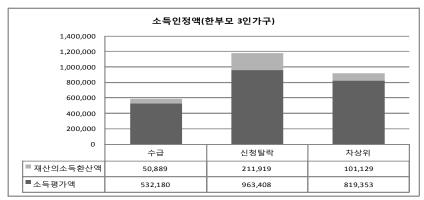






소득평가액(한부모3인가구)			
1,200,000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0	수급	신청탈락	차상위
■추정소득	30,351	175,987	12,606
■공적이전소득	24,902	55,715	64,262
■부양비	22,615	23,138	1,187
■사적이전소득	81,888	78,261	60,157
■재산소득	0	3,140	0
■사업소득	0	47,106	0
■근로소득	372,423	580,062	681,142





#### □ 소득인정액

○ 한부모 3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수급가구의 경우 583,069원, 신청탈락가구 1,175,327원, 차상위가구 920,482원임.

#### ⟨표 3-11⟩ 가구유형별 소득인정액: 한부모 3인가구

(단위: 원)

	수급기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소득평가액	532,180	963,408	819,353
재산의 소득환산액	50,889	211,919	101,129
소득인정액	583,069	1,175,327	920,482

#### □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 비율

- 수급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96.2%가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구 로 나타남.
- 신청탈락가구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으로 95.3%가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에 속하지만, 소득평가액 기준으로는 52.3%,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36%만이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로 나타남.
  - 이는 한부모 2인 신청탈락가구의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 비율 (53.8%)보다 17.8% 낮은 수치임.
- 차상위가구의 경우에도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으로는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 비율이 100%이나,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75.8%, 소득인 정액 기준으로는 60.6%로 낮아짐.

#### 〈표 3-12〉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비율: 한부모 3인가구

(단위: %)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100.0	52.3	75.8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00.0	95.3	100.0
소득인정액 기준	96.2	36.0	60.6

#### 제4절 이동 · 청소년이 있는 기구의 지산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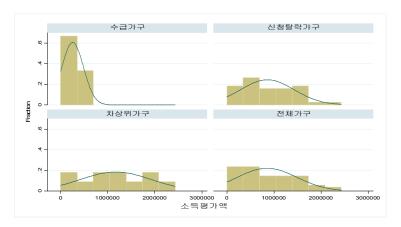
#### 1. 대학생이 있는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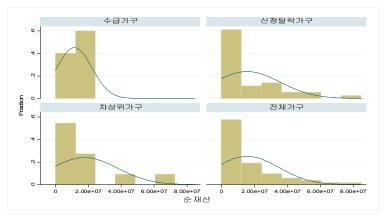
#### □ 소득평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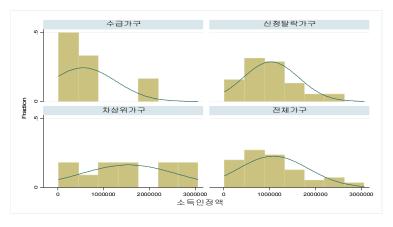
- 대학생이 있는 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수급가구가 255,133원, 신청탈락가구 859,704원, 차상위가구 1,170,369원으로 차상위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의 경우 대부분 차상위가구보다 신청탈락가구의 소득평가액 및 소득인정액이 높았던 것과 다른 양상을보임.
- 근로소득은 신청탈락가구와 차상위가구가 각각 531,135원, 526,202 원으로 비슷하며, 수급가구는 58,333원으로 다른 두 가구에 비해 현 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공적이전소득은 차상위가구(250,138원) 신청탈락가구(110,257원) 수급가구(48,333원) 순으로, 차상위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높게 나타 남.

- 대학생이 있는 가구에서 일반재산과 자동차는 차상위가구에서 다소 높게 나타남.
- 금융재산의 경우 신청탈락가구 및 차상위가구보다 수급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이 눈에 띄는 점임.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차상위기구가 373,719원으로 가장 높으며, 수 급기구 301,336원, 신청탈락기구 168,626원 순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현상과 대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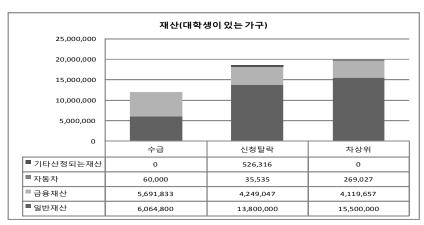
[그림 3-13] 수급유형별 소득 및 재산 분포: 대학생이 있는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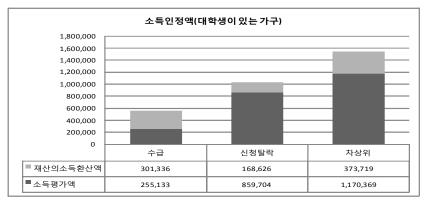






소득평가액(대학생이 있는 가구)			
1,200,000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0			
	수급	신청탈락	차상위
■추정소득	71,240	58,307	231,098
■공적이전소득	48,333	110,257	250,138
■부양비	32,976	58,826	0
■재산소득	0	6,105	0
■사업소득	0	47,368	109,091
■근로소득	58,333	531,135	526,202





### □ 소득인정액

- 수급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255,133원)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301,336원)이 더 높아 총 556,468원의 소득인정액이 산출됨.
- 신청탈락가구는 1,028,330원, 차상위가구는 1,544,088원으로 분석됨.

⟨표 3-13⟩ 가구유형별 소득인정액: 대학생이 있는 가구

(단위: 원)

			( = 11. = 2)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소득평가액	255,133	859,704	1,170,369
재산의 소득환산액	301,336	168,626	373,719
소득인정액	556,468	1,028,330	1,544,088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가구는 전체의 83.3%가 최저생계비 미만에 속하여, 신청탈락가구는 47.4%, 차상위가구는 54.5%로 나타남.

⟨표 3-14⟩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비율: 대학생이 있는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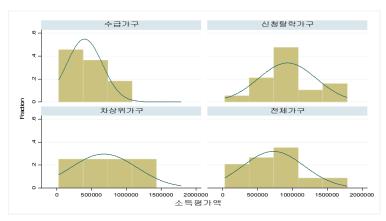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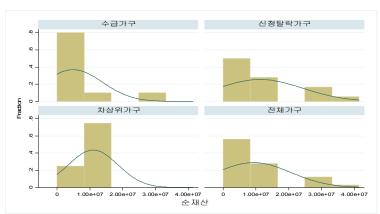
			(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100.0	60.5	63.6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00.0	94.7	100.0
소득인정액 기준	83.3	47.4	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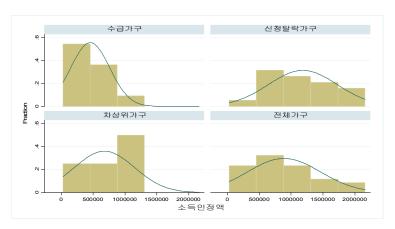
# 2. 아동 1인을 포함한 3인가구

# □ 소득평가액

○ 아동 1인을 포함한 3인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살펴보면, 수급가구는 400,464원, 신청탈락가구 927,235원, 차상위가구는 678,560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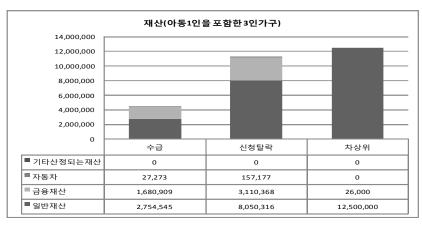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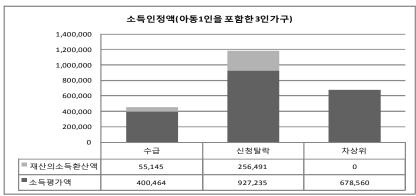




# [그림 3-16] 수급유형별 자산 실태: 아동 1인을 포함한 3인가구

1,000,000 900,000 800,000 700,000 600,000 500,000 400,000 200,000 100,000		동1인을 포함한 3인가구)	
	수급	신청탈락	차상위
■추정소득	38,487	116,722	0
■공적이전소득	22,727	15,987	161,000
■부양비	47,713	46,002	23,810
■사적이전소득	64,264	70,510	175,000
■재산소득	0	0	0
■사업소득	0	48,684	68,750
■근로소득	227,273	629,329	250,000





### □ 소득인정액

○ 아동 1인가구를 포함한 3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살펴보면, 수급가구 455,609원, 신청탈락가구 1,183,725원, 차상위가구 678,560원임.

# ⟨표 3-15⟩ 기구유형별 소득인정액: 아동 1인을 포함한 3인가구

(단위: 원)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소득평가액	400,464	927,235	678,560
재산의 소득환산액	55,145	256,491	0
소득인정액	455,609	1,183,725	678,560

# □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 비율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가구는 100%, 신청탈락가구는 47.4%, 차 상위가구는 75%가 최저생계비 미만가구로 나타남.

### ⟨표 3-16⟩ 기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비율: 아동 1인을 포함한 3인가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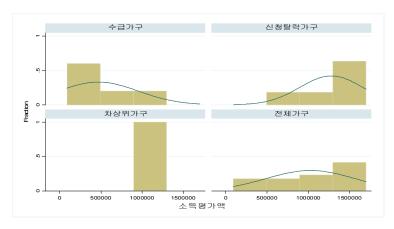
			( = 11. /0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100.0	73.7	75.0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00.0	94.7	100.0
소득인정액 기준	100.0	47.4	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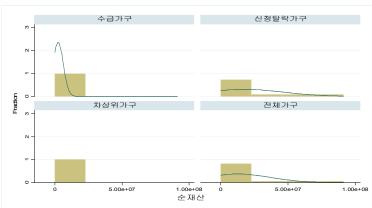
# 3. 아동 2인을 포함한 4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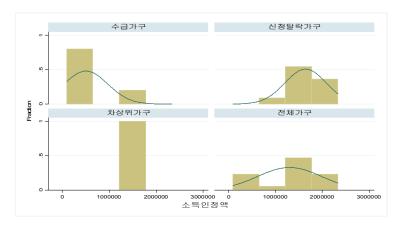
# □ 소득평가액

- 아동 2인을 포함한 4인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수급가구 469,065원, 신 청탈락가구 1,278,075원, 차상위가구 1,044,870원임.
- 근로소득은 차상위가구(900,000원) 신청탈락가구(690,909원) 수 급가구(240,000원) 순임.

# [그림 3-17] 수급유형별 소득 및 재산 분포: 아동 2인을 포함한 4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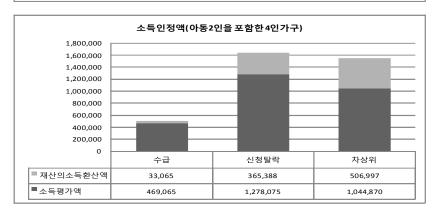






소득평가액(아동2인을 포함한4인가구)			
1,400,000			
1,200,000			
1,000,000			
800,000			
600,000		_	
400,000		_	
200,000			
0	수급	신청탈락	차상위
■추정소득	0	343,694	0
■ 공적이전소득	122,000	0	132,000
■부양비	18,684	46,471	12,870
■사적이전소득	88,381	4,274	0
■재산소득	0	1,818	0
■사업소득	0	190,909	0
■근로소득	240,000	690,909	900,000

재산(아동2인을 포함한 4인가구)			
25,000,000			
20,000,000			
15,000,000		_	
10,000,000			
5,000,000			_
0	수급	신청탈락	차상위
■ 기타산정되는재산	0	0	0
■자동차	211,200	117,273	0
■금융재산	936,000	1,111,000	8,099,000
■일반재산	4,129,032	18,300,000	0



- 사적이전소득은 수급가구의 경우 88,381원으로 가장 높았고, 신청탈 락가구는 4,274원으로 나타남.
- 공적이전소득은 차상위가구 132,000원, 수급가구 122,000원으로 나 타남.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은 차상위가구에서, 일반재산은 신청탈락가구에서 높게 나타 남.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차상위가구 506,997원, 신청탈락가구 365,388원, 수급가구 33,065원임.

### □ 소득인정액

○ 아동2인을 포함한 4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수급가구 502,130원, 신 청탈락가구 1,163,463원, 차상위가구 1,551,867원임.

⟨표 3-17⟩ 기구유형별 소득인정액: 아동 2인을 포함한 4인가구

(단위: 원)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소득평가액	469,065	1,278,075	1,044,870
재산의 소득환산액	33,065	365,388	506,997
소득인정액	502,130	1,643,463	1,551,867

# □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 비율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비율은 수급가구 100%, 신청탈락가구 9.1%, 차상위가구 0%로 나오나, 이는 아동2인을 포함한 4인가구의 케이스 수 한계에 기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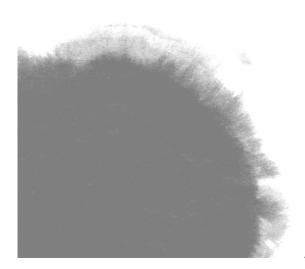
# ⟨표 3−18⟩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비율: 아동 2인을 포함한 4인가구

(단위: %)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100.0	36.4	100.0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00.0	90.9	100.0
소득인정액 기준	100.0	9.1	0.0

# 04

복지급여 수급 실태



# 제4장 복지급여 수급 실태

# 제1절 전체 기구의 수급 실태

- □ 전체 가구의 현금급여 수급 실태
  - 전체 가구의 평균 현금급여 총액은 연간 246만원에 이름.
    - 수급가구의 경우 연간 총 현금급여액은 400만원을 약간 넘는 수 준임.
      - 수급가구의 경우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초보장 생계급여 를 포함한 관련 급여의 수혜액이 317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나며, 다음이 노인관련급여, 아동·청소년관련급여의 순임.
    - 신청탈락과 보장중지가구들의 평균 현금급여 총액은 124만원이며,이 중 기초보장급여를 제외한 현금급여 총액은 약 80만원임.
      - 현금급여 중에서는 노인관련급여가 63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남.
    - 차상위급여 수급가구들의 평균 현금급여 총액은 약 182만원으로, 역시 이 중에서 노인관련급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보장급여를 제외한 복지급여의 수혜율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노인관련급여(대부분이 기초노령연금)의 수혜율이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장애인관련급여(38.4%), 아동·청소년관련급여(7.7%)의 순임.

- 기초보장급여를 제외한 현금급여를 하나라도 수급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차상위가구가 98.6%로 가장 높고, 신청탈락가구 (67.9%)와 기초보장 수급가구(69.5%)는 비슷하게 나타남.
- 급여를 하나라도 받고 있는 기구의 평균 급여액은 기초보장급여를 제외한 경우 차상위가구가 연간 184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수급가구 128만원, 신청탈락가구 118만원의 순임.
  - 이는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탈락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수급가구나 차상위가구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 기타 복지급여의 수급 현황

-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현금·현물성 복지급여로서 사회 복지통합전산망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각종 급여의 경우 수급 여부 만이 파악됨.
- 전체적으로 볼 때 의료관련 급여의 수혜율이 25.8%로 가장 높게 나 타남5).
  - 다음으로 수급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양곡 할인(12.1%)이며, 영유아·임산부 의료지원(8.2%),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보호 (7.4%), 아동·청소년·한부모 지원(4.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자체 자체 복지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수혜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9.9%이며, 기초보장 수급가구(12.0%)와 차상위가구(11.0%)가 신청탈락가구(6.0%)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자체 복지 수급률이 높게 나타남.

<sup>5)</sup> 의료관련급여의 수급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지자체의 입력 혼선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기초보장 수급자가 받는 의료급여를 포함시킨 반면, 일부 지자체는 이를 제외하여 입력하였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영유아·임산부 의료지원의 수혜율이 상대적 으로 높은 것은 인플로엔자 예방접종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상당 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력 오류 등을 감안하여 보고서의 기술에 서 지자체 조사 결과는 결과는 제시하되 해석은 하지 않을 것이다.

 $\langle {\tt H} \ 4{-}1 \rangle$  주요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전체 가구

	(단위: 원/년, %)				
		전체	수급	신청탈락	차상위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1,308,848	3,168,917	435,541	6,433
	긴급지원	34,357	7,560	91,512	13,104
	노인관련급여	759,502	470,488	627,100	1,202,559
평	장애인관련급여	255,400	126,241	56,210	579,106
균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11,698	6,840	14,233	14,871
수	아동,청소년관련급여	88,541	231,793	6,331	1,659
급	기타급여	2,469	2,129	4,241	1,261
	현금급여	2,460,815	4,013,968	1,235,168	1,818,993
	기초보장급여 제외	1,151,967	845,050	799,628	1,812,560
	현금급여	1,131,907	843,030	799,028	1,812,300
	기초보장관련급여	46.1	98.8	30.9	0.8
	긴급지원	2.0	0.4	5.3	0.8
	노인관련급여	64.5	42.3	58.1	95.3
수	장애인관련급여	38.4	11.1	9.7	94.8
급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1.9	1.3	2.3	2.1
<sup>ㅂ</sup> 률	아동,청소년관련급여	7.7	19.7	0.9	0.2
芒	기타급여	0.2	0.2	0.4	0.1
	현금급여	93.7	99.6	80.7	98.7
	기초보장급여 제외	77.3	65.9	67.9	98.6
	현금급여				
	기초보장관련급여	2,838,315	3,208,914	1,411,094	850,494
수	긴급지원	1,727,574	1,761,807	1,723,332	1,732,527
- 급	노인관련급여	1,177,139	1,113,426	1,079,715	1,262,152
평	장애인관련급여	664,816	1,133,618	580,931	610,742
。 균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623,917	515,000	619,461	705,229
급	아동,청소년관련급여	1,154,886	1,176,758	670,270	804,444
ㅂ 여	기타급여	1,016,638	947,273	1,038,275	1,100,000
액	현금급여	2,627,129	4,031,266	1,530,577	1,843,071
٦	기초보장급여 제외 현금급여	1,489,743	1,283,176	1,177,054	1,837,834
	CAHI	<u> </u>	l	l	

# $\langle {\tt H} \ 4-2 \rangle$ 기타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 수급갯수 및 수급률: 전체 가구

				(단위	뭐: 개/연간, %)
		전체	수급	신청탈락	차상위
		가구	가구	가구	가구
	영유아임산부 의료지원	0.084	0.113	0.056	0.077
	영유아 보육료 지원	0.031	0.065	0.011	0.013
	아동,청소년,한부모지원	0.045	0.096	0.016	0.013
평	청장년지원(자활사업 등)	0.005	0.007	0.005	0.001
균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보호	0.084	0.107	0.055	0.083
수 급	보훈관련 급여(의료제외)	0.012	0.001	0.008	0.028
日	일반 의료지원	0.393	0.690	0.288	0.153
갯 수	양곡할인	0.122	0.182	0.051	0.118
7	지자체 자체 사업	0.141	0.155	0.118	0.147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0.916	1.416	0.607	0.634
	지자체사업제외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0.775	1.261	0.489	0.487
	영유아임산부 의료지원	8.2	10.9	5.5	7.7
	영유아 보육료 지원	2.9	5.8	1.0	1.2
	아동,청소년,한부모지원	4.3	9.2	1.5	1.3
	청장년지원(자활사업 등)	0.5	0.7	0.5	0.1
수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보호	7.4	9.2	5.1	7.3
급	보훈관련 급여(의료제외)	1.2	0.1	0.7	2.8
률	일반 의료지원	25.8	42.1	20.9	12.0
	양곡할인	12.1	18.2	5.0	11.8
	지자체 자체 사업	9.9	12.0	6.0	11.0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47.6	63.0	36.4	40.5
	지자체사업제외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43.2	59.3	32.7	34.6
	영유아임산부 의료지원	1.021	1.041	1.005	1.000
수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01	1.113	1.050	1.077
급	아동,청소년,한부모지원	1.046	1.049	1.033	1.036
의	청장년지원(자활사업 등)	1.000	1.000	1.000	1.000
경 우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보호	1.133	1.160	1.075	1.131
평	보훈관련 급여(의료제외)	1.013	1.000	1.034	1.008
균	일반 의료지원	1.520	1.640	1.374	1.273
수	양곡할인	1.004	1.000	1.015	1.006
급	지자체 자체 사업	1.431	1.293	1.974	1.333
갯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1.923	2.246	1.669	1.564
수 	지자체사업제외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1.793	2.127	1.493	1.407

### □ 수급 전후의 소득 비교

- 아래 표에서는 모든 공적이전 이전의 소득과 기초보장급여 이후, 그 리고 모든 공적이전 이후의 소득을 비교하고 있음.
- 분석 대상가구 전체로 볼 때, 공적이전 이전에 비해 공적이전 이후 에 소득은 평균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경우 최종적인 평균소득은 약 44만원으로 공적이전 이전에 비해 소득이 4.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보충급여의 성격상 소득이 더 낮은 수급가구일수록 기초보장급 여를 더 많이 받아서, 수급자 내부적으로 결과적으로 분위별 소득격차가 줄어들었음.
  -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약 14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차상위가구의 경우 신청탈락가구에 비해 대체적인 급여의 수급률과 수혜액이 높은 결과로 최종적인 평균소득이 공적이전 이전의 소득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공적이전의 결과 수급가구의 소득이 특히 하위 분위를 중심으로 차 신청탈락가구나 차상위가구보다 높아짐.
  - 특히 하위 25% 지점의 소득은 신청탈락가구나 차상위가구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신청탈락가구나 차상위가구의 경우 소득보다는 부양 의무자기준이나 재산기준으로 인해 기초보장 수급을 받지 못한 결과 기초보장 수급을 받는 가구에 비해 훨씬 더 열악한 상태에서 생활하 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이는 공적이전 이후에는 평균적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데서도 알 수 있음.

# 〈표 4-3〉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전체 가구

(단위: 원)

수급유형	소득구분	평균	p25	p50	p75
, ,	공적이전전소득	96,878	17,396	59,126	121,000
수급 가구	기초보장후소득	360,955	290,730	337,575	360,336
	공적이전후소득	439,297	353,132	389,049	455,801
ചിലിലി	공적이전전소득	326,355	0	150,000	507,008
신청탈락 가구	기초보장후소득	362,650	46,873	206,051	542,473
/11	공적이전후소득	465,537	142,760	322,805	657,600
=1.11.61	공적이전전소득	183,623	0	78,371	284,654
차상위 가구	기초보장후소득	184,159	0	79,859	284,654
/11	공적이전후소득	358,393	160,700	268,300	468,893
전체 가구	공적이전전소득	193,837	0	86,085	238,504
	기초보장후소득	302,907	69,773	285,592	366,261
<u> </u>	공적이전후소득	420,305	210,000	369,429	510,000

# 제2절 노인·장애인 기구의 수급 실태

- 1. 노인 1인가구
- □ 노인 1인가구의 현금급여 수급 실태
  - 기초보장을 수급하고 있는 노인 1인가구의 경우 연간 약 247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급 노인가구 중 현금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약 98.2%이며, 현금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연간 수급액은 약 251만원으로 1인당 21만원 정도의 현금급여를 받는 셈임.
    - 수급 노인1인가구 중 99.8%는 노인관련급여(기초노령연금)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급여액은 연간 107만원 정도임.
    - 결과적으로 수급 1인 노인가구의 경우, 현금급여로 연간 364만원, 월 30만원 정도를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청탈락기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연간 128만원임. 급여의 대부분은 기초노령연금이며, 수혜율이 99.1%에 이름.
  - 차상위가구의 경우 기초노령연금(99.6%)과 더불어 장애인관련급여의 수혜율(97.9%)이 높게 나타나, 대부분이 이들 두 급여를 동시에 받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혜를 받고 있는 차상위가구의 경우 노인관련급여로 연간 106만원, 장애인관련급여로 연간 55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간 총 급여액은 평균 162만원으로 월 13.5만원 정도의 현금급여를 받고 있음.
  - 기초보장급여를 제외한 현금급여의 경우 차상위가구가 가장 수혜액 이 높게 나타나며, 다음이 기초보장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의 순임.

# □ 노인 1인가구의 기타 복지급여의 수급 현황

- 기타 공공부조성 급여에 있어서는 의료급여를 제외하고는 양곡할인 과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보호서비스의 수혜율이 높게 나타남.
  - 지자체 복지급여의 수혜율은 수급가구(67.7%)의 수혜율이 가장 높고 신청탈락가구와 차상위가구는 40% 전후로 유사함.

# 〈표 4-4〉 주요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노인 1인가구

				(단위: 원/년, %)
		수급기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2,467,168	196,100	6,405
	긴급지원	6,535	78,262	14,608
	노인관련급여	1,065,743	987,749	1,054,878
평	장애인관련급여	84,859	13,632	542,925
균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0	0	0
수	아동,청소년관련급여	0	0	0
급	기타급여	2,419	87	1,702
	현금급여	3,626,724	1,275,830	1,620,518
	기초보장급여 제외	1,159,555	1,079,730	1,614,113
	현금급여	1,139,333	1,079,730	1,014,113
	기초보장관련급여	98.2	20.3	0.7
	긴급지원	0.5	4.2	0.7
	노인관련급여	99.8	99.1	99.6
스	장애인관련급여	12.6	3.5	97.9
수 급 률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0.0	0.0	0.0
류	아동,청소년관련급여	0.0	0.0	0.0
근	기타급여	0.2	0.1	0.1
	현금급여	99.8	99.6	99.7
	기초보장급여 제외	99.8	99.3	99.7
	현금급여	77.8	77.3	77.1
	기초보장관련급여	2,513,131	967,891	879,256
스	긴급지원	1,384,553	1,864,797	2,005,295
그	노인관련급여	1,068,264	996,401	1,059,086
펴	장애인관련급여	675,286	384,490	554,679
수 급 평 균 급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근	아동,청소년관련급여			
ㅂ 여	기타급여	1,366,667	120,000	1,285,000
액	현금급여	3,635,302	1,281,393	1,624,822
٦	기초보장급여 제외 현금급여	1,162,298	1,086,808	1,618,400
	권미남의			

⟨표 4-5⟩ 기타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 수급갯수 및 수급률: 노인 1인가구

(단위: 개/연간, %)

	(단위: 개/연간, %)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영유아임산부 의료지원	0.058	0.072	0.077	
	영유아 보육료 지원	0.004	0.008	0.009	
	아동,청소년,한부모지원	0.011	0.012	0.011	
더	청장년지원(자활사업 등)	0.006	0.001	0.002	
평 균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보호	0.216	0.089	0.117	
수 급	보훈관련 급여(의료제외)	0.002	0.005	0.013	
口口	일반 의료지원	0.801	0.260	0.132	
갯 수	양곡할인	0.201	0.055	0.113	
T	지자체 자체 사업	0.260	0.145	0.169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1.558	0.647	0.643	
	지자체사업제외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1.299	0.502	0.474	
	영유아임산부 의료지원	5.8	7.2	7.7	
	영유아 보육료 지원	0.4	0.7	0.7	
	아동,청소년,한부모지원	1.1	1.2	1.1	
	청장년지원(자활사업 등)	0.6	0.1	0.2	
수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보호	18.2	8.1	10.5	
급	보훈관련 급여(의료제외)	0.2	0.5	1.3	
률	일반 의료지원	48.5	19.0	10.9	
	양곡할인	20.1	5.4	11.2	
	지자체 자체 사업	21.5	7.5	12.5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67.7	39.1	40.8	
	지자체사업제외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61.1	33.6	34.6	
	영유아임산부 의료지원	1.000	1.000	1.000	
수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00	1.100	1.182	
급	아동,청소년,한부모지원	1.000	1.063	1.063	
의	청장년지원(자활사업 등)	1.000	1.000	1.000	
경 우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보호	1.188	1.098	1.120	
· 평	보훈관련 급여(의료제외)	1.000	1.000	1.053	
균	일반 의료지원	1.651	1.365	1.220	
수	양곡할인	1.000	1.013	1.006	
- 급	지자체 자체 사업	1.209	1.923	1.356	
갯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2.303	1.656	1.576	
수 수	지자체사업제외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2.127	1.496	1.369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표 4-6〉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노인 1인가구

(단위: 원)

수급유형	소득구분	평균	p25	p50	p75
수급	공적이전전소득	71,590	0	59,126	100,000
구급 가구	기초보장후소득	277,187	273,298	288,107	301,043
711	공적이전후소득	379,231	368,644	381,686	398,164
신청탈락	공적이전전소득	182,796	0	86,982	284,958
선생들력 가구	기초보장후소득	199,137	9,988	119,848	302,517
/FT	공적이전후소득	314,183	128,896	250,691	422,517
 차상위 가구	공적이전전소득	114,911	0	57,544	200,000
	기초보장후소득	115,445	0	57,544	200,000
<u> </u>	공적이전후소득	260,794	120,000	210,000	347,888

### □ 노인 1인가구의 수급 전후 소득 비교

- 기초보장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적어도 하위 25%까지 는 모두 공적이전 전에 소득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수급가구의 경우 모든 공적이전을 받은 후 소득은 공적이전 이전의 소득보다 평균적으로 5.3배 정도 증가함.
  - 수급자 내부의 공적이전 이후 소득이 거의 평준화됨.
-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공적이전 후 소득은 이전 전보다 평균적으로 13만원 정도 증가함.
  - 차상위가구의 경우도 평균적으로 소득은 약 15만원 정도 증가하 였음.
  -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상 급여후 소득은 거의 급여전 소득과 비례함. 즉, 내부적인 소득편차가 크게 나타남.
- 공적이전 후의 소득를 비교할 때, 수급가구의 소득이 신청탈락가구나 차상위가구 소득을 평균적으로 초과함. 그러나 공적이전 이후에도 모 든 가구유형의 평균적인 소득은 2010년 1인당 최저생계비(월 50.4 만원)에 미달함.
  - 기초보장 비수급노인가구의 대부분이 부양의무자기준이나 재산기 준으로 인한 탈락자임을 시사.

# 2. 노인 2인가구

- □ 노인 2인가구의 현금급여 수급 실태
  - 노인으로만 구성된 2인가구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분석 대상가구가 노인관련급여(기초노령연금)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보장을 수급하고 있는 노인 2인가구의 경우 연간 약 385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급 노인가구 중 현금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약 97.3%이며,
       현금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연간 수급액은
       약 396만원으로 1인당 33만원 정도의 현금급여를 받고 있음.
    - 수급 노인 2인가구 모두 기초노령연금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급여액은 연간 175만원 정도임.
    - 최종적으로, 기초보장 수급 2인 노인가구의 경우, 현금급여로 연간 총 588만원, 월 49만원 정도를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청탈락기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연간 228만원의 현금급여를 받고 있음. 급여의 대부분은 기초노령연금이며, 수혜율이 99.5%에 이름.
  - 차상위가구의 경우 노인 1인가구와 마찬가지로 기초노령연금(99.6%) 과 더불어 장애인관련급여의 수혜율(98.9%)이 높게 나타나, 대부분 이 이들 두 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혜를 받고 있는 차상위가구의 경우 노인관련급여로 연간 169만원, 장애인관련급여로 연간 65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급여를 하나라도 받고 있는 가구의 연간 총 급여액은 평균 233 만원으로 월 19.4만원 정도의 현금급여를 받고 있음.
  - 기초보장급여를 제외한 현금급여의 경우 세 유형의 가구의 급여 수 준이 유사하게 나타남.

# ⟨표 4-7⟩ 주요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노인 2인가구

				(단위: 원/년, %)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3,851,233	358,995	474
	긴급지원	0	151,597	7,146
	노인관련급여	1,745,332	1,698,939	1,684,024
평	장애인관련급여	283,705	68,959	638,766
균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0	0	0
수	아동,청소년관련급여	0	0	0
급	기타급여	0	548	2,342
	현금급여	5,880,270	2,279,037	2,332,752
	기초보장급여 제외	2,029,038	1,920,042	2,332,278
	현금급여	2,029,038	1,920,042	2,332,276
	기초보장관련급여	97.3	22.4	0.3
	긴급지원	0.0	7.8	0.6
	노인관련급여	100.0	99.5	100.0
수	장애인관련급여	38.4	14.6	98.9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0.0	0.0	0.0
수 급 률	아동,청소년관련급여	0.0	0.0	0.0
근	기타급여	0.0	0.5	0.1
	현금급여	100.0	99.5	100.0
	기초보장급여 제외	100.0	99.5	100.0
	현금급여	100.0		100.0
	기초보장관련급여	3,957,230	1,604,486	168,840
수	긴급지원		1,952,919	1,273,853
그	노인관련급여	1,745,332	1,706,732	1,684,024
百百	장애인관련급여	738,954	471,938	646,014
수급 평균급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근	아동,청소년관련급여			
여	기타급여		120,000	1,670,000
액	현금급여	5,880,270	2,289,491	2,332,752
	기초보장급여 제외 현금급여	2,029,038	1,928,850	2,332,278

⟨표 4-8⟩ 기타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 수급갯수 및 수급률: 노인 2인가구

(단위: 개/연간, %)

				(단위: 개/연간, %)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영유아임산부 의료지원	0.089	0.100	0.093
	영유아 보육료 지원	0.000	0.000	0.008
	아동,청소년,한부모지원	0.000	0.009	0.017
:54	청장년지원(자활사업 등)	0.000	0.000	0.001
평 균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보호	0.143	0.055	0.046
수 급	보훈관련 급여(의료제외)	0.009	0.037	0.070
71)	일반 의료지원	0.813	0.320	0.165
갯 수	양곡할인	0.286	0.064	0.163
7	지자체 자체 사업	0.259	0.178	0.165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1.598	0.763	0.729
	지자체사업제외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1.339	0.584	0.564
	영유아임산부 의료지원	8.9	10.0	9.3
	영유아 보육료 지원	0.0	0.0	0.8
	아동,청소년,한부모지원	0.0	0.9	1.5
	청장년지원(자활사업 등)	0.0	0.0	0.1
수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보호	10.7	4.6	4.2
급	보훈관련 급여(의료제외)	0.9	3.7	7.0
률	일반 의료지원	51.8	24.2	11.9
	양곡할인	28.6	6.4	16.1
	지자체 자체 사업	18.8	10.5	13.0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67.0	42.5	46.6
	지자체사업제외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63.4	36.5	39.4
	영유아임산부 의료지원	1.000	1.000	1.000
수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00
급	아동,청소년,한부모지원		1.000	1.091
의	청장년지원(자활사업 등)			1.000
경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1 222	1 200	1 100
우	보호	1.333	1.200	1.100
평	보훈관련 급여(의료제외)	1.000	1.000	1.000
균	일반 의료지원	1.569	1.321	1.388
수	양곡할인	1.000	1.000	1.009
급	지자체 자체 사업	1.381	1.696	1.269
갯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2.387	1.796	1.566
수	지자체사업제외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2.113	1.600	1.431
	1.1.11 1 1.10 1			<u> </u>

# 〈표 4-9〉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노인 2인가구

(단위: 원)

수급유형	소득구분	평균	p25	p50	p75
ムコ	공적이전전소득	157,387	8,698	134,969	206,253
수급 가구	기초보장후소득	478,323	470,924	494,232	523,098
711	공적이전후소득	664,017	633,597	667,677	700,663
	공적이전전소득	314,740	28,730	200,000	493,829
신청탈락 가구	기초보장후소득	344,656	78,639	262,722	527,168
/11	공적이전후소득	563,503	282,318	479,797	764,013
 차상위 가구	공적이전전소득	201,174	0	121,486	314,051
	기초보장후소득	201,214	0	121,486	314,051
	공적이전후소득	436,698	218,200	384,200	574,000

# □ 노인 2인가구의 수급 전후 소득 비교

- 공적이전 이후 평균 소득은 기초보장 수급가구(66만원), 신청탈락가 구(56만원), 차상위가구(44만원)의 순임.
- 수급가구의 경우 모든 공적이전을 받은 후 소득은 공적이전 이전의 소득보다 평균적으로 4.2배 정도 증가함.
  - 기초보장급여의 보충급여 성격으로 인해 수급자 내부의 공적이전 이후 소득이 거의 평준화됨.
-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공적이전 후 소득은 이전 전보다 평균적으로 25만원 정도 증가함.
  - 차상위가구의 경우도 평균적으로 소득은 약 24만원 정도 증가하 였음.
  -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상 급여후 소득은 거의 급여전 소득과 비례 함. 즉, 내부적인 소득편차가 크게 나타남.
- 공적이전 이후에도 모든 가구유형의 평균적인 소득은 2010년 1인당 최저생계비(월 85.8만원)에 미달함.

# 3. 장애인 1인가구

- □ 장애인 1인가구의 현금급여 수급 실태
  - 기초보장 수급가구이면서 장애인 단독가구의 경우 평균적인 현금급 여 수급액은 512만원으로 노인 단독가구보다 높게 나타남.
    - 이 중 기초보장급여는 314만원이고, 기초보장 현금급여 수혜율은 94.5%, 수급받고 있는 가구의 가구당 급여액은 334만원임. 1가 구당 수혜액은 월 27.8만원임.
    - 이들 중 대부분은 또한 장애인관련급여(97.3%)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받고 있는 가구의 평균 수급액은 193만원에 이름
  -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1인당 평균 현금급여 수급액은 96.6만원으로 기초보장 수급가구나 차상위가구에 비해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낮음.
    - 급여의 수혜율 역시 하나라도 받고 있는 가구가 67%로 100%인 기초보장 수급가구나 차상위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이들 중 장애인관련급여를 받는 가구의 비중이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장애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평균 수급액은 63만원 정도임.
  - 차상위가구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급여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가구가 노인관련급여를 동시에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남.
    - 하나라도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의 평균 수급액은 162만원으로월 13.5만원 정도를 받고 있음.
  - 전체적으로 볼 때, 기초보장 수급기구가 기초보장급여 뿐 아니라 장 애급여도 더 많이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장애연금의 경우 중증일수록, 기초보장 수급자일수록 월 급여액을 더 높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임.
- □ 기타 급여의 경우도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수혜율과 수혜 프로그램 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프로그램의 "쏠림 현상"이 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수급가구의 상태가 좀 더 열약하고, 중증 장애인의 비율이좀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개선의 필요성이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함.

⟨표 4-10⟩ 주요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장애인 1인가구

				(단위: 원/년, %)
		수급	신청탈락	차상위
		가구	가구	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3,152,657	442,501	8,734
	긴급지원	0	68,512	19,693
	노인관련급여	176,548	85,353	1,042,756
평	장애인관련급여	1,754,247	353,936	552,623
균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959	0	0
수	아동,청소년관련급여	35,205	0	0
급	기타급여	3,288	16,170	0
	현금급여	5,122,904	966,473	1,623,806
	기초보장급여 제외	1,970,247	523,972	1 615 072
	현금급여	1,970,247	323,912	1,615,072
	기초보장관련급여	94.5	25.5	1.1
	긴급지원	0.0	6.4	1.3
	노인관련급여	16.4	9.6	97.9
수	장애인관련급여	97.3	56.4	98.5
급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1.4	0.0	0.0
ㅂ 률	아동,청소년관련급여	4.1	0.0	0.0
己	기타급여	1.4	1.1	0.0
	현금급여	100.0	67.0	100.0
	기초보장급여 제외	97.3	63.8	100.0
	현금급여	91.3	03.8	100.0
	기초보장관련급여	3,335,420	1,733,130	764,213
수	긴급지원		1,073,355	1,477,006
급	노인관련급여	1,074,000	891,467	1,065,072
ㅂ 평	장애인관련급여	1,803,662	627,736	561,174
· 균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70,000		
권 급	아동,청소년관련급여	856,667		
여	기타급여	240,000	1,520,000	
액	현금급여	5,122,904	1,442,039	1,623,806
7	기초보장급여 제외 현금급여	2,025,746	820,889	1,615,072

 $\langle {
m H} \ 4{ ext{-}}11 
angle$  기타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 수급갯수 및 수급률: 장애인 1인가구

(단위: 기	H/연간,	%)
--------	-------	----

L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1 21.61=1 7
L	+10 (141)111 (1-141)		12.9 로크기 1	차상위가구
	영유아임산부 의료지원	0.164	0.053	0.057
	영유아 보육료 지원	0.164	0.021	0.002
	아동,청소년,한부모지원	0.082	0.011	0.008
	청장년지원(자활사업 등)	0.000	0.000	0.000
펀 .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보호	0.082	0.053	0.101
수급	보훈관련 급여(의료제외)	0.000	0.021	0.017
百	일반 의료지원	0.671	0.266	0.131
갯 수	양곡할인	0.205	0.064	0.070
f   T	지자체 자체 사업	0.055	0.053	0.114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1.425	0.543	0.501
	지자체사업제외	1.250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1.370	0.489	0.387
	영유아임산부 의료지원	16.4	5.3	5.7
	영유아 보육료 지원	16.4	2.1	0.2
-	아동,청소년,한부모지원	8.2	1.1	0.8
	청장년지원(자활사업 등)	0.0	0.0	0.0
1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보호	6.8	5.3	8.2
급	보훈관련 급여(의료제외)	0.0	1.1	1.7
	일반 의료지원	43.8	20.2	10.7
	양곡할인	20.5	6.4	7.0
	지자체 자체 사업	2.7	5.3	9.5
7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69.9	34.0	33.0
	지자체사업제외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68.5	33.0	27.2
	영유아임산부 의료지원	1.000	1.000	1.000
수 (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00	1.000	1.000
	아동,청소년,한부모지원	1.000	1.000	1.000
의	청장년지원(자활사업 등)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1 200	1,000	1 222
우 :	보호	1.200	1.000	1.233
평	보훈관련 급여(의료제외)		2.000	1.000
균 📑	일반 의료지원	1.531	1.316	1.232
	양곡할인	1.000	1.000	1.000
급 🗀	지자체 자체 사업	2.000	1.000	1.200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2.039	1.594	1.520
	지자체사업제외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2.000	1.484	1.420

# ⟨표 4-12⟩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장애인 1인가구

(단위: 원)

수급유형	소득구분	평균	p25	p50	p75
수급 가구	공적이전전소득	45,891	0	17,396	80,000
	기초보장후소득	308,613	312,955	331,136	338,796
711	공적이전후소득	478,785		525,570	542,914
ر دادادا	공적이전전소득	156,940	0	87,644	268,394
신청탈락 가구	기초보장후소득	193,815	15,588	151,083	299,000
711	공적이전후소득	272,140		230,422	401,108
차상위 가구	공적이전전소득	95,972	0	38,333	166,654
	기초보장후소득	96,700	0	50,000	166,654
	공적이전후소득	242,930	120,000	202,000	320,000

# □ 장애인 1인가구의 수급 전후 소득 비교

- 모든 수급유형의 가구에서 적어도 하위 25%까지는 근로소득 등의 소득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공적이전 이후 평균 소득은 기초보장 수급가구(47만원), 신청탈락가 구(27만원), 차상위가구(24만원)의 순임.
  - 공적이전 수급이후의 소득만을 놓고 볼 때, 장애1인가구가 다른 어떤 가구유형보다도 형편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차상위가구의 경우 모든 공적이전 급여를 받은 이후에도 소 득 75%상의 가구소득도 32만원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박탈 상 태에 놓여 있음.
-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경우, 장애연금의 부가급여적 성격 등으로 인하 여 수급자 내부에서 중위 이상의 소득자들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 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제4절 한부모기구의 수급 실태

- 1. 한부모 2인가구
- □ 한부모 2인가구의 현금급여 수급 실태
  - 기초보장 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 2인가구의 경우 기초보장 현금급 여가 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적인 가구당 기초보장급여액은 419만원이며, 현금급여 수급 률은 96.4%, 현금급여를 받는 가구의 평균 급여액은 435만원임. 가구당 월 기초보장급여액은 36.3만원임.
    - 기초보장급여를 제외하고는 아동·청소년관련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가 13.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받고 있는 가구의 평균급여액은 연간 128만원 정도임.
  -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연간 98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정급여등 을 받는 가구가 22%임.
    - 이들 가구 중 상당수는 기초보장 수급 중지자인 것으로 추정됨. 기초보장급여의 수급률이 36.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차상위가구의 경우 전체 급여 평균액은 60만원 정도임. 한부모가정 지원급여 수급률이 55.4%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급여를 받 는 가구의 월급여액은 5만원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볼 때 한부모가구는 노인이나 장애인가구에 비해 기초보 장을 제외한 현금급여액이 낮게 나타남.
    -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등의 수급률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한부모가구의 경우 수급률도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수급액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표 4-13⟩ 주요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한부모 2인가구

				(단위: 원/년, %)
		수급	신청탈락	차상위
		가구	가구	가구
평っ	기초보장관련급여	4,193,373	620,160	29,152
	긴급지원	13,417	54,466	0
	노인관련급여	51,143	114,673	153,282
	장애인관련급여	61,429	88,462	105,663
균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1,190	77,708	304,518
수	아동,청소년관련급여	167,202	25,275	8,434
급	기타급여	17,036	0	0
	현금급여	4,504,790	980,743	601,049
	기초보장급여 제외	311,417	260.592	571,896
	현금급여	311,417	360,582	
	기초보장관련급여	96.4	36.3	2.4
	긴급지원	1.2	2.2	0.0
	노인관련급여	2.4	12.1	14.5
스	장애인관련급여	6.0	8.8	19.3
ュ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1.2	22.0	55.4
수 급률	아동,청소년관련급여	13.1	4.4	1.2
	기타급여	2.4	0.0	0.0
	현금급여	96.4	61.5	73.5
	기초보장급여 제외	22.6	40.7	73.5
	현금급여	22.0	40.7	15.5
	기초보장관련급여	4,348,683	1,710,139	1,209,825
수급평균급	긴급지원	1,127,010	2,478,190	
	노인관련급여	2,148,000	948,655	1,060,200
	장애인관련급여	1,032,000	1,006,250	548,125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100,000	353,570	549,457
	아동,청소년관련급여	1,276,818	575,000	700,000
여	기타급여	715,500		
액	현금급여	4,671,634	1,593,707	817,821
	기초보장급여 제외 현금급여	1,376,790	886,837	778,154

 $\langle {
m H} \ 4{-}14 
angle$  기타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 수급갯수 및 수급률: 한부모 2인가구

(단위: 개/연간, %)

	(단위: 개/연간, %)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영유아임산부 의료지원	0.286	0.011	0.145	
	영유아 보육료 지원	0.190	0.000	0.108	
	아동,청소년,한부모지원	0.131	0.011	0.024	
평	청장년지원(자활사업 등)	0.024	0.011	0.000	
균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보호	0.048	0.000	0.024	
수 급	보훈관련 급여(의료제외)	0.000	0.000	0.012	
71)	일반 의료지원	0.488	0.264	0.157	
갯 수	양곡할인	0.131	0.077	0.108	
丁	지자체 자체 사업	0.060	0.198	0.024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1.357	0.571	0.602	
	지자체사업제외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1.298	0.374	0.578	
	영유아임산부 의료지원	25.0	1.1	14.5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5	0.0	9.6	
	아동,청소년,한부모지원	11.9	1.1	2.4	
	청장년지원(자활사업 등)	2.4	1.1	0.0	
수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보호	4.8	0.0	2.4	
급	보훈관련 급여(의료제외)	0.0	0.0	1.2	
- 률	일반 의료지원	33.3	22.0	13.3	
	양곡할인	13.1	7.7	9.6	
	지자체 자체 사업	6.0	7.7	2.4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57.1	30.8	38.6	
	지자체사업제외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56.0	28.6	37.3	
	영유아임산부 의료지원	1.143	1.000	1.000	
수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31		1.125	
급	아동,청소년,한부모지원	1.100	1.000	1.000	
의	청장년지원(자활사업 등)	1.000	1.000		
경우평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보호	1.000		1.000	
	보훈관련 급여(의료제외)			1.000	
<del>균</del>	일반 의료지원	1.464	1.200	1.182	
수	양곡할인	1.000	1.000	1.125	
- 급	지자체 자체 사업	1.000	2.571	1.000	
갯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2.375	1.857	1.563	
수	지자체사업제외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2.319	1.308	1.548	
			1	<u> </u>	

# ⟨표 4-15⟩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한부모 2인가구

(단위: 원)

수급유형	소득구분	평균	p25	p50	p75
수급 가구	공적이전전소득	257,035	29,621	148,104	443,341
	기초보장후소득	606,483	468,516	583,639	677,551
/	공적이전후소득	649,693	557,325	625,469	763,104
신청탈락 가구	공적이전전소득	601,385	275,891	608,104	900,674
	기초보장후소득	653,065	310,833	641,088	957,600
	공적이전후소득	716,493	479,497	700,000	1,002,415
차상위 가구	공적이전전소득	476,203	84,654	500,000	800,000
	기초보장후소득	478,632	86,982	500,000	800,000
	공적이전후소득	543,657	200,000	550,000	850,000

### □ 한부모 2인가구의 수급 전후 소득 비교

- 기초보장 수급을 받고 있는 한부모 2인가구의 공적이전 이후 소득은 월 65만원 정도로 신청탈락가구에 비해서는 약간 낮지만, 차상위가 구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남. 공적이전 이후보다 소득이 약 40만원 정도 증가함.
-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최종적인 월평균소득은 71.6만원 정도이며, 공 적이전 전보다 소득이 약 15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신청탈락가구 중 적어도 상위 25%는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소득 증가로 인해 기초보장 수급을 탈피한 가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함.
- 차상위가구의 경우 공적이전 이후 소득은 평균적으로 54만원 정도로 최저생계비(85.8만원)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임.
  - 차상위가구 중 상위 25% 수준에서야 비로소 최저생계비 정도의 소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2. 한부모 3인가구

- □ 한부모 3인가구의 현금급여 수급 실태
  - 한부모 3인가구의 평균적인 기초보장급여액은 363만원으로, 한부모 2인가구(419만원)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남. 현금급여 수혜율은 96.2%이며, 수급받는 기구의 월평균 급여액은 31.5만원 정도임.
    - 기초보장급여 외의 급여도 평균적으로 연간 15.8만원에 불과해 기초보장급여 외에는 다른 현금급여 수혜율과 급여액이 상대적으 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현금급여 총액은 평균 127.7만원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79만원은 기초보장 관련급여임. 즉, 한부모 2인가구와 마찬가지로 이들 가구 중 상당수는 보장중지자인 것으로 추정됨.
    - 기초보장급여 이외의 급여 중에서는 한부모가정 지원급여의 수급 률이 34.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이 급여를 받는 가구의 평 균 급여액은 88만원으로 월 7.3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급여를 하나라도 받는 기구의 평균 급여 총액은 189만원으로 차 상위가구보다 높게 나타남.
  - 차상위가구의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급여의 수급률이 57.6%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들 가구의 급여액은 평균 105만원으로 월 8.8만원 정도를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하나라도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의 평균 현금급여 총액은 100 만원 정도임.
  - 전체적으로 한부모 3인가구의 경우도 한부모 2인가구와 마찬가지로 기초보장급여 외의 급여 수급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급여액 또한 낮은 수준임.

# ⟨표 4-16⟩ 주요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한부모 3인가구

				(단위: 원/년, %)	
		수급	신청탈락	차상위	
		가구	가구	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3,637,011	789,324	15,152	
	긴급지원	0	95,017	0	
	노인관련급여	0	24,977	32,545	
평	장애인관련급여	73,846	45,000	10,909	
균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11,538	308,230	605,339	
수	아동,청소년관련급여	57,692	15,000	36,364	
급	기타급여	15,269	0	0	
	현금급여	3,795,357	1,277,547	700,309	
	기초보장급여 제외	158,346	488,224	685,158	
	현금급여	138,340	400,224		
	기초보장관련급여	96.2	39.5	3.0	
	긴급지원	0.0	4.7	0.0	
	노인관련급여	0.0	2.3	3.0	
스	장애인관련급여	11.5	4.7	3.0	
수 급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3.8	34.9	57.6	
音	아동,청소년관련급여	7.7	2.3	3.0	
芒	기타급여	3.8	0.0	0.0	
	현금급여	96.2	67.4	69.7	
	기초보장급여 제외	26.9	41.9	66.7	
	현금급여	20.9	41.9	00.7	
	기초보장관련급여	3,782,492	1,996,525	500,000	
스	긴급지원		2,042,855		
수급평균	노인관련급여		1,074,000	1,074,000	
	장애인관련급여	640,000	967,500	360,000	
マラ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300,000	883,593	1,051,379	
한 급 영 행	아동,청소년관련급여	750,000	645,000	1,200,000	
	기타급여	397,000			
	현금급여	3,947,172	1,894,294	1,004,791	
	기초보장급여 제외	588,143	1,166,312	1,027,736	
	현금급여	,			

 $\langle \pm 4-17 \rangle$  기타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 수급갯수 및 수급률: 한부모 3인가구

(다의.	개/연간.	0/0
(5171.	711/37/51	701

		¥ ¬-1¬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영유아임산부 의료지원	0.115	0.047	0.121
	영유아 보육료 지원	0.269	0.035	0.121
	아동,청소년,한부모지원	0.115	0.058	0.000
-3	청장년지원(자활사업 등)	0.077	0.023	0.061
펀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보호	0.038	0.000	0.061
수 급	보훈관련 급여(의료제외)	0.000	0.000	0.000
甘一	일반 의료지원	0.500	0.244	0.303
/H L	양곡할인	0.192	0.070	0.091
<b>デ</b>	지자체 자체 사업	0.000	0.128	0.000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1.308	0.605	0.758
	지자체사업제외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1.308	0.477	0.758
	영유아임산부 의료지원	11.5	4.7	12.1
	영유아 보육료 지원	26.9	3.5	12.1
	아동,청소년,한부모지원	11.5	5.8	0.0
	청장년지원(자활사업 등)	7.7	2.3	6.1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보호	3.8	0.0	6.1
	보훈관련 급여(의료제외)	0.0	0.0	0.0
	일반 의료지원	34.6	19.8	24.2
	양곡할인	19.2	7.0	9.1
	지자체 자체 사업	0.0	5.8	0.0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61.5	37.2	51.5
	지자체사업제외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61.5	34.9	51.5
	영유아임산부 의료지원	1.000	1.000	1.000
수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00	1.000	1.000
	아동,청소년,한부모지원	1.000	1.000	
	청장년지원(자활사업 등)	1.000	1.000	1.000
경 .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1.000		1 000
우 .	보호	1.000		1.000
	보훈관련 급여(의료제외)			
	일반 의료지원	1.444	1.235	1.250
	양곡할인	1.000	1.000	1.000
	지자체 자체 사업		2.200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2.125	1.625	1.471
	지자체사업제외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2.125	1.367	1.471

#### ⟨표 4-18⟩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장애인 1인가구

(단위: 원)

수급유형	소득구분	평균	p25	p50	p75
2 =	공적이전전소득	507,277	150,000	580,119	750,000
수급 가구	기초보장후소득	810,362	700,000	821,353	972,234
711	공적이전후소득	837,379	716,674	833,853	1,034,847
ر دادادا	공적이전전소득	907,694	600,000	991,595	1,221,625
신청탈락 가구	기초보장후소득	973,471	691,200	1,000,000	1,249,873
711	공적이전후소득	1,056,014	770,099	1,129,026	1,326,348
 차상위 가구	공적이전전소득	755,091	500,000	800,000	1,002,667
	기초보장후소득	756,354	500,000	800,000	1,002,667
	공적이전후소득	828,952	588,718	800,000	1,135,434

#### □ 한부모 3인가구의 수급 전후 소득 비교

- 한부모 3인가구의 경우, 신청탈락가구의 공적이전 이후 소득이 105.6만원으로 가장 높고, 기초보장 수급가구(83.7만원)와 차상위가 구(82.8만원)의 소득은 비슷함.
- 특히,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공적이전 이전의 소득도 9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가구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결과로 기초보장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모두 공적이전 전후의 소득 차이가 노인이나 장애인가구에 비해 크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경우, 공적이전 전후 소득 차이는 33만원 정도이며, 신청탈락가구와 차상위가구의 경우 그 차이는 10만원 미만임.
- 소득 하위 75% 전후의 가구에서는 모든 수급유형의 가구에서 공적 이전 후 소득이 3인가구 최저생계비(111.1만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5절 대학생 또는 이동이 있는 기구의 수급 실태()

- 1. 대학생이 있는 가구
- □ 대학생이 있는 가구의 현금급여 수급 실태
  - 대학생이 있는 가구 중 수급가구와 신청탈락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각각 2.5가구, 2.7명으로 차상위가구(4.4명)에 비해 적음.

⟨표 4-19⟩ 대학생이 있는 가구의 수급유형별 평균 가구원수

(단위: 명)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전체
평균 가구원수	2.5	2.7	4.4	3.0

-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경우 기초보장급여는 평균적으로 연간 473만원임. 기초보장급여 이외의 현금급여는 전체 평균 55.4만원이며 이 중대부분은 기초노령연금으로 나타남.
- 신청탈락기구 중 28.9%는 기초보장 관련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보장중지가구인 것으로 추정됨. 이들 급여를 제외한 급여는 전체 평균 31.6만원에 불과함.
- 신청탈락가구와 차상위가구의 경우, 받고 있는 급여가 대부분 노인 혹은 장애인 관련 급여로 대학생과 관련된 급여는 거의 전무함.
  - 수급가구만이 유일하게 아동·청소년관련급여를 10% 정도 수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급액은 연간 10만원에 불과함.
  - 단, 여기에는 장학금은 제외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sup>6) 2</sup>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생이 있는 가구, 이동 1인을 포함한 3인가구, 아동 2인을 포함한 4인가구의 경우 사례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해석상의 위험이 있으며 일반화에 무리가 있다. 특히, 대학생이 있는 가구에서 수급가구(4가구), 차상위가구(11가구), 아동 1인을 포함한 3인가구에서 수급가구(11가구), 차상위가구(4가구), 아동 2인을 포함한 4인가구에서 수급가구(5가구), 차상위가구(1가구)는 지나치게 사례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의 중요성 때문에 분석을 시도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사례에 한정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표 4-20⟩ 주요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대학생이 있는 가구

				(단위: 원/년, %)
		수급	신청탈락	차상위
		가구	가구	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4,783,653	472,362	0
	긴급지원	0	112,967	272,727
	노인관련급여	537,000	140,853	1,220,291
평	장애인관련급여	0	24,868	938,182
균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0	37,516	0
수	아동,청소년관련급여	16,667	0	0
급	기타급여	0	0	0
	현금급여	5,337,320	788,565	2,431,200
	기초보장급여 제외	553,667	316,203	2,431,200
	현금급여		310,203	2,431,200
	기초보장관련급여	100.0	28.9	0.0
	긴급지원	0.0	5.3	9.1
	노인관련급여	50.0	13.2	90.9
수	장애인관련급여	0.0	7.9	100.0
수 급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0.0	5.3	0.0
률	아동,청소년관련급여	16.7	0.0	0.0
근	기타급여	0.0	0.0	0.0
	현금급여	100.0	57.9	100.0
	기초보장급여 제외	50.0	31.6	100.0
	현금급여	30.0	31.0	100.0
	기초보장관련급여	4,783,653	1,631,795	
수	긴급지원		2,146,365	3,000,000
	노인관련급여	1,074,000	1,070,480	1,342,320
펴	장애인관련급여		315,000	938,182
규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712,800	
수 급 평 균 급	아동,청소년관련급여	100,000		
여	기타급여			
액	현금급여	5,337,320	1,362,067	2,431,200
,	기초보장급여 제외	1,107,333	1,001,311	2,431,200
	현금급여	1,107,555	1,001,511	2,131,200

제4장 복지급여 수급실태

				(단위: 개/연간, %)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영유아임산부 의료지원	0.000	0.053	0.182
	영유아 보육료 지원	0.000	0.000	0.000
	아동,청소년,한부모지원	0.000	0.026	0.000
평균	청장년지원(자활사업 등)	0.000	0.053	0.000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보호	0.000	0.000	0.455
수 급	보훈관련 급여(의료제외)	0.000	0.000	0.000
갯	일반 의료지원	1.167	0.184	0.273
· 것 수	양곡할인	0.167	0.000	0.091
-1	지자체 자체 사업	0.333	0.026	0.545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1.667	0.342	1.545
	지자체사업제외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1.333	0.316	1.000
	영유아임산부 의료지원	0.0	5.3	18.2
	영유아 보육료 지원	0.0	0.0	0.0
	아동,청소년,한부모지원	0.0	2.6	0.0
	청장년지원(자활사업 등)	0.0	5.3	0.0
수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보호	0.0	0.0	27.3
급	보훈관련 급여(의료제외)	0.0	0.0	0.0
률	일반 의료지원	50.0	15.8	18.2
	양곡할인	16.7	0.0	9.1
	지자체 자체 사업	33.3	2.6	18.2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66.7	23.7	81.8
	지자체사업제외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50.0	23.7	63.6
	영유아임산부 의료지원		1.000	1.000
수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급	아동,청소년,한부모지원		1.000	
의	청장년지원(자활사업 등)		1.000	
경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1.667
우	보호			1.007
평	보훈관련 급여(의료제외)			
균	일반 의료지원	2.333	1.167	1.500
수	양곡할인	1.000		1.000
급	지자체 자체 사업	1.000	1.000	3.000
갯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2.500	1.444	1.889
수	지자체사업제외	2.667	1.333	1.571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langle \pm 4-21 \rangle$  기타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 수급갯수 및 수급률: 대학생이 있는 가구

#### ⟨표 4-22⟩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대학생이 있는 가구

(단위: 원)

수급유형	소득구분	평균	p25	p50	p75
ムコ	공적이전전소득	206,800	17,396	115,838	450,000
수급 가구	기초보장후소득	605,437	331,136	613,463	768,880
711	공적이전후소득	653,771	378,107	668,463	858,880
ر دادادا	공적이전전소득	749,447	416,873	660,000	1,135,806
신청탈락 가구	기초보장후소득	788,810	444,959	710,777	1,135,806
711	공적이전후소득	910,736	449,782	849,772	1,372,576
 차상위 가구	공적이전전소득	920,231	344,140	800,000	1,553,653
	기초보장후소득	920,231	344,140	800,000	1,553,653
	공적이전후소득	1,195,624	518,140	1,150,000	1,967,653

#### □ 대학생이 있는 가구의 수급 전후 소득 비교

- 가구원 수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모든 분위에서 수급가구의 소득은 신청탈락가구나 차상위가구보다 낮게 나타남.
  - 차상위가구의 경우, 공적 이전 전의 소득이 평균 92만원으로 대부분이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비해,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경우 공적이전 전의 중위소득이 11.6만원에 불과하여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이 부재하거나, 있더라 도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됨.
-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월 40만원 정도의 공적이전소 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 급여 중 대부분은 기초보장 급여임.

#### 2. 아동 1인 포함 3인가구

- □ 아동 1인을 포함한 3인가구의 현금급여 수급 실태
  - 아동 1인을 포함한 3인가구 중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평균적인 현금 급여 총액은 연간 507만원임. 이 급여 총액 중 36.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71만원은 기초보장관련급여임.
    - 기초보장 수급가구 중 18.2%가 각각 장애인관련급여와 아동, 청소년관련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청소년관련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연평균 급여액은 110만원임.
  -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42.1%가 보장중지가구로 분류될 수 있음. 이 들 가구에 기존에 받던 기초보장관련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평균 복 지급여액은 연간 23.6만원에 불과함.
    - 이들 가구 중 21.1%는 아동·청소년관련급여를 받고 있으며, 급 여액은 55만원임.
  - 차상위가구의 경우 연평균 급여총액은 146만원이며, 이들 급여의 대 부분은 노인관련급여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전체적으로 볼 때,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기초보장급여 신청에서 탈락하거나 보장이 중지된 경우 별도의 현금 복지급여를 받는 비율 이 상당히 낮게 나타남.
    - 급여가 있는 경우도 대부분은 가구원 중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임.

# ⟨표 4-23⟩ 주요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아동1인포함 3인가구

				(단위: 원/년, %)
		수급	신청탈락	차상위
		가구	가구	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4,705,793	838,072	0
	긴급지원	0	0	0
	노인관련급여	97,636	113,053	966,600
평	장애인관련급여	65,455	7,105	360,000
균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0	0	137,500
수급	아동,청소년관련급여	200,000	115,790	0
	기타급여	0	0	0
	현금급여	5,068,884	1,074,019	1,464,100
	기초보장급여 제외	363,091	235,947	1,464,100
	현금급여	303,091	233,947	1,404,100
	기초보장관련급여	100.0	42.1	0.0
	긴급지원	0.0	0.0	0.0
	노인관련급여	9.1	10.5	75.0
수	장애인관련급여	18.2	5.3	25.0
수 급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0.0	0.0	25.0
륟	아동,청소년관련급여	18.2	21.1	0.0
근	기타급여	0.0	0.0	0.0
	현금급여	100.0	63.2	75.0
	기초보장급여 제외	36.4	36.8	75.0
	현금급여			73.0
	기초보장관련급여	4,705,793	1,990,421	
수	긴급지원			
- 급	노인관련급여	1,074,000	1,074,000	1,288,800
평	장애인관련급여	360,000	135,000	1,440,000
규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550,000
수급 평 균급	아동,청소년관련급여	1,100,000	550,000	
여	기타급여			
액	현금급여	5,068,884	1,700,531	1,952,133
'	기초보장급여 제외	998,500	640,429	1,952,133
	현금급여	370,500	0.10, 129	1,,,,,,,,,,,,,,,,,,,,,,,,,,,,,,,,,,,,,,

105

 $\langle \pm 4-24 \rangle$  기타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 수급갯수 및 수급률: 아동1인포함 3인가구

(단위: 개/연간, %)

	(단위: 개/연간, %)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영유아임산부 의료지원	0.091	0.053	0.250	
	영유아 보육료 지원	0.000	0.000	0.250	
	아동,청소년,한부모지원	0.091	0.000	0.000	
ᆏ	청장년지원(자활사업 등)	0.000	0.000	0.000	
평 균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보호	0.273	0.053	0.000	
수 급	보훈관련 급여(의료제외)	0.000	0.000	0.000	
日刊	일반 의료지원	0.818	0.211	1.000	
갯 수	양곡할인	0.182	0.000	0.250	
T	지자체 자체 사업	0.000	0.105	0.500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1.455	0.421	2.250	
	지자체사업제외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1.455	0.316	1.750	
	영유아임산부 의료지원	9.1	5.3	25.0	
	영유아 보육료 지원	0.0	0.0	25.0	
	아동,청소년,한부모지원	9.1	0.0	0.0	
	청장년지원(자활사업 등)	0.0	0.0	0.0	
수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보호	18.2	5.3	0.0	
급	보훈관련 급여(의료제외)	0.0	0.0	0.0	
률	일반 의료지원	45.5	15.8	50.0	
	양곡할인	18.2	0.0	25.0	
	지자체 자체 사업	0.0	5.3	25.0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63.6	26.3	75.0	
	지자체사업제외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63.6	21.1	75.0	
	영유아임산부 의료지원	1.000	1.000	1.000	
수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00	
급	아동,청소년,한부모지원	1.000			
의	청장년지원(자활사업 등)				
경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1.700	1.000		
우	보호	1.500	1.000		
평	보훈관련 급여(의료제외)				
균	일반 의료지원	1.800	1.333	2.000	
수	양곡할인	1.000		1.000	
급	지자체 자체 사업		2.000	2.000	
갯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2.286	1.600	3.000	
수	지자체사업제외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2.286	1.500	2.333	
	1 1 1 1 1		l		

#### ⟨표 4-25⟩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아동1인포함 3인가구

(단위: 원)

수급유형	소득구분	평균	p25	p50	p75
入コ	공적이전전소득	377,737	127,816	400,830	500,000
수급 가구	기초보장후소득	769,886	716,538	775,587	832,064
	공적이전후소득	800,189	741,717	791,695	862,064
دا جا جا	공적이전전소득	911,247	700,000	800,000	1,067,789
신청탈락 가구	기초보장후소득	981,087	700,000	823,812	1,187,073
/ 1 1	공적이전후소득	1,007,315	740,892	865,478	1,281,549
 차상위 가구	공적이전전소득	517,560	185,121	535,121	850,000
	기초보장후소득	517,560	185,121	535,121	850,000
/ I I	공적이전후소득	678,560	300,121	755,121	1,057,000

#### □ 대학생이 있는 가구의 수급 전후 소득 비교

- 공적 이전소득을 받고 난 후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신청탈락가구 (100.7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급가구(80만원), 차상위가구 (67.9만원)의 순임.
  -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경우 공적이전 전후 소득 차이가 약 42만원 정도 나는 것으로 나타남.
  -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공적이전 이전의 소득이 91만원으로 상당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상대적으로 소득 여전히 3인가구의 최저생계비에는 못미치지만 으로 인해 기초보장 신청에 탈락하거나 보장중지된 것으로 보임.

#### 3. 아동 2인 포함 4인가구

- □ 이동 2인을 포함한 4인가구의 현금급여 수급 실태
  - 아동이 2명 있는 4인가구의 경우 연간 평균 수급액은 573만원, 현금 급여를 받는 가구의 평균 수급액은 716만원으로 월평균 6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외의 급여는 주로 노인이나 장애인 관련급여로 아동과 관련된 급여를 받는 가구는 전무함.
  -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기초보장급여를 제외한 현금급여는 연간 17.9 만원에 불과함.
  - 차상위가구 역시 기초보장관련급여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인 또는 장 애인과 관련된 급여임
  - 전체적으로 기초보장 수급가구를 포함해서 아동 2인이 있는 4인가구 의 경우 아동관련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가 매우 드믊.

# ⟨표 4-26⟩ 주요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아동2인포함 4인가구

(단위· 원/년 %)

				(단위: 원/년, %)
		수급	신청탈락	차상위
		가구	가구	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5,731,474	385,114	1,229,310
	긴급지원	0	0	0
	노인관련급여	429,600	0	859,200
평	장애인관련급여	1,072,000	24,545	720,000
균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0	0	0
수 급	아동,청소년관련급여	0	154,546	0
급	기타급여	0	0	0
	현금급여	7,233,074	564,205	2,808,510
	기초보장급여 제외	1,501,600	179,091	1,579,200
	현금급여	1,301,000	179,091	1,379,200
	기초보장관련급여	80.0	27.3	100.0
	긴급지원	0.0	0.0	0.0
	노인관련급여	40.0	0.0	100.0
스	장애인관련급여	40.0	9.1	100.0
수 급 률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0.0	0.0	0.0
르	아동,청소년관련급여	0.0	18.2	0.0
芒	기타급여	0.0	0.0	0.0
	현금급여	80.0	54.5	100.0
	기초보장급여 제외	60.0	27.2	100.0
	현금급여	60.0	27.3	100.0
	기초보장관련급여	7,164,343	1,412,083	1,229,310
人	긴급지원			
エユ	노인관련급여	1,074,000		859,200
면	장애인관련급여	2,680,000	270,000	720,000
づコ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수 급 평 균 급	아동,청소년관련급여		850,000	
여	기타급여			
역 액	현금급여	9,041,343	1,034,375	2,808,510
٦	기초보장급여 제외	2,502,667	656,667	1,579,200
	현금급여	, ,- ,-		j- · - j · · · ·

109

⟨표 4-27⟩ 기타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 수급갯수 및 수급률: 아동2인포함 4인가구

(단위: 개/연간, %)

	(단위: 개/연간, %)				
		수급가구	신청탈락가구	차상위가구	
	영유아임산부 의료지원	0.000	0.000	0.000	
	영유아 보육료 지원	0.000	0.000	0.000	
	아동,청소년,한부모지원	0.000	0.000	0.000	
평균수급갯	청장년지원(자활사업 등)	0.000	0.000	0.000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보호	0.200	0.000	0.000	
<del>イ</del> フ	보훈관련 급여(의료제외)	0.000	0.000	0.000	
70	일반 의료지원	0.600	0.000	0.000	
갯 수	양곡할인	0.400	0.091	0.000	
7	지자체 자체 사업	0.000	0.000	0.000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1.200	0.091	0.000	
	지자체사업제외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1.200	0.091	0.000	
	영유아임산부 의료지원	0.0	0.0	0.0	
	영유아 보육료 지원	0.0	0.0	0.0	
	아동,청소년,한부모지원	0.0	0.0	0.0	
	청장년지원(자활사업 등)	0.0	0.0	0.0	
수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보호	20.0	0.0	0.0	
급	보훈관련 급여(의료제외)	0.0	0.0	0.0	
률	일반 의료지원	60.0	0.0	0.0	
	양곡할인	40.0	9.1	0.0	
	지자체 자체 사업	0.0	0.0	0.0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80.0	9.1	0.0	
	지자체사업제외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80.0	9.1	0.0	
	영유아임산부 의료지원				
수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급	아동,청소년,한부모지원				
의	청장년지원(자활사업 등)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1 000			
경 우	보호	1.000			
평	보훈관련 급여(의료제외)				
균	일반 의료지원	1.000			
수급	양곡할인	1.000	1.000		
	지자체 자체 사업				
갯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1.500	1.000		
수	지자체사업제외 지자체조사 복지급여	1.500	1.000		
	1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표 4-28⟩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장애인 1인가구

(단위: 원)

수급유형	소득구분	평균	p25	p50	p75
ムコ	공적이전전소득	347,065	93,420	159,801	235,085
수급 가구	기초보장후소득	824,687	630,074	932,320	1,117,846
711	공적이전후소득	950,021	720,074	932,320	1,247,017
ر دادادات	공적이전전소득	1,278,075	920,000	1,405,284	1,657,600
신청탈락 가구	기초보장후소득	1,310,168	920,000	1,501,813	1,657,600
711	공적이전후소득	1,325,092	920,000	1,501,813	1,657,600
=1.11.61	공적이전전소득	912,870	912,870	912,870	912,870
차상위 가구	기초보장후소득	1,015,313	1,015,313	1,015,313	1,015,313
	공적이전후소득	1,147,313	1,147,313	1,147,313	1,147,313

#### 제6절 2차 추출 결과 복지급여 수급 실태

- 1. 가구유형별 복지급여 수급 실태
  - 가. 평균 수급액 및 수급률
- □ 복지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 전체가구의 현금급여 총액은 연간 평균 2,940,065원임
    - 수급가구의 연간 총 현금급여액은 4,171,805원으로 가장 높으며,
       이 중 기초보장관련급여(1,927,137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장 애인관련급여(498,457원), 노인관련급여(498,457원)의 순임
    - 신청탈락가구의 연간 총 급여액은 1,203,901원이며, 이 중 기초 보장관련급여(592,727원)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노인관련 급 여(375,471원), 긴급급여(126,628원) 순임
    - 차상위가구의 연간 총 급여액은 1,642,939원이며, 이중 장애인관 련 급여(1,126,383원)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노인관련급여 (296,169원), 기초보장관련급여(95,839원) 순임
  - 기초보장급여를 제외한 복지급여의 수급률에 있어서는 장애인 관련 급여가 41.72%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노인관련 급여(35.62%), 긴급지원(3.97%) 순임
    - 기초보장급여를 제외한 현금급여를 하나라도 수급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차상위가구가 88.76%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수급가구(69.98%), 신청탈락가구(51.52%) 순임
  - 기초보장을 제외하고, 급여를 하나라도 받고 있는 기구의 평균 급여 액은 차상위가구가 6,540,072원으로 가장 높으며, 수급자가구는 5,857,252원, 신청탈락가구는 5,501,931원임
    - 수급자가구는 기초보장관련급여가 3,329,536원으로 가장 높으며, 신청탈락가구(1,938,381원)와 차상위가구(1,631,463원)는 긴급지

# 원이 가장 높음

# 〈표 4-29〉 복지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단	위: 원/년, %)
	급여내용	전체가 구	수급가 구	신청탈 락 가구	차상위 가구
	현금급여 전체	2,940,065	4,171,805	1,203,901	1,642,939
	기초보장관련급여	1,927,137	3,229,299	592,727	95,839
	기초보장급여 제외 현금급여	1,012,928	942,506	611,174	1,547,100
평균	긴급지원	65,479	53,589	126,628	37,241
성진 수급액	노인관련급여	402,325	458,055	375,471	296,169
1117	장애인관련급여	498,457	399,933	66,437	1,126,383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24,753	2,075	28,059	74,948
	아동,청소년관련급여	18,171	25,633	11,855	6,457
	기타급여	3,743	3,221	2,724	5,902
	현금급여 전체	92.85	98.73	75.88	94.63
	기초보장관련급여	64.32	96.99	41.63	8.45
	기초보장급여 제외 현금급여	70.41	69.98	51.52	88.76
	긴급지원	3.97	3.69	6.53	2.28
수급률	노인관련급여	35.62	40.78	34.67	24.36
	장애인관련급여	41.72	37.90	11.61	78.34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3.18	0.46	3.91	8.91
	아동,청소년관련급여	1.84	2.26	1.82	0.87
	기타급여	0.59	0.51	0.50	0.87
	현금급여 전체	9,366,617	9,186,788	6,925,755	7,674,162
	기초보장관련급여	2,996,385	3,329,536	1,423,824	1,134,090
급여별	기초보장급여 제외 현금급여	6,370,232	5,857,252	5,501,931	6,540,072
수급	긴급지원	1,647,752	1,450,962	1,938,381	1,631,463
가구의	노인관련급여	1,129,610	1,123,177	1,082,880	1,215,977
평균	장애인관련급여	1,194,786	1,055,351	572,205	1,437,831
급여액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777,783	455,816	716,821	840,968
	아동,청소년관련급여	988,173	1,136,537	649,638	738,611
	기타급여	632,126	635,409	542,005	675,222

#### 나. 공적이전 전후 소득변화

#### □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 분석대상 가구의 공적이전 전과 기초보장 및 공적이전 후의 소득 변화를 보면, 수급가구는 354,435원, 신청탈락가구는 123,186원, 차상위가구는 147,400원으로, 수급가구가 2배 이상 높음
  - 수급가구는 장애인 2인가구의 소득변화가 525,462원으로 가장 크며, 신청탈락가구와차상위가구는 노인 2인가구의 소득액 변화가 각각 250,453원과 293,609원으로 가장 큼

〈표 4-30〉 가구유형·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단위: 원)
가구구분	소득내용	수급	신청탈락	차상위
ノバイモ	조국네중	가구	가구	가구
	공적이전전소득(A)	207,069	425,284	296,817
전체가구	기초보장후소득(B)	476,177	474,678	304,803
선세/[1	공적이전후소득(C)	561,504	548,470	444,217
	(C) - (A)	354,435	123,186	147,400
	공적이전전소득(A)	70,193	226,680	101,240
노인1인가구	기초보장후소득(B)	268,490	244,131	102,131
조현[전/[]	공적이전후소득(C)	378,902	354,431	283,858
Ï	(C) - (A)	308,709	127,751	182,618
	공적이전전소득(A)	163,200	373,276	216,158
노인2인가구	기초보장후소득(B)	454,865	398,658	216,649
工929777	공적이전후소득(C)	662,292	623,729	509,767
	(C) - (A)	499,092	250,453	293,609
	공적이전전소득(A)	95,820	215,923	100,337
소년소녀	기초보장후소득(B)	457,149	277,000	154,958
가장가구	공적이전후소득(C)	532,444	287,526	354,958
	(C) - (A)	436,624	71,603	254,621
	공적이전전소득(A)	348,699	604,818	583,436
취보 마(2이)	기초보장후소득(B)	649,948	670,083	599,751
한부모(2인)	공적이전후소득(C)	679,901	726,623	635,687
	(C) - (A)	331,202	121,805	52,251
	공적이전전소득(A)	542,506	876,272	760,695
한부모(3인)	기초보장후소득(B)	903,109	940,913	795,224
	공적이전후소득(C)	931,969	992,624	843,610

가구구분	소득내용	수급 가구	신청탈락 가구	차상위 가구
	(C) - (A)	389,463	116,352	82,915
	공적이전전소득(A)	397,278	832,896	757,369
아동1인포함	기초보장후소득(B)	805,821	892,385	763,340
3인가구	공적이전후소득(C)	874,938	903,093	847,655
	(C) - (A)	477,660	70,197	90,286
ما جوما	공적이전전소득(A)	628,652	1,004,454	790,875
아동2인	기초보장후소득(B)	1,020,533	1,080,956	791,715
포함 4이기기	공적이전후소득(C)	1,096,767	1,092,015	850,637
4인가구	(C) - (A)	468,115	87,561	59,762
	공적이전전소득(A)	77,364	208,920	72,358
장애인1인	기초보장후소득(B)	306,039	254,730	72,807
가구	공적이전후소득(C)	408,153	302,882	206,377
	(C) - (A)	330,789	93,962	134,019
	공적이전전소득(A)	167,497	451,430	279,900
장애인2인	기초보장후소득(B)	525,136	498,612	281,545
가구	공적이전후소득(C)	692,959	676,844	508,431
	(C) - (A)	525,462	225,414	228,531
	공적이전전소득(A)	463,901	870,462	960,852
비취 계키 그	기초보장후소득(B)	771,823	934,225	962,465
대학생가구	공적이전후소득(C)	830,805	1,033,316	1,062,101
	(C) - (A)	366,904	162,854	101,249
	공적이전전소득(A)	262,570	452,357	373,092
비비린	기초보장후소득(B)	554,033	513,549	383,654
미분류	공적이전후소득(C)	620,088	565,967	533,824
	(C) - (A)	357,518	113,610	160,732

# 2.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복지급여 수급 실태

가. 분석대상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

# □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가구주 성별

○ 근로능력 있는 수급기구는 남성 가구주의 비중이 가장 높은 71.74% 를 차지한 반면, 근로능력 없는 비수급가구는 여성 가구주의 비중이 가장 높아 43.79%로 나타남.

#### ⟨표 4-31⟩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가구주 성별

(단위: 가구, %)

	수급가구		비수급가구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없음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없음
남성	66(71.74)	272(64.31)	38(60.32)	163(56.2)
여성	26(28.26)	151(35.70)	25(39.68)	127(43.79)
계	92(100.00)	423(100.00)	63(100.00)	290(100.00)

- □ 수급유형 및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가구유형
  - 가구유형에서는 일반세대가 40%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음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장애인 세대가 많아 수급가구는 31.52%, 비수급가구는 31.52%를 차지함

#### ⟨표 4-32⟩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가구유형

(단위: 가구 %)

				(인치. 기타, 70)
	수급가구		비수급가구	
	근로능력	근로능력	근로능력	근로능력
	없음	있음	없음	있음
노인세대	4(4.35)	2(0.47)	0(0.00)	1(0.34)
소년소녀가정	0(0.00)	1(0.24)	0(0.00)	0(0.00)
모자세대	11(11.96)	101(23.88)	16(25.40)	67(23.10)
부자세대	4(4.35)	22(5.20)	1(1.59)	9(3.10)
장애인세대	29(31.52)	60(14.18)	1529(31.52)	51(17.59)
일반세대	38(41.3)	234(55.32)	28(44.44)	156(53.79)
미혼부모세대	0(0.00)	0(0.00)	0(0.00)	0(0.00)
조손세대	4(4.35)	0(0.00)	2(3.17)	2(0.69)
기타	2(2.17)	3(0.71)	1(1.59)	4(1.38)
계	92(100.00)	423(100.00)	63(100.00)	290(100.00)

#### □ 수급유형 및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주거유형

- 수급가구 중에서 주거유형이 월세(보증부월세포함)인 경우는 근로능력 없는 가구는 28.26%, 근로능력 있는 가구는 46.10%임
- 비수급자가구 중에서 주거유형이 월세(보증부월세포함)인 경우는 근 로능력 없는 가구는 36.51%, 근로능력 있는 가구는 39.31%임
  - 근로능력 없는 비수급가구의 자가 비율은 23.81%로 가장 높음

#### ⟨표 4-33⟩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주거유형

(단위: 가구. %)

				(단기: 기 1, 70)
	수급	가구	비수	급가구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없음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없음
자가	15(16.30)	36(8.51)	15(23.81)	48(16.55)
전세	18(19.57)	44(10.40)	8(12.70)	45(15.52)
월세(보증부월세포함)	26(28.26)	195(46.10)	23(36.51)	114(39.31)
임대주택(아파트)	16(17.39)	87(20.57)	6(9.53)	31(10.68)
무료임차(부분/전체)	17(18.48)	58(13.72)	10(15.88)	48(16.56)
기타	0(0.00)	3(0.71)	1(1.59)	4(1.37)
계	92(100.00)	423(100.00)	63(100.00)	290(100.00)

#### 나. 분석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

#### □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소득인정액

- 수급가구 여부에 관계없이 가구내 근로능력자가 있는 경우에 소득인 정액이 높음.
  - 근로능력있는 비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654,281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근로능력없는 비수급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082,925 원임.

〈표 4-34〉 수급유형 및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소득인정	(뀨 /	4-34>	수급유형	및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소득인정
----------------------------------	------	-------	------	---	------	-----	----	------

(단수	기.	워	١

	수급	가구	비수급	급가구
	근로능력	근로능력	근로능력	근로능력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소득인정액 평균	421,549	712,820	1,082,925	1,654,281
최소값	0	0	0	0
최대값	1,321,659	2,777,440	6,299,916	31,092,000
표준편차	379,325	383,446	1,025,817	2,838,978

#### 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복지급여 수급실태

- □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복지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 평균 현금급여액은 근로능력없는 수급가구(8,831,703원), 근로능력있는 수급가구(5,420,176원),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가구(1,516,085원), 근로능력이 있는 비수급가구(1,377,332원)의 순임
    - 근로능력없는 비수급가구가 수급하는 복지급여 중에서 기초보장 관련급여가 7,090,242원으로 가장 높으며, 기초보장급여를 제외 한 현금급여도 1,741,461원으로 가장 높은 액수임
  - 기초보장급여를 제외한 복지급여의 수급율에 있어서는, 근로능력없는 수급가구가 77.17%, 근로능력없는 비수급가구가 77.78%로 가장 높 음
    - 근로능력없는 가구는 노인관련급여와 장애인급여의 수급율이 근로능력가구에 비해서 높게 나타남
  - 급여별 수급 가구의 평균 급여액은 근로능력없는 수급가구 (15,190,230원), 근로능력있는 수급가구(11,970,163원),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가구(7,680,450원), 근로능력이 있는 비수급가구 (7,489,985원)의 순임
    - 한부모가정등과 관련된 급여는 근로무능력 수급가구가 100,000 원, 근로무능력 비수급가구가 1,473,178원 등으로 나타나, 평균적

# 으로 비수급가구의 지원액 수준이 높음

### ⟨표 4-35⟩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복지급여 현황(평균)

(다의 의)

					(단위: 원)
		수급	가구	비수	<del>-</del>
	복지급여 내용	근로능력	근로능력	근로능력	근로능력
	무기표의 대중	있음	없음	있음	없음
	현금급여 전체	8,831,703	5,420,176	1,516,085	1,377,332
	기초보장관련급여	7,090,242	4,808,929	352,857	796,652
	기초보장급여 제외 현금급여	1,741,461	611,247	1,163,228	580,680
평균	긴급지원	148,852	72,590	124,233	64,108
성판 수급	노인관련급여	385,239	51,796	225,581	138,855
Тн	장애인관련급여	1,062,370	433,735	558,516	216,947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1,087	13,701	210,454	122,943
	이동,청소년관련급여	143,913	35,225	44,444	35,655
	기타급여	0	4,200	0	2,172
	현금급여 전체	98.91	98.11	92.06	78.62
	기초보장관련급여	98.91	97.4	26.98	44.83
	기초보장급여 제외 현금급여	77.17	43.03	77.78	47.59
	긴급지원	4.35	5.91	6.35	4.83
수급률	노인관련급여	29.35	4.26	17.46	11.38
	장애인관련급여	61.96	32.39	58.73	24.83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1.09	2.13	14.29	11.03
	이동,청소년관련급여	9.78	4.26	6.35	4.14
	기타급여	0	0.24	0.00	0.69
	현금급여 전체	15,190,230	11,970,163	7,680,450	7,489,985
	기초보장관련급여	7,168,157	4,937,322	1,307,647	1,777,146
급여별	기초보장급여 제외 현금급여	8,022,073	7,032,841	6,372,803	5,712,839
수급	긴급지원	3,423,593	1,228,222	1,956,675	1,327,942
가구의	노인관련급여	1,312,667	1,217,200	1,291,964	1,220,242
평균	장애인관련급여	1,714,702	1,339,197	950,986	873,814
급여액	한부모가정등 관련급여	100,000	643,944	1,473,178	1,114,174
	이동,청소년관련급여	1,471,111	827,778	700,000	861,667
	기타급여	-	1,776,500	0	315,000

#### 라. 공적이전 전후 소득변화

- □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 공적이전 후의 소득 변화는 근로능력 없는 수급가구(745,472원), 근로능력있는 수급가구(457,898원), 근로능력 없는 비수급가구(168,253원), 근로능력있는 수급가구(138,371원)의 순임

#### ⟨표 4-36⟩ 공적이전 전후 소득변화(평균)

(단위	:	원)
-----	---	----

	수급가구		비수급가구	
	근로능력	근로능력	근로능력	근로능력
	있음	없음	있음	없음
공적이전전소득(A)	356,096	703,857	843,261	1,028,601
기초보장후소득(B)	946,950	1,104,601	872,665	1,094,989
공적이전후소득(C)	1,101,568	1,161,755	1,011,514	1,166,972
(C) - (A)	745,472	457,898	168,253	138,371

#### 제7절 종합

- □ 수급유형별 기초보장외 복지급여의 수혜율
  - 전체적으로 볼 때 차상위가구의 수혜율이 98.6%로 가장 높게 나타 나고, 기초보장 수급가구(65.9%)와 신청탈락가구(67.9%)의 수급률은 비슷하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차상위가구의 정의와 관련이 있음. 즉,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차상위가구는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한부모지원급여 등의 소위 '차상위'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음.
      -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차상위가구' 즉 '소득이 최저생 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기초보장 수급을 받지 않고 있는 가

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전체 분석 대상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활수준이 비교적 낮은 집단이라 할 수 있음.
- 기초보장 수급가구와 신청탈락가구를 비교할 때, 노인가구의 경우 두 유형 모두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수급률을 보임. 이는 노인인 경 우 소득 하위 70% 내외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 에서 당연한 결과일 수 있음.
  - 장애인의 경우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거의 대부분인 97.3%가 장애인 관련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청탈락기구의 경우 63.8%만이 이러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청탈락가구의 경제적 상태가 좋아 서, 즉 장애연금 등의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해서 그러할 수도 있겠지만, 기초보장 수급자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더 많아서일수도 있음.
  - 한부모가구의 경우는 대체로 선정탈락가구의 수급률이 40% 내외로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수급률 25% 내외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남.
    - 이는 여성가족부의 한부모지원사업이 대부분 원래 의미의 차상 위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이동이나 대학생이 있는 가구의 기초보장 외 복지급여의 수급률
     은 30~60% 내외이지만, 이들 급여의 대부분은 학생이나 이동과
     관련된 급여가 아닌 노인, 장애인 관련급여였음.
    - 이는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현물급여에 대한 조사 미흡과 관련이 있음.
    - 즉, 아동에 대한 급여는 대부분 바우처나 서비스, 장학금 형태로 주어지므로 현금화하기 어려워서 사실상 본 연구에서 비교가 불가능함.

#### □ 수급을 받고 있는 기구의 현금급여 수준

- 기초보장외 현금급여의 수준은 대체로 수급유형에 있어서는 차상위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기초보장 수급가구, 선정탈락 가구의 순임.
- 가구유형으로 볼 때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가구의 급여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한부모가구와 같은 취약가구의 급여 액은 상대적으로 낮음.

#### □ 수급 전후의 소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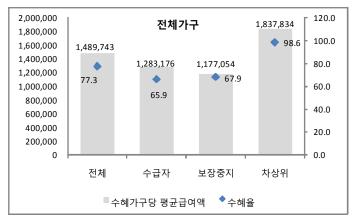
- 각 수급유형별 하위 분위(주로 각 집단의 중위 50% 미만)에서는 모든 공적이전급여 후의 소득에서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이들 기구의 소득이 여전히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미친다
     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소득역전현상이나 소득쏠림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석이라 볼 수 없음.
  - 즉, 기초보장 수급가구에 대한 지원혜택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선정 탈락가구와 차상위가구의 경우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기준 등으로 인해 기초보장 수급 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가 미비된 결과라 볼 수 있음.
  - 실제로 대부분의 기초보장 수급가구가 각종 부가적인 현금급여를받은 이후에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었음?).
- 기초노령연금 등 부가급여보다는 기초생계보장적 성격이 강한 급여 의 경우 대부분을 소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급여 중복이나 쏠림 상 대적으로 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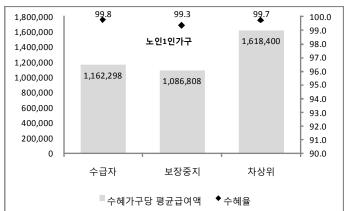
<sup>7)</sup> 물론 이는 기초보장제도의 현금급여기준선이 최저생계비의 83.7%(2010년 기준) 수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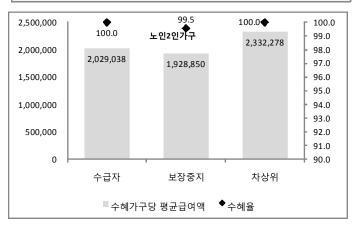
-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장애관련급여는 추가적인
   욕구에 대한 급여이기 때문에 기초보장 수급자 중 장애인이 이러한 급여를 더 받는다고 해서 문제시되는 것은 아님. 다만, 동일수준의 장애를 가진 비수급 빈곤자가 이러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더 적게 받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한부모급여의 경우 대부분 차상위가구에 주어지기 때문에 급여 중복의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음.
-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분석될 수는 없지만, 아동이 있는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경우 대부분 등록금, 교육급여, 각종 장학금 등을 받고 있는 반면, 차상위가구는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 실제로 분석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아동관련 현금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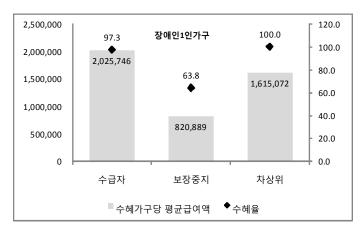
#### □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급여지급 분석결과(4인가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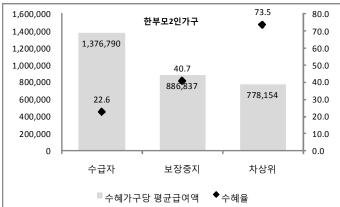
- 소득인정액은 근로능력 유무에 상관없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낮 게 나타나며, 공적이전 전후 소득변화에서도도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 없이 수급가구가 높음.
- 기초보장 이외의 현급급여 수급률은 근로능력없는 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비수급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근로능력있는 비수급자의 순으 로, 근로능력 유무가 수급률에 중요하게 작용함.
- 기초보장 이외의 현금급여 수급가구의 평균급여액은 근로능력없는 수급가구, 근로능력있는 수급가구, 근로능력없는 비수급가구, 근로능 력있는 수급가구의 순임.
- 결국 근로능력없는 비수급가구의 기초보장 이외의 현금급여 수급률 은 높을지라도, 평균 급여액은 근로능력있는 비수급가구보다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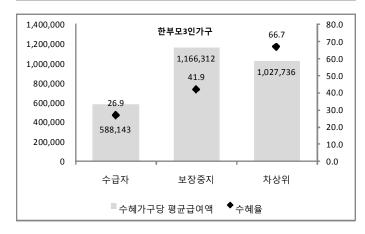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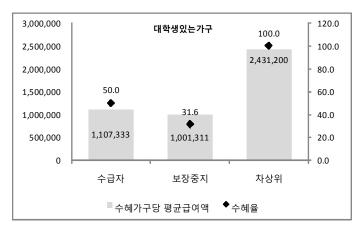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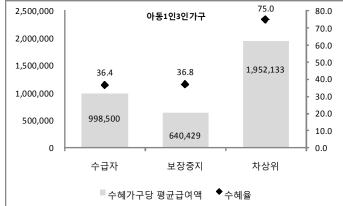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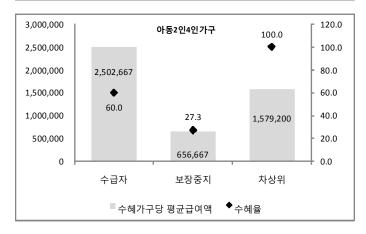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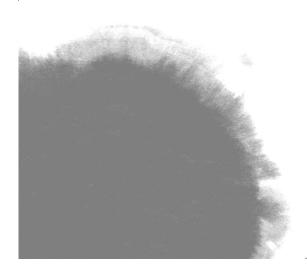






# 05

결론 및 제언



# 제5장 결론 및 제언

#### □ 수급유형별 소득 및 재산

- 평균적으로 기초보장 수급 이전의 수급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신청탈락가구나 차상위가구에 비해 훨씬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하위 수준에 매우 편포되어 있으며,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기 준 모두를 보았을 때 대부분의 수급가구가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제도가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
- 그러나 신청탈락가구나 차상위가구의 자산 상태가 기초보장 수급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최저생계비 미 만인 것으로 나타남. 기초보장 수급가구에 비해 소득과 재산이 덜 편포되어 있음.
  - 전체적으로 볼 때 신청탈락가구 중 70.1%, 차상위가구 중 87% 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기초보장 시각지대가 매우 널리 편재되어 있음을 시사.
  - 특히,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는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근로소득이 거의 0에 가깝고 소득의 대부분을 공적이전이나 사적이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비수급 빈곤층 중 장애인가구는 노인가구에 비해서 도 더 열악한 경제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차상위가구로 분류되는 장애인가구 중 91.6%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
- 한부모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서 신청탈락가구와 차상위가구의 소득 수준이 기초보장 수급 한부모 가구나 노인·장애인가구보다 높게 나타남.
  -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한부모 2인가구는 약 절반 정도, 한부모 3인가구는 약 2/3 정도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인 것으로 파악됨.
- 아동이나 대학생이 있는 가구의 경우도 소득평가액에 있어 기초 보장 수급가구와 신청탈락·차상위 가구 간에 근로소득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신청탈락 가구의 절반 이상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기초보장 수급기준인 최저생계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 복지급여 수급 현황

-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경우 특히 기초보장 현금급여 수급 후 경제 수 준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특히 취약계층의 상태를 크게 호전시킨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모든 공적이전 급여 이후의 소득도 대부분의 분위에서 최
     저생계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공적이전, 특히 기초보장 이후에 수급가구 내부의 소득이
     어느 정도 평준화되는 효과를 보임. 이는 기초보장급여의 보충급
     여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음.
- 기초보장 이외의 현금급여의 경우, 대체로 차상위가구-정확하게는 다양한 차상위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수급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표본추출에 있어서의 한계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임. 즉, 소득기준으로 차상위가구 전체를 모수를 한 것이 아니라 차상위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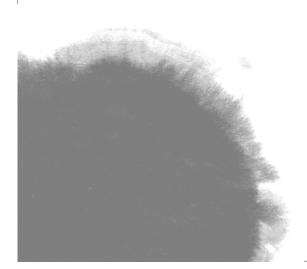
를 받고 있는 가구들을 모수로 표본추출을 한 결과임.

- 기초보장 수급가구와 신청탈락가구의 복지급여 수급률과 수급액을 비교해 보면,
  - 노인 가구의 경우 수급률과 수급액이 거의 유사함.
  - 장애인가구의 경우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수급률과 수급액이 상당 히 더 높게 나타남.
  - 한부모가구의 경우 신청탈락가구의 수급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남.
  - 이동이나 대학생이 있는 가구의 경우 수급률이 유사하나, 이동관 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볼 때,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급여 수급률과 수급률이 매우 높게 나타남.
  - 한부모가구의 경우 수급률이 낮고, 수급액도 미미함.
  - 이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사실상 아동관련 급여의 수급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연구의 한계과 제언

-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상의 분류체계가 다소 혼란스러워 정확한 표본 추출과 자료의 효율적·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이를 정비할 필요성 이 있다고 보여짐.
- 타부처 복지관련급여, 현물 및 서비스 급여,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등의 수급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조 사틀과 조사표 개발이 요구됨.
  - 공급자측(정부)에 대한 조사와 아울러 수요자측(기초보장수급자, 차상위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 복지급여의 효과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기적 인 조사·평가사업이 필요함.

부 표



									(11) 0)
수급유형	소득분류	N	mean	p5	p25	p50	p75	p95	max
수급	근로소득	4,894	12,394	0	0	0	0	0	1,700,000
신청탈락		3,917	135,613	0	0	0	0	900,000	3,615,000
차상위		4,363	48,844	0	0	0	0	400,000	2,319,547
수급	사업소득	4,894	2,579	0	0	0	0	0	1,500,000
신청탈락		3,917	16,285	0	0	0	0	0	1,500,000
차상위		4,363	15,874	0	0	0	0	100,000	1,300,000
수급	재산소득	4,894	471	0	0	0	0	0	220,000
신청탈락		3,917	1,388	0	0	0	0	0	600,000
차상위		4,363	1,821	0	0	0	0	0	350,000
수급	사적이전소득	4,894	64,103	0	17,396	33,000	86,982	206,982	622,081
신청탈락		3,917	41,739	0	0	0	52,988	200,000	1,180,000
차상위		4,363	88,625	0	0	0	120,396	400,000	1,600,000
수급	부양비	4,894	15,472	0	0	0	0	115,088	607,630
신청탈락		3,917	88,492	0	0	0	81,324	535,909	1,535,622
차상위		4,363	20,248	0	0	0	0	121,596	1,224,317
수급	공적이전소득	4,894	75,193	0	0	90,000	100,000	204,000	748,100
신청탈락		3,917	91,429	0	0	88,000	90,000	280,000	1,980,000
차상위		4,363	168,817	90,000	120,000	120,000	210,000	324,000	1,357,660
수급	추정소득	4,894	1,860	0	0	0	0	0	723,360
신청탈락		3,917	42,838	0	0	0	0	427,440	1,972,800
차상위		4,363	8,211	0	0	0	0	0	1,116,000
수급	소득평가액	4,894	172,071	17,396	90,000	144,000	217,396	427,440	1,795,920
신청탈락		3,917	417,784	0	90,000	276,982	608,242	1,300,000	3,615,000
차상위		4,363	352,440	90,000	144,000	267,544	464,000	932,122	2,583,547

수급유형	소득분류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수급	근로소득	1,695	118	0	0	0	0	0	150,000
신청탈락		1,382	14,872	0	0	0	0	150,000	600,000
차상위		1,510	4,087	0	0	0	0	0	531,000
수급	사업소득	1,695	2,601	0	0	0	0	0	207,680
신청탈락		1,382	5,716	0	0	0	0	0	750,000
차상위		1,510	4,936	0	0	0	0	0	514,840
수급	재산소득	1,695	1,247	0	0	0	0	0	220,000
신청탈락		1,382	1,105	0	0	0	0	0	350,000
차상위		1,510	1,242	0	0	0	0	0	300,000
수급	사적이전소득	1,695	50,969	0	0	17,396	86,982	165,000	486,982
신청탈락		1,382	43,110	0	0	0	59,126	200,000	627,396
차상위		1,510	87,754	0	0	15,972	144,654	384,654	771,335
수급	부양비	1,695	16,356	0	0	0	0	122,064	413,152
신청탈락		1,382	116,886	0	0	0	156,776	598,131	906,159
차상위		1,510	15,927	0	0	0	0	74,941	805,148
수급	공적이전소득	1,695	100,553	90,000	90,000	90,000	90,000	120,000	643,500
신청탈락		1,382	107,803	88,000	88,000	90,000	90,000	231,790	788,000
차상위		1,510	140,588	90,000	120,000	120,000	135,000	210,000	710,000
수급	추정소득	1,695	299	0	0	0	0	0	220,000
신청탈락		1,382	1,105	0	0	0	0	0	388,000
차상위		1,510	965	0	0	0	0	0	500,000
수급	소득평가액	1,695	172,142	90,000	107,396	149,126	208,764	340,000	659,091
신청탈락		1,382	290,598	88,000	98,370	202,368	391,750	798,596	999,401
차상위		1,510	255,500	90,000	120,000	210,000	335,000	592,000	972,607

	日川 0 豆 工一,		'						(111. 6)
수급유형	소득분류	N	mean	p5	p25	p50	p75	p95	max
수급	근로소득	112	9,732	0	0	0	0	100,000	280,000
신청탈락		219	45,616	0	0	0	0	323,000	1,200,000
차상위		713	25,140	0	0	0	0	200,000	797,000
수급	사업소득	112	16,260	0	0	0	0	120,120	293,746
신청탈락		219	25,393	0	0	0	0	200,000	923,514
차상위		713	26,629	0	0	0	0	216,071	600,000
수급	재산소득	112	393	0	0	0	0	0	44,000
신청탈락		219	457	0	0	0	0	0	100,000
차상위		713	2,595	0	0	0	0	0	270,000
수급	사적이전소득	112	57,625	0	0	0	100,674	240,000	500,000
신청탈락		219	36,462	0	0	0	0	200,000	600,000
차상위		713	116,081	0	0	0	200,000	500,000	840,000
수급	부양비	112	73,377	0	0	0	99,240	335,767	607,630
신청탈락		219	206,812	0	0	90,307	290,639	843,941	1,528,260
차상위		713	28,497	0	0	0	0	191,894	1,224,317
수급	공적이전소득	112	183,131	140,800	144,000	174,000	200,806	340,000	468,970
신청탈락		219	203,799	140,800	140,800	144,000	218,000	436,890	1,234,000
차상위		713	231,798	140,800	174,000	179,541	264,000	414,000	955,000
수급	추정소득	112	0	0	0	0	0	0	0
신청탈락		219	0	0	0	0	0	0	0
차상위		713	2,234	0	0	0	0	0	732,500
수급	소득평가액	112	340,518	144,000	194,000	313,758	415,693	713,552	826,386
신청탈락		219	518,539	140,800	249,997	418,709	718,910	1,234,000	1,669,060
차상위		713	432,972	144,000	206,788	384,000	574,000	910,000	1,595,000

수급유형	소득분류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수급	근로소득	73	0	0	0	0	0	0	0
신청탈락		94	36,255	0	0	0	0	375,000	750,000
차상위		525	3,284	0	0	0	0	0	400,000
수급	사업소득	73	1,096	0	0	0	0	0	80,000
신청탈락		94	1,596	0	0	0	0	0	100,000
차상위		525	5,747	0	0	0	0	0	320,000
수급	재산소득	73	0	0	0	0	0	0	0
신청탈락		94	443	0	0	0	0	0	41,667
차상위		525	2,593	0	0	0	0	0	300,000
수급	사적이전소득	73	40,912	0	0	17,396	59,126	159,126	286,982
신청탈락		94	77,643	0	0	0	86,982	416,667	699,130
차상위		525	79,044	0	0	0	100,000	357,536	750,000
수급	부양비	73	3,884	0	0	0	0	30,665	133,305
신청탈락		94	32,579	0	0	0	0	204,792	397,711
차상위		525	5,148	0	0	0	0	0	603,913
수급	공적이전소득	73	164,848	30,000	100,000	200,000	200,000	270,000	445,920
신청탈락		94	60,671	0	0	0	90,000	316,690	843,270
차상위		525	139,831	90,000	120,000	120,000	135,000	210,000	710,000
수급	추정소득	73	0	0	0	0	0	0	0
신청탈락		94	8,424	0	0	0	0	0	295,920
차상위		525	156	0	0	0	0	0	82,000
수급	소득평가액	73	210,740	59,126	147,396	217,396	240,625	359,126	532,902
신청탈락		94	217,611	0	17,396	122,627	325,920	699,130	931,575
차상위		525	235,804	90,000	120,000	190,000	320,000	520,000	852,000

(131 0/ 1			,						(11) (1)
수급유형	소득분류	N	mean	p5	p25	p50	p75	p95	max
수급	근로소득	84	158,485	0	0	0	351,000	670,173	1,300,000
신청탈락		91	357,953	0	0	210,000	700,000	1,033,697	1,306,667
차상위		83	317,644	0	0	0	680,000	1,000,000	1,100,000
수급	사업소득	84	5,556	0	0	0	0	0	366,666
신청탈락		91	21,340	0	0	0	0	0	800,000
차상위		83	10,442	0	0	0	0	0	500,000
수급	재산소득	84	0	0	0	0	0	0	0
신청탈락		91	3,297	0	0	0	0	0	300,000
차상위		83	0	0	0	0	0	0	0
수급	사적이전소득	84	60,225	0	0	29,621	100,674	200,000	323,544
신청탈락		91	78,550	0	0	0	100,674	476,752	608,104
차상위		83	94,559	0	0	27,053	112,469	500,000	629,767
수급	부양비	84	12,254	0	0	0	0	64,305	263,305
신청탈락		91	39,314	0	0	0	0	231,909	941,975
차상위		83	4,500	0	0	0	0	0	253,305
수급	공적이전소득	84	36,645	0	0	0	0	233,800	340,000
신청탈락		91	50,403	0	0	0	0	243,910	1,156,640
차상위		83	61,387	0	0	50,000	50,000	120,000	878,570
수급	추정소득	84	20,515	0	0	0	0	263,040	427,440
신청탈락		91	100,932	0	0	0	0	657,600	822,000
차상위		83	49,058	0	0	0	0	328,800	850,000
수급	소득평가액	84	293,680	0	62,469	216,900	459,183	788,000	1,300,000
신청탈락		91	651,788	0	328,800	700,000	927,440	1,248,104	1,600,278
차상위		83	537,590	0	179,767	530,000	850,000	1,130,000	1,247,980

수급유형	소득분류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수급	근로소득	26	372,423	0	0	396,000	700,000	900,000	1,000,000
신청탈락		86	580,062	0	0	624,000	1,000,000	1,350,000	1,500,000
차상위		33	681,142	0	494,000	750,000	968,734	1,200,000	1,412,203
수급	사업소득	26	0	0	0	0	0	0	0
신청탈락		86	47,106	0	0	0	0	535,784	900,000
차상위		33	0	0	0	0	0	0	0
수급	재산소득	26	0	0	0	0	0	0	0
신청탈락		86	3,140	0	0	0	0	0	270,000
차상위		33	0	0	0	0	0	0	0
수급	사적이전소득	26	81,888	0	0	0	42,000	491,595	500,000
신청탈락		86	78,261	0	0	0	38,319	527,816	967,451
차상위		33	60,157	0	0	0	38,319	350,000	500,000
수급	부양비	26	22,615	0	0	0	0	0	588,000
신청탈락		86	23,138	0	0	0	0	133,905	387,293
차상위		33	1,187	0	0	0	0	0	39,173
수급	공적이전소득	26	24,902	0	0	0	0	202,980	214,480
신청탈락		86	55,715	0	0	0	50,000	262,374	828,570
차상위		33	64,262	0	0	50,000	100,000	237,580	293,070
수급	추정소득	26	30,351	0	0	0	0	295,920	493,200
신청탈락		86	175,987	0	0	0	295,920	822,000	1,403,090
차상위		33	12,606	0	0	0	0	0	416,000
수급	소득평가액	26	532,180	0	252,799	671,619	775,217	984,795	1,042,000
신청탈락		86	963,408	130,237	652,210	1,072,519	1,267,753	1,591,505	1,764,760
차상위		33	819,353	129,173	500,000	800,000	1,093,070	1,437,580	1,462,203

<u> </u>										
수급유형	소득분류	N	mean	p5	p25	p50	p75	p95	max	
수급	근로소득	6	58,333	0	0	0	0	350,000	350,000	
신청탈락		38	531,135	0	0	500,000	726,667	1,300,000	1,775,477	
차상위		11	526,202	0	0	633,333	1,000,000	1,253,653	1,253,653	
수급	사업소득	6	0	0	0	0	0	0	0	
신청탈락		38	47,368	0	0	0	0	500,000	800,000	
차상위		11	109,091	0	0	0	0	1,200,000	1,200,000	
수급	재산소득	6	0	0	0	0	0	0	0	
신청탈락		38	6,105	0	0	0	0	82,000	150,000	
차상위		11	0	0	0	0	0	0	0	
수급	사적이전소득	6	44,250	0	0	8,698	100,000	148,104	148,104	
신청탈락		38	47,704	0	0	0	0	484,366	800,000	
차상위		11	53,840	0	0	0	144,140	300,000	300,000	
수급	부양비	6	32,976	0	0	0	83,572	114,285	114,285	
신청탈락		38	58,826	0	0	0	0	458,906	941,975	
차상위		11	0	0	0	0	0	0	0	
수급	공적이전소득	6	48,333	0	0	45,000	90,000	110,000	110,000	
신청탈락		38	110,257	0	0	0	90,000	674,250	1,434,350	
차상위		11	250,138	120,000	120,000	174,000	294,000	765,520	765,520	
수급	추정소득	6	71,240	0	0	0	0	427,440	427,440	
신청탈락		38	58,307	0	0	0	0	427,440	637,440	
차상위		11	231,098	0	0	0	526,080	1,088,000	1,088,000	
수급	소득평가액	6	255,133	17,396	90,000	170,838	540,000	541,725	541,725	
신청탈락		38	859,704	16,873	423,887	815,103	1,300,000	1,775,477	2,134,350	
차상위		11	1,170,369	120,000	518,140	1,150,000	1,967,653	2,432,000	2,432,000	

수급유형	소득분류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수급	근로소득	11	227,273	0	0	0	500.000	750,000	750,000
신청탈락		19	629,329	0	0	700,000	850,000	1,598,909	1,598,909
차상위		4	250,000	0	0	0	500,000	1,000,000	1,000,000
수급	사업소득	11	0	0	0	0	0	0	0
신청탈락		19	48,684	0	0	0	0	700,000	700,000
차상위		4	68,750	0	0	0	137,500	275,000	275,000
수급	재산소득	11	0	0	0	0	0	0	0
신청탈락		19	0	0	0	0	0	0	0
차상위		4	0	0	0	0	0	0	0
수급	사적이전소득	11	64,264	0	0	29,621	127,816	230,237	230,237
신청탈락		19	70,510	0	0	0	0	900,000	900,000
차상위		4	175,000	0	0	0	350,000	700,000	700,000
수급	부양비	11	47,713	0	0	0	0	400,830	400,830
신청탈락		19	46,002	0	0	0	0	701,122	701,122
차상위		4	23,810	0	0	0	47,621	95,241	95,241
수급	공적이전소득	11	22,727	0	0	0	30,000	190,000	190,000
신청탈락		19	15,987	0	0	0	0	213,760	213,760
차상위		4	161,000	0	45,000	115,000	277,000	414,000	414,000
수급	추정소득	11	38,487	0	0	0	0	295,920	295,920
신청탈락		19	116,722	0	0	0	0	885,000	885,000
차상위		4	0	0	0	0	0	0	0
수급	소득평가액	11	400,464	29,621	127,816	427,440	590,830	780,000	780,000
신청탈락		19	927,235	90,000	700,000	800,000	1,145,920	1,785,000	1,785,000
차상위		4	678,560	90,000	300,121	755,121	1,057,000	1,114,000	1,114,000

수급유형	소득분류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수급	근로소득	5	240,000	0	0	0	0	1,200,000	1,200,000
신청탈락		11	690,909	0	500,000	7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차상위		1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수급	사업소득	5	0	0	0	0	0	0	0
신청탈락		11	190,909	0	0	0	0	1,200,000	1,200,000
차상위		1	0	0	0	0	0	0	0
수급	재산소득	5	0	0	0	0	0	0	0
신청탈락		11	1,818	0	0	0	0	20,000	20,000
차상위		1	0	0	0	0	0	0	0
수급	사적이전소득	5	88,381	0	0	47,017	159,801	235,085	235,085
신청탈락		11	4,274	0	0	0	0	47,017	47,017
차상위		1	0	0	0	0	0	0	0
수급	부양비	5	18,684	0	0	0	0	93,420	93,420
신청탈락		11	46,471	0	0	0	12,084	369,810	369,810
차상위		1	12,870	12,870	12,870	12,870	12,870	12,870	12,870
수급	공적이전소득	5	122,000	0	0	90,000	120,000	400,000	400,000
신청탈락		11	0	0	0	0	0	0	0
차상위		1	132,000	132,000	132,000	132,000	132,000	132,000	132,000
수급	추정소득	5	0	0	0	0	0	0	0
신청탈락		11	343,694	0	0	427,440	657,600	952,950	952,950
차상위		1	0	0	0	0	0	0	0
수급	소득평가액	5	469,065	90,000	159,801	213,420	635,085	1,247,017	1,247,017
신청탈락		11	1,278,075	650,000	920,000	1,405,284	1,657,600	1,700,000	1,700,000
차상위		1	1,044,870	1,044,870	1,044,870	1,044,870	1,044,870	1,044,870	1,044,870

# 〈부표 Ⅱ-1〉 수급유형별 재산: 전체 가구

(단위: 천원)

									(611. 66)
수급유형	재산분류	N	mean	p5	p25	p50	p75	p95	max
수급	일반재산	4,894	2,059	0	0	0	0	13,100	225,000
신청탈락		3,917	8,661	0	0	500	10,000	42,000	235,000
차상위		4,363	11,100	0	0	2,820	17,600	44,300	272,000
수급	금융재산	4,894	1,455	0	0	0	110	8,397	46,000
신청탈락		3,917	2,647	0	0	108	2,307	14,300	74,100
차상위		4,363	3,214	0	0	0	2,734	19,000	54,000
수급	자동차	4,894	34	0	0	0	0	0	18,000
신청탈락		3,917	23	0	0	0	0	0	2,360
차상위		4,363	14	0	0	0	0	0	2,740
수급	기타재산	4,894	19	0	0	0	0	0	42,000
신청탈락		3,917	607	0	0	0	0	0	86,400
차상위		4,363	73	0	0	0	0	0	43,000
수급	총재산	4,894	3,567	0	0	0	3,141	19,900	246,000
신청탈락		3,917	11,900	0	0	3,074	16,200	52,300	242,000
차상위		4,363	14,400	0	0	6,275	22,600	50,700	272,000
수급	총부채	4,894	623	0	0	0	0	0	252,000
신청탈락		3,917	1,572	0	0	0	0	7,587	513,000
차상위		4,363	2,127	0	0	0	0	10,000	284,000
수급	순재산	4,894	2,943	0	0	0	3,000	17,500	66,400
신청탈락		3,917	10,400	0	0	2,700	14,700	49,200	117,000
차상위		4,363	12,300	0	0	5,430	20,900	48,000	90,200

# 〈부표 Ⅱ-2〉 수급유형별 재산: 노인 1인기구

(단위: 천원)

수급유형	재산분류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수급	일반재산	1,695	3,132	0	0	0	2,828	17,100	54,800
신청탈락		1,382	8,277	0	0	1,000	10,000	38,000	227,000
차상위		1,510	7,641	0	0	279	10,800	33,600	272,000
수급	금융재산	1,695	2,481	0	0	0	3,261	12,000	38,000
신청탈락		1,382	3,156	0	0	443	2,861	16,000	51,800
차상위		1,510	2,667	0	0	0	1,927	15,000	54,000
수급	자동차	1,695	36	0	0	0	0	0	18,000
신청탈락		1,382	1	0	0	0	0	0	766
차상위		1,510	4	0	0	0	0	0	794
수급	기타재산	1,695	0	0	0	0	0	0	0
신청탈락		1,382	799	0	0	0	0	0	71,900
차상위		1,510	74	0	0	0	0	0	35,000
수급	총재산	1,695	5,649	0	0	2,190	7,870	23,900	55,300
신청탈락		1,382	12,200	0	355	4,251	17,800	51,600	227,000
차상위		1,510	10,400	0	0	3,352	15,200	41,400	272,000
수급	총부채	1,695	505	0	0	0	0	0	200,000
신청탈락		1,382	916	0	0	0	0	1,800	145,000
차상위		1,510	1,296	0	0	0	0	3,000	242,000
수급	순재산	1,695	5,144	0	0	2,080	7,418	22,600	55,300
신청탈락		1,382	11,300	0	285	3,943	16,600	49,700	86,500
차상위		1,510	9,090	0	0	3,000	14,500	40,000	82,200

⟨부표 Ⅱ-3⟩ 수급유형별 재산: 노인 2인기구

(단위: 천원)

수급유형	재산분류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수급	일반재산	112	8,295	0	135	2,919	11,300	32,300	61,600
신청탈락		219	17,700	0	240	10,000	29,300	56,100	125,000
차상위		713	18,300	0	1,510	14,000	29,000	54,200	148,000
수급	금융재산	112	4,110	0	0	0	5,479	20,000	34,400
신청탈락		219	4,666	0	0	1,480	6,352	20,200	40,300
차상위		713	5,015	0	0	102	6,270	25,500	53,100
수급	자동차	112	16	0	0	0	0	0	891
신청탈락		219	14	0	0	0	0	0	702
차상위		713	8	0	0	0	0	0	900
수급	기타재산	112	123	0	0	0	0	0	13,800
신청탈락		219	851	0	0	0	0	0	49,100
차상위		713	2	0	0	0	0	0	1,346
수급	총재산	112	12,500	0	2,839	7,497	18,000	53,000	66,400
신청탈락		219	23,300	0	4,706	16,600	34,200	66,700	149,000
차상위		713	23,300	0	5,163	19,500	35,100	60,000	155,000
수급	총부채	112	1,743	0	0	0	0	6,000	62,000
신청탈락		219	2,664	0	0	0	0	11,000	233,000
차상위		713	4,227	0	0	0	0	22,400	284,000
수급	순재산	112	10,800	0	2,505	7,420	18,000	36,700	66,400
신청탈락		219	20,600	0	4,500	15,800	33,300	60,400	102,000
차상위		713	19,100	-1,916	3,772	16,600	33,000	55,200	83,100

# 〈부표 Ⅱ-4〉 수급유형별 재산: 장애인 1인가구

(단위: 천원)

수급유형	재산분류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수급	일반재산	73	0	0	0	0	0	0	0
신청탈락		94	36	0	0	0	0	375	750
차상위		525	3	0	0	0	0	0	400
수급	금융재산	73	1	0	0	0	0	0	80
신청탈락		94	2	0	0	0	0	0	100
차상위		525	6	0	0	0	0	0	320
수급	자동차	73	0	0	0	0	0	0	0
신청탈락		94	0	0	0	0	0	0	42
차상위		525	3	0	0	0	0	0	300
수급	기타재산	73	41	0	0	17	59	159	287
신청탈락		94	78	0	0	0	87	417	699
차상위		525	79	0	0	0	100	358	750
수급	총재산	73	4	0	0	0	0	31	133
신청탈락		94	33	0	0	0	0	205	398
차상위		525	5	0	0	0	0	0	604
수급	총부채	73	165	30	100	200	200	270	446
신청탈락		94	61	0	0	0	90	317	843
차상위		525	140	90	120	120	135	210	710
수급	순재산	73	0	0	0	0	0	0	0
신청탈락		94	8	0	0	0	0	0	296
차상위		525	0	0	0	0	0	0	82

⟨부표 Ⅱ-5⟩ 수급유형별 재산: 한부모 2인가구

(단위: 천원)

수급유형	재산분류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수급	일반재산	84	2,246	0	0	0	1,000	10,000	40,000
신청탈락		91	6,539	0	0	0	7,722	35,000	58,000
차상위		83	8,166	0	0	1,000	8,000	45,000	70,000
수급	금융재산	84	847	0	0	0	0	3,833	18,700
신청탈락		91	1,573	0	0	0	2,148	6,500	18,200
차상위		83	1,243	0	0	0	0	8,486	22,800
수급	자동차	84	128	0	0	0	0	549	5,657
신청탈락		91	15	0	0	0	0	0	549
차상위		83	12	0	0	0	0	0	1,000
수급	기타재산	84	0	0	0	0	0	0	0
신청탈락		91	307	0	0	0	0	0	20,000
차상위		83	0	0	0	0	0	0	0
수급	총재산	84	3,221	0	0	108	2,658	18,700	40,000
신청탈락		91	8,434	0	0	2,000	10,000	41,600	78,100
차상위		83	9,421	0	0	1,000	11,100	45,000	70,300
수급	총부채	84	664	0	0	0	0	0	40,000
신청탈락		91	2,585	0	0	0	0	16,600	53,500
차상위		83	744	0	0	0	0	0	21,000
수급	순재산	84	2,556	0	0	0	2,161	15,700	28,600
신청탈락		91	5,849	-7,000	0	1,000	8,492	34,300	47,900
차상위		83	8,676	0	0	1,000	11,100	45,000	70,300

# 〈부표 ||-6〉 수급유형별 재산: 한부모 3인가구

(단위: 천원)

수급유형	재산분류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수급	일반재산	26	3,269	0	0	0	2,000	20,000	34,500
신청탈락		86	9,910	0	0	3,000	10,000	42,000	167,000
차상위		33	7,450	0	0	0	5,000	40,000	96,000
수급	금융재산	26	2,522	0	0	0	2,222	9,303	33,300
신청탈락		86	2,569	0	0	0	3,983	11,600	23,000
차상위		33	1,360	0	0	0	160	9,303	10,200
수급	자동차	26	38	0	0	0	0	0	1,000
신청탈락		86	60	0	0	0	0	564	1,511
차상위		33	56	0	0	0	0	849	1,000
수급	기타재산	26	0	0	0	0	0	0	0
신청탈락		86	0	0	0	0	0	0	0
차상위		33	0	0	0	0	0	0	0
수급	총재산	26	5,829	0	0	1,345	5,266	33,300	36,700
신청탈락		86	12,500	0	1,000	5,000	11,800	43,000	182,000
차상위		33	8,866	0	0	3,000	5,266	41,500	96,000
수급	총부채	26	769	0	0	0	0	2,180	14,700
신청탈락		86	4,931	0	0	0	0	15,400	175,000
차상위		33	5,460	0	0	0	0	72,000	89,200
수급	순재산	26	5,060	0	0	345	5,176	33,300	36,700
신청탈락		86	7,608	-4,130	0	3,361	10,200	43,000	87,000
차상위		33	3,406	0	0	1,000	5,266	25,000	41,500

 $\langle$ 부표 II-7
angle 수급유형별 재산: 대학생이 있는 가구

(단위: 천원)

수급유형	재산분류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수급	일반재산	6	6,065	0	0	2,500	15,000	16,400	16,400
신청탈락		38	13,800	0	0	5,000	23,000	58,000	59,500
차상위		11	15,500	0	1,200	12,800	22,800	42,000	42,000
수급	금융재산	6	5,692	0	0	3,526	5,338	21,800	21,800
신청탈락		38	4,249	0	0	0	3,983	17,100	52,200
차상위		11	4,120	0	0	2,500	3,749	23,800	23,800
수급	자동차	6	60	0	0	0	0	360	360
신청탈락		38	36	0	0	0	0	376	658
차상위		11	269	0	0	0	500	1,389	1,389
수급	기타재산	6	0	0	0	0	0	0	0
신청탈락		38	526	0	0	0	0	0	20,000
차상위		11	0	0	0	0	0	0	0
수급	총재산	6	11,800	0	0	11,000	21,700	27,100	27,100
신청탈락		38	18,600	0	1,480	9,066	34,900	78,100	107,000
차상위		11	19,900	117	3,749	12,800	31,400	65,800	65,800
수급	총부채	6	2,358	0	0	0	2,904	11,200	11,200
신청탈락		38	5,324	0	0	0	0	50,000	53,500
차상위		11	2,197	0	0	0	3,447	16,000	16,000
수급	순재산	6	9,459	-635	0	7,940	19,800	21,700	21,700
신청탈락		38	13,300	-18,500	0	6,560	26,200	59,500	84,900
차상위		11	17,700	117	3,749	9,990	20,000	65,800	65,800

⟨부표 ||−8⟩ 수급유형별 재산: 이동 1인을 포함한 3인가구

(단위: 천원)

수급유형	재산분류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수급	일반재산	11	2,755	0	0	0	600	22,700	22,700
신청탈락		19	8,050	0	0	2,106	13,200	33,000	33,000
차상위		4	12,500	0	6,000	14,000	19,000	22,000	22,000
수급	금융재산	11	1,681	0	0	0	3,230	9,159	9,159
신청탈락		19	3,110	0	0	260	6,961	17,100	17,100
차상위		4	26	0	0	0	52	104	104
수급	자동차	11	27	0	0	0	0	300	300
신청탈락		19	157	0	0	0	0	1,511	1,511
차상위		4	0	0	0	0	0	0	0
수급	기타재산	11	0	0	0	0	0	0	0
신청탈락		19	0	0	0	0	0	0	0
차상위		4	0	0	0	0	0	0	0
수급	총재산	11	4,463	0	0	301	7,000	28,500	28,500
신청탈락		19	11,300	0	260	7,479	16,900	41,500	41,500
차상위		4	12,500	0	6,000	14,000	19,000	22,100	22,100
수급	총부채	11	285	0	0	0	0	3,131	3,131
신청탈락		19	729	0	0	0	0	8,992	8,992
차상위		4	1,488	0	0	0	2,977	5,953	595
수급	순재산	11	4,178	-3,131	0	301	7,000	28,500	28,500
신청탈락		19	10,600	-1,513	0	6,501	13,600	41,500	41,500
차상위		4	11,000	0	6,000	14,000	16,000	16,200	16,200

〈부표 ||-9〉 수급유형별 재산: 이동 2인을 포함한 4인가구

(단위: 천원)

수급유형	재산분류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수급	일반재산	5	4,129	0	0	0	0	20,600	20,600
신청탈락		11	18,300	0	0	5,000	27,000	88,000	88,000
차상위		1	0	0	0	0	0	0	0
수급	금융재산	5	936	0	0	0	2,039	2,641	2,641
신청탈락		11	1,111	0	0	0	2,607	6,204	6,204
차상위		1	8,099	8,099	8,099	8,099	8,099	8,099	8,099
수급	자동차	5	211	0	0	0	0	1,056	1,056
신청탈락		11	117	0	0	0	0	1,290	1,290
차상위		1	0	0	0	0	0	0	0
수급	기타재산	5	0	0	0	0	0	0	0
신청탈락		11	0	0	0	0	0	0	0
차상위		1	0	0	0	0	0	0	0
수급	총재산	5	5,276	0	0	1,056	2,039	23,300	23,300
신청탈락		11	19,500	0	1,290	5,707	27,000	91,400	91,400
차상위		1	8,099	8,099	8,099	8,099	8,099	8,099	8,099
수급	총부채	5	2,816	0	0	0	0	14,100	14,100
신청탈락		11	2,003	0	0	0	0	19,700	19,700
차상위		1	0	0	0	0	0	0	0
수급	순재산	5	2,460	0	0	1,056	2,039	9,204	9,204
신청탈락		11	17,500	0	259	3,332	27,000	91,400	91,400
차상위		1	8,099	8,099	8,099	8,099	8,099	8,099	8,099

# $\langle$ 부표 |||-1 angle 수급유형별 복지급여 수급액: 전체 가구

(단위: 원)

								(인기. 전)
급 여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기초보장 수급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4,894	3,168,917	1,088,320	2,396,840	3,166,750	3,780,200	6,066,030	12,500,000
긴급지원	4,894	7,560	0	0	0	0	0	6,000,000
노인관련급여	4,894	470,488	0	0	0	1,074,000	1,074,000	2,148,000
장애인관련급여	4,894	126,241	0	0	0	0	1,200,000	5,00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4,894	6,840	0	0	0	0	0	2,400,00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4,894	231,793	0	0	0	0	1,200,000	4,20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4,894	2,129	0	0	0	0	0	2,090,00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4,894	4,013,968	1,806,770	3,111,600	3,856,800	4,531,280	7,104,420	15,600,00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4,894	845,050	0	0	1,074,000	1,074,000	2,400,000	6,062,400
<신청탈락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3,917	435,541	0	0	0	426,180	2,377,000	11,800,000
긴급지원	3,917	91,512	0	0	0	0	247,990	8,226,630
노인관련급여	3,917	627,100	0	0	877,200	1,074,000	1,718,400	2,256,000
장애인관련급여	3,917	56,210	0	0	0	0	330,000	2,55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3,917	14,233	0	0	0	0	0	2,154,60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3,917	6,331	0	0	0	0	0	2,30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3,917	4,241	0	0	0	0	0	1,880,00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3,917	1,235,168	0	467,090	1,074,000	1,512,220	3,575,640	15,200,00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3,917	799,628	0	0	1,074,000	1,074,000	1,988,400	11,100,000
<차상위급여 수급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4,363	6,433	0	0	0	0	0	1,969,300
긴급지원	4,363	13,104	0	0	0	0	0	3,500,000

급 여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노인관련급여	4,363	1,202,559	264,000	1,074,000	1,074,000	1,718,400	1,718,400	2,792,400
장애인관련급여	4,363	579,106	0	360,000	360,000	720,000	1,440,000	3,40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4,363	14,871	0	0	0	0	0	2,000,400
이동,청소년관련급여	4,363	1,659	0	0	0	0	0	1,20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4,363	1,261	0	0	0	0	0	2,090,00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4,363	1,818,993	1,074,000	1,434,000	1,434,000	2,108,400	3,158,400	5,739,60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4,363	1,812,560	1,074,000	1,434,000	1,434,000	2,094,000	3,158,400	5,739,600
<전체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13,174	1,308,848	0	0	0	2,799,840	4,163,470	12,500,000
긴급지원	13,174	34,357	0	0	0	0	0	8,226,630
노인관련급여	13,174	759,502	0	0	1,074,000	1,074,000	1,718,400	2,792,400
장애인관련급여	13,174	255,400	0	0	0	360,000	1,440,000	5,00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13,174	11,698	0	0	0	0	0	2,400,00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13,174	88,541	0	0	0	0	900,000	4,20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13,174	2,469	0	0	0	0	0	2,090,00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13,174	2,460,815	0	1,270,280	2,078,400	3,518,400	5,606,520	15,600,00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13,174	1,151,967	0	360,000	1,074,000	1,434,000	2,634,000	11,100,000

# <부표 Ⅲ-2〉 수급유형별 복지급여 수급액: 노인 1인가구

(단위: 원)

								(인지, 편)
급 여	N	mean	p5	p25	p50	p75	p95	max
<기초보장 수급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1,695	2,467,168	722,600	1,973,360	2,628,480	3,193,970	3,427,100	5,827,520
긴급지원	1,695	6,535	0	0	0	0	0	3,000,000
노인관련급여	1,695	1,065,743	1,074,000	1,074,000	1,074,000	1,074,000	1,074,000	1,162,000
장애인관련급여	1,695	84,859	0	0	0	0	360,000	2,28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1,695	0	0	0	0	0	0	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1,695	0	0	0	0	0	0	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1,695	2,419	0	0	0	0	0	2,090,00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1,695	3,626,724	1,904,650	3,093,520	3,765,720	4,279,760	4,696,710	6,686,72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1,695	1,159,555	1,074,000	1,074,000	1,074,000	1,074,000	1,434,000	4,434,000
<신청탈락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1,382	196,100	0	0	0	0	1,303,150	3,655,970
긴급지원	1,382	78,262	0	0	0	0	0	5,907,510
노인관련급여	1,382	987,749	444,000	1,074,000	1,074,000	1,074,000	1,074,000	1,338,000
장애인관련급여	1,382	13,632	0	0	0	0	0	1,80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1,382	0	0	0	0	0	0	0
이동,청소년관련급여	1,382	0	0	0	0	0	0	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1,382	87	0	0	0	0	0	120,00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1,382	1,275,830	824,000	1,074,000	1,074,000	1,074,000	2,716,820	7,360,83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1,382	1,079,730	534,000	1,074,000	1,074,000	1,074,000	1,367,280	6,441,510
<차상위급여 수급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1,510	6,405	0	0	0	0	0	1,969,300
긴급지원	1,510	14,608	0	0	0	0	0	3,000,000

급 여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노인관련급여	1,510	1,054,878	984,000	1,074,000	1,074,000	1,074,000	1,074,000	1,162,000
장애인관련급여	1,510	542,925	135,000	360,000	360,000	360,000	1,440,000	2,52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1,510	0	0	0	0	0	0	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1,510	0	0	0	0	0	0	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1,510	1,702	0	0	0	0	0	2,090,00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1,510	1,620,518	1,174,000	1,434,000	1,434,000	1,440,000	2,514,000	5,514,00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1,510	1,614,113	1,174,000	1,414,000	1,434,000	1,434,000	2,514,000	5,514,000
<전체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4,587	972,865	0	0	0	2,239,800	3,314,040	5,827,520
긴급지원	4,587	30,803	0	0	0	0	0	5,907,510
노인관련급여	4,587	1,038,668	841,200	1,074,000	1,074,000	1,074,000	1,074,000	1,338,000
장애인관련급여	4,587	214,191	0	0	0	360,000	1,440,000	2,52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4,587	0	0	0	0	0	0	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4,587	0	0	0	0	0	0	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4,587	1,480	0	0	0	0	0	2,090,00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4,587	2,258,006	1,074,000	1,074,000	1,434,000	3,416,640	4,445,520	7,360,83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4,587	1,285,141	894,000	1,074,000	1,074,000	1,434,000	2,514,000	6,441,510

⟨부표 Ⅲ-3⟩ 수급유형별 복지급여 수급액: 노인 2인가구

(단위: 원)

								(인기. 전)
급 여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기초보장 수급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112	3,851,233	336,170	3,113,080	4,219,925	5,114,300	5,925,680	6,059,000
긴급지원	112	0	0	0	0	0	0	0
노인관련급여	112	1,745,332	1,340,400	1,718,400	1,718,400	1,718,400	2,148,000	2,148,000
장애인관련급여	112	283,705	0	0	0	360,000	1,790,000	3,36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112	0	0	0	0	0	0	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112	0	0	0	0	0	0	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112	0	0	0	0	0	0	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112	5,880,270	2,054,570	5,010,860	6,357,810	7,388,060	8,089,070	9,269,19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112	2,029,038	1,340,400	1,718,400	1,718,400	2,148,000	3,578,400	5,078,400
<신청탈락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219	358,995	0	0	0	0	2,643,920	4,602,220
긴급지원	219	151,597	0	0	0	0	1,395,180	6,000,000
노인관련급여	219	1,698,939	1,394,400	1,718,400	1,718,400	1,718,400	2,058,000	2,236,000
장애인관련급여	219	68,959	0	0	0	0	360,000	2,12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219	0	0	0	0	0	0	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219	0	0	0	0	0	0	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219	548	0	0	0	0	0	120,00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219	2,279,037	1,577,600	1,718,400	1,718,400	2,148,000	5,126,760	10,900,00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219	1,920,042	1,482,000	1,718,400	1,718,400	1,793,400	3,483,000	7,835,400
<차상위급여 수급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713	474	0	0	0	0	0	287,360
긴급지원	713	7,146	0	0	0	0	0	1,698,720

급 여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노인관련급여	713	1,684,024	1,286,400	1,718,400	1,718,400	1,718,400	1,718,400	2,148,000
장애인관련급여	713	638,766	186,000	360,000	360,000	780,000	1,440,000	3,12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713	0	0	0	0	0	0	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713	0	0	0	0	0	0	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713	2,342	0	0	0	0	0	1,670,00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713	2,332,752	1,718,400	2,078,400	2,078,400	2,508,000	3,266,400	5,028,00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713	2,332,278	1,718,400	2,078,400	2,078,400	2,508,000	3,266,400	5,028,000
<전체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1,044	488,789	0	0	0	0	4,486,950	6,059,000
긴급지원	1,044	36,681	0	0	0	0	0	6,000,000
노인관련급여	1,044	1,693,730	1,340,400	1,718,400	1,718,400	1,718,400	1,826,400	2,236,000
장애인관련급여	1,044	481,147	0	0	360,000	619,000	1,440,000	3,36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1,044	0	0	0	0	0	0	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1,044	0	0	0	0	0	0	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1,044	1,715	0	0	0	0	0	1,670,00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1,044	2,702,061	1,718,400	1,963,360	2,078,400	3,158,400	6,597,230	10,900,00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1,044	2,213,272	1,610,400	1,746,600	2,078,400	2,438,400	3,290,400	7,835,400

# 〈부표 Ⅲ-4〉 수급유형별 복지급여 수급액: 장애인 1인가구

(단위: 원)

								(단위: 전)
급 여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기초보장 수급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73	3,152,657	0	2,628,480	3,764,880	3,856,800	4,007,310	4,022,640
긴급지원	73	0	0	0	0	0	0	0
노인관련급여	73	176,548	0	0	0	0	1,074,000	1,074,000
장애인관련급여	73	1,754,247	360,000	1,200,000	2,120,000	2,400,000	2,880,000	3,18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73	959	0	0	0	0	0	70,000
이동,청소년관련급여	73	35,205	0	0	0	0	0	1,20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73	3,288	0	0	0	0	0	240,00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73	5,122,904	2,040,000	4,104,000	5,532,520	6,256,800	6,736,800	7,202,64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73	1,970,247	360,000	1,200,000	2,400,000	2,400,000	2,880,000	3,600,000
<신청탈락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94	442,501	0	0	0	47,310	3,532,320	5,247,440
긴급지원	94	68,512	0	0	0	0	200,000	2,483,880
노인관련급여	94	85,353	0	0	0	0	1,074,000	1,074,000
장애인관련급여	94	353,936	0	0	90,000	360,000	1,560,000	2,03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94	0	0	0	0	0	0	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94	0	0	0	0	0	0	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94	16,170	0	0	0	0	0	1,520,00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94	966,473	0	0	429,075	1,560,000	3,895,400	6,484,64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94	523,972	0	0	187,500	1,020,000	2,030,000	2,558,880
<차상위급여 수급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525	8,734	0	0	0	0	0	1,408,510
긴급지원	525	19,693	0	0	0	0	0	3,000,000

급 여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노인관련급여	525	1,042,756	894,000	1,074,000	1,074,000	1,074,000	1,074,000	1,162,000
장애인관련급여	525	552,623	200,000	330,000	360,000	720,000	1,440,000	1,80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525	0	0	0	0	0	0	0
이동,청소년관련급여	525	0	0	0	0	0	0	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525	0	0	0	0	0	0	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525	1,623,806	1,219,200	1,359,000	1,434,000	1,794,000	2,514,000	5,153,82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525	1,615,072	1,219,200	1,359,000	1,434,000	1,659,400	2,514,000	5,153,820
<전체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692	399,313	0	0	0	0	3,764,880	5,247,440
긴급지원	692	24,247	0	0	0	0	0	3,000,000
노인관련급여	692	821,327	0	859,200	1,074,000	1,074,000	1,074,000	1,162,000
장애인관련급여	692	652,395	0	270,000	360,000	1,010,000	2,400,000	3,18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692	101	0	0	0	0	0	70,00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692	3,714	0	0	0	0	0	1,20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692	2,543	0	0	0	0	0	1,520,00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692	1,903,639	107,310	1,329,000	1,434,000	2,094,000	5,873,800	7,202,64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692	1,504,327	0	1,299,000	1,434,000	1,800,000	2,514,000	5,153,820

〈부표 Ⅲ-5〉 수급유형별 복지급여 수급액: 한부모 2인가구

(단위: 원)

								(단취: 전)
급 여	N	mean	p5	p25	p50	p75	p95	max
<기초보장 수급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84	4,193,373	531,720	3,105,840	4,471,355	5,713,475	6,640,170	7,503,370
긴급지원	84	13,417	0	0	0	0	0	1,127,010
노인관련급여	84	51,143	0	0	0	0	0	2,148,000
장애인관련급여	84	61,429	0	0	0	0	360,000	2,04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84	1,190	0	0	0	0	0	100,00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84	167,202	0	0	0	0	1,200,000	2,88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84	17,036	0	0	0	0	0	1,095,00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84	4,504,790	531,720	3,105,840	4,471,355	6,201,000	7,638,040	9,725,52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84	311,417	0	0	0	0	2,200,000	4,188,000
<신청탈락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91	620,160	0	0	0	887,190	3,092,320	4,677,300
긴급지원	91	54,466	0	0	0	0	0	2,900,000
노인관련급여	91	114,673	0	0	0	0	1,074,000	1,074,000
장애인관련급여	91	88,462	0	0	0	0	1,000,000	2,34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91	77,708	0	0	0	0	525,000	746,400
이동,청소년관련급여	91	25,275	0	0	0	0	0	90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91	0	0	0	0	0	0	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91	980,743	0	0	450,000	1,553,960	3,370,420	5,823,97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91	360,582	0	0	0	450,000	1,175,000	3,970,380
<차상위급여 수급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83	29,152	0	0	0	0	0	1,534,500
긴급지원	83	0	0	0	0	0	0	0

급 여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노인관련급여	83	153,282	0	0	0	0	1,074,000	1,718,400
장애인관련급여	83	105,663	0	0	0	0	630,000	1,56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83	304,518	0	0	400,000	600,000	600,000	650,00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83	8,434	0	0	0	0	0	70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83	0	0	0	0	0	0	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83	601,049	0	0	600,000	600,000	1,704,000	2,608,50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83	571,896	0	0	600,000	600,000	1,560,000	2,408,400
<전체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258	1,593,401	0	0	0	3,322,210	6,254,040	7,503,370
긴급지원	258	23,579	0	0	0	0	0	2,900,000
노인관련급여	258	106,409	0	0	0	0	1,074,000	2,148,000
장애인관련급여	258	85,194	0	0	0	0	600,000	2,34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258	125,761	0	0	0	75,000	600,000	746,40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258	66,066	0	0	0	0	600,000	2,88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258	5,547	0	0	0	0	0	1,095,00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258	2,005,957	0	173,160	764,465	3,414,280	6,640,170	9,725,52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258	412,556	0	0	0	600,000	1,704,000	4,188,000

# 〈부표 Ⅲ-6〉 수급유형별 복지급여 수급액: 한부모 3인가구

(단위: 원)

								(인지, 전)
급 여	N	mean	p5	p25	p50	p75	p95	max
<기초보장 수급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26	3,637,011	628,470	1,915,080	3,315,665	5,440,250	7,639,740	8,860,440
긴급지원	26	0	0	0	0	0	0	0
노인관련급여	26	0	0	0	0	0	0	0
장애인관련급여	26	73,846	0	0	0	0	360,000	1,20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26	11,538	0	0	0	0	0	300,00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26	57,692	0	0	0	0	300,000	1,20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26	15,269	0	0	0	0	0	397,00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26	3,795,357	628,470	1,915,080	3,315,665	6,100,510	7,999,740	8,860,44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26	158,346	0	0	0	300,000	1,200,000	1,200,000
<신청탈락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86	789,324	0	0	0	825,000	4,332,541	6,396,070
긴급지원	86	95,017	0	0	0	0	0	3,043,600
노인관련급여	86	24,977	0	0	0	0	0	1,074,000
장애인관련급여	86	45,000	0	0	0	0	0	1,80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86	308,230	0	0	0	550,000	1,450,800	2,154,60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86	15,000	0	0	0	0	0	1,19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86	0	0	0	0	0	0	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86	1,277,547	0	0	712,800	1,483,300	4,332,541	9,241,19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86	488,224	0	0	0	1,074,000	2,116,600	3,043,600
<차상위급여 수급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33	15,152	0	0	0	0	0	500,000
긴급지원	33	0	0	0	0	0	0	0

급 여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노인관련급여	33	32,545	0	0	0	0	0	1,074,000
장애인관련급여	33	10,909	0	0	0	0	0	36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33	605,339	0	0	600,000	1,200,000	1,450,800	2,000,40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33	36,364	0	0	0	0	0	1,20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33	0	0	0	0	0	0	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33	700,309	0	0	750,000	1,200,000	1,450,800	2,000,40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33	685,158	0	0	750,000	1,200,000	1,450,800	2,000,400
<전체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145	1,123,753	0	0	0	1,466,220	5,840,160	8,860,440
긴급지원	145	56,355	0	0	0	0	0	3,043,600
노인관련급여	145	22,221	0	0	0	0	0	1,074,000
장애인관련급여	145	42,414	0	0	0	0	30,000	1,80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145	322,648	0	0	0	600,000	1,378,800	2,154,60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145	27,517	0	0	0	0	0	1,20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145	2,738	0	0	0	0	0	397,00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145	1,597,645	0	0	1,100,000	2,000,400	6,107,290	9,241,19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145	473,893	0	0	0	1,100,000	1,621,800	3,043,600

⟨부표 Ⅲ-7⟩ 수급유형별 복지급여 수급액: 대학생이 있는 가구

(단위: 원)

급 여	N	mean	p5	p25	p50	p75	p95	max
<기초보장 수급가구>	14	iican	р	p23	рэч	p/S	<b>p</b> /3	шах
		4.502.652	2 455 200	2 7 ( 1 0 0 0	4 622 200	7.710.200	6.504.060	6.704.060
기초보장관련급여	6	4,783,653	3,457,280	3,764,880	4,632,300	5,710,200	6,504,960	6,504,960
긴급지원	6	0	0	0	0	0	0	0
노인관련급여	6	537,000	0	0	537,000	1,074,000	1,074,000	1,074,000
장애인관련급여	6	0	0	0	0	0	0	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6	0	0	0	0	0	0	0
이동,청소년관련급여	6	16,667	0	0	0	0	100,000	10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6	0	0	0	0	0	0	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6	5,337,320	3,764,880	4,531,280	5,169,300	5,710,200	7,678,960	7,678,96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6	553,667	0	0	537,000	1,074,000	1,174,000	1,174,000
<신청탈락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38	472,362	0	0	0	960,780	2,658,650	2,878,630
긴급지원	38	112,967	0	0	0	0	1,249,130	3,043,600
노인관련급여	38	140,853	0	0	0	0	1,074,000	1,074,000
장애인관련급여	38	24,868	0	0	0	0	300,000	36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38	37,516	0	0	0	0	700,200	725,40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38	0	0	0	0	0	0	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38	0	0	0	0	0	0	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38	788,565	0	0	530,100	1,249,130	2,878,630	3,043,60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38	316,203	0	0	0	360,000	1,249,130	3,043,600
<차상위급여 수급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11	0	0	0	0	0	0	0
긴급지원	11	272,727	0	0	0	0	3,000,000	3,000,000

급 여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노인관련급여	11	1,220,291	0	1,074,000	1,074,000	1,718,400	1,718,400	1,718,400
장애인관련급여	11	938,182	360,000	360,000	360,000	1,560,000	1,800,000	1,80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11	0	0	0	0	0	0	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11	0	0	0	0	0	0	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11	0	0	0	0	0	0	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11	2,431,200	1,434,000	1,434,000	2,078,400	3,278,400	5,739,600	5,739,60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11	2,431,200	1,434,000	1,434,000	2,078,400	3,278,400	5,739,600	5,739,600
<전체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55	848,212	0	0	0	1,285,600	5,438,040	6,504,960
긴급지원	55	132,595	0	0	0	0	1,249,130	3,043,600
노인관련급여	55	399,956	0	0	0	1,074,000	1,718,400	1,718,400
장애인관련급여	55	204,818	0	0	0	285,000	1,560,000	1,80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55	25,920	0	0	0	0	0	725,400
이동,청소년관련급여	55	1,818	0	0	0	0	0	10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55	0	0	0	0	0	0	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55	1,613,320	0	0	1,074,000	2,119,400	5,710,200	7,678,96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55	765,108	0	0	0	1,174,000	3,278,400	5,739,600

〈부표 Ⅲ-8〉 수급유형별 복지급여 수급액: 이동 1인 포함 3인가구

(단위: 원)

								(인지, 전)
급 여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기초보장 수급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11	4,705,793	984,770	2,410,380	4,774,080	6,836,700	8,243,000	8,243,000
긴급지원	11	0	0	0	0	0	0	0
노인관련급여	11	97,636	0	0	0	0	1,074,000	1,074,000
장애인관련급여	11	65,455	0	0	0	0	360,000	36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11	0	0	0	0	0	0	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11	200,000	0	0	0	0	1,200,000	1,20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11	0	0	0	0	0	0	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11	5,068,884	1,344,770	3,694,900	4,774,080	7,366,810	8,243,000	8,243,00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11	363,091	0	0	0	360,000	2,274,000	2,274,000
<신청탈락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19	838,072	0	0	0	1,944,880	4,566,160	4,566,160
긴급지원	19	0	0	0	0	0	0	0
노인관련급여	19	113,053	0	0	0	0	1,074,000	1,074,000
장애인관련급여	19	7,105	0	0	0	0	135,000	135,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19	0	0	0	0	0	0	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19	115,790	0	0	0	0	800,000	80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19	0	0	0	0	0	0	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19	1,074,019	0	0	663,550	1,944,880	4,566,160	4,566,16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19	235,947	0	0	0	500,000	1,074,000	1,074,000
<차상위급여 수급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4	0	0	0	0	0	0	0
긴급지원	4	0	0	0	0	0	0	0

급 여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노인관련급여	4	966,600	0	537,000	1,074,000	1,396,200	1,718,400	1,718,400
장애인관련급여	4	360,000	0	0	0	720,000	1,440,000	1,44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4	137,500	0	0	0	275,000	550,000	550,000
이동,청소년관련급여	4	0	0	0	0	0	0	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4	0	0	0	0	0	0	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4	1,464,100	0	537,000	1,349,000	2,391,200	3,158,400	3,158,40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4	1,464,100	0	537,000	1,349,000	2,391,200	3,158,400	3,158,400
<전체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34	1,990,797	0	0	635,255	3,694,900	7,366,810	8,243,000
긴급지원	34	0	0	0	0	0	0	0
노인관련급여	34	208,482	0	0	0	0	1,074,000	1,718,400
장애인관련급여	34	67,500	0	0	0	0	360,000	1,44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34	16,176	0	0	0	0	0	550,00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34	129,412	0	0	0	0	1,000,000	1,20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34	0	0	0	0	0	0	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34	2,412,367	0	135,000	1,637,000	4,107,460	7,544,200	8,243,00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34	421,571	0	0	0	500,000	2,274,000	3,158,400

〈부표 Ⅲ-9〉 수급유형별 복지급여 수급액: 이동 2인 포함 4인가구

(E								
급 여	N	mean	p5	p25	p50	p75	p95	max
<기초보장 수급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5	5,731,474	0	1,233,120	7,560,890	9,270,230	10,600,000	10,600,000
긴급지원	5	0	0	0	0	0	0	0
노인관련급여	5	429,600	0	0	0	1,074,000	1,074,000	1,074,000
장애인관련급여	5	1,072,000	0	0	0	360,000	5,000,000	5,00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5	0	0	0	0	0	0	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5	0	0	0	0	0	0	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5	0	0	0	0	0	0	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5	7,233,074	0	2,667,120	8,634,890	9,270,230	15,600,000	15,600,00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5	1,501,600	0	0	1,074,000	1,434,000	5,000,000	5,000,000
<신청탈락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11	385,114	0	0	0	892,470	1,856,980	1,856,980
긴급지원	11	0	0	0	0	0	0	0
노인관련급여	11	0	0	0	0	0	0	0
장애인관련급여	11	24,545	0	0	0	0	270,000	27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11	0	0	0	0	0	0	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11	154,546	0	0	0	0	1,000,000	1,00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11	0	0	0	0	0	0	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11	564,205	0	0	270,000	1,000,000	1,856,980	1,856,98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11	179,091	0	0	0	270,000	1,000,000	1,000,000
<차상위급여 수급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1	1,229,310	1,229,310	1,229,310	1,229,310	1,229,310	1,229,310	1,229,310
긴급지원	1	0	0	0	0	0	0	0

급 여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노인관련급여	1	859,200	859,200	859,200	859,200	859,200	859,200	859,200
장애인관련급여	1	720,000	720,000	720,000	720,000	720,000	720,000	72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1	0	0	0	0	0	0	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1	0	0	0	0	0	0	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1	0	0	0	0	0	0	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1	2,808,510	2,808,510	2,808,510	2,808,510	2,808,510	2,808,510	2,808,51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1	1,579,200	1,579,200	1,579,200	1,579,200	1,579,200	1,579,200	1,579,200
<전체가구>								
기초보장관련급여	17	2,007,231	0	0	0	1,486,800	10,600,000	10,600,000
긴급지원	17	0	0	0	0	0	0	0
노인관련급여	17	176,894	0	0	0	0	1,074,000	1,074,000
장애인관련급여	17	373,529	0	0	0	0	5,000,000	5,000,000
소년소녀가장, 조손, 모부자가정 관련급여	17	0	0	0	0	0	0	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17	100,000	0	0	0	0	1,000,000	1,00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17	0	0	0	0	0	0	0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17	2,657,655	0	0	892,470	2,667,120	15,600,000	15,600,000
기초보장급여 제외 모든 복지부 현금급여	17	650,424	0	0	0	1,000,000	5,000,000	5,000,000

## 〈부표 Ⅳ-1〉(2차 추출 결과)가구특성별 소득인정액

								(인기. 1	
가구특성	수급유형	N	mean	p5	p25	p50	p75	p95	max
전체		17,565	388,841	0	28,510	149,823	473,900	1,250,000	41,015,174
	수급가구	9,666	248,210	0	65,000	148,157	344,352	816,729	4,325,003
전체	신청탈락가구	3,781	882,889	0	88,000	376,829	958,405	3,142,817	41,015,174
	차상위가구	4,118	265,321	0	0	29,167	428,663	1,050,000	23,201,024
	수급가구	2,396	151,158	0	65,000	120,150	198,295	345,055	983,096
노인1인가구	신청탈락가구	863	695,511	0	107,396	284,180	588,000	1,805,375	41,015,174
	차상위가구	285	69,796	0	0	60,000	75,361	277,520	747,590
	수급가구	243	307,619	0	140,652	256,500	442,094	669,659	828,790
노인2인가구	신청탈락가구	131	1,279,301	0	292,104	698,746	1,525,328	4,760,908	9,546,770
	차상위가구	121	218,932	0	65,000	122,100	294,000	714,100	2,327,953
2 . 1 2 . 1 = 1 = 1	수급가구	122	113,431	0	17,396	76,325	166,621	305,396	593,990
소년소녀가장 가구	신청탈락가구	19	1,079,455	0	17,396	120,000	480,430	14,500,674	14,500,674
/ 1 1	차상위가구	32,500	2	0	0	32,500	65,000	65,000	65,000
-114	수급가구	448	349,248	0	100,674	385,702	547,913	751,725	1,183,910
한부모 2인가구	신청탈락가구	166	1,052,761	0	300,000	800,000	1,002,415	4,300,000	12,809,697
2 년기 1	차상위가구	338	550,313	0	295,920	605,600	800,000	1,000,000	4,452,601
한부모	수급가구	528	535,709	0	328,964	548,000	750,000	1,025,000	1,489,820
3인가구	신청탈락가구	179	1,210,755	0	600,000	920,000	1,300,000	3,049,715	10,090,820

가구특성	수급유형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차상위가구	424	706,562	0	479,050	721,050	975,250	1,301,040	8,000,000
리트시트리	수급가구	65	421,248	0	0	364,000	645,920	1,000,000	1,449,237
아동1인포함 3인가구	신청탈락가구	48	1,120,969	0	482,880	899,717	1,272,558	3,099,649	4,864,696
2511	차상위가구	18	727,467	0	550,000	711,000	977,500	1,266,666	1,266,666
بالمماسخا	수급가구	48	637,542	0	287,079	641,954	920,670	1,314,185	1,386,675
아동2인포함 4인가구	신청탈락가구	17	3,996,112	427,440	785,602	1,510,900	1,965,197	31,092,000	31,092,000
70/1	차상위가구	8	795,085	0	375,000	800,000	1,276,840	1,457,000	1,457,000
امال اح	수급가구	1,263	97,799	0	0	59,126	147,698	348,610	957,589
장애인 1인가구	신청탈락가구	176	617,645	0	17,396	174,703	595,611	1,869,298	20,421,297
1 (2)	차상위가구	1,411	43,594	0	0	0	19,892	302,390	839,685
7] 4]]6]	수급가구	343	223,914	0	65,000	166,127	344,105	600,000	829,621
장애인 2인가구	신청탈락가구	76	1,527,398	0	399,450	858,245	1,412,172	8,094,964	15,533,200
2 (2)   1	차상위가구	482	210,715	0	0	68,683	324,163	812,189	3,156,082
리코 베시 시노	수급가구	113	478,055	0	133,736	400,000	765,000	1,294,560	1,987,440
대학생이 있는 기구	신청탈락가구	51	1,548,580	0	481,542	846,818	2,134,350	4,940,369	8,371,580
711	차상위가구	11	961,872	65,000	388,483	1,159,305	1,200,000	2,070,000	2,070,000
	수급가구	4,097	292,114	0	55,715	165,000	444,943	987,200	4,325,003
미분류	신청탈락가구	2,055	843,255	0	17,396	312,947	993,000	3,000,074	26,364,239
	차상위가구	1,018	360,948	0	0	32,832	605,833	1,330,000	23,201,024

## 〈부표 Ⅳ-2〉(2차 추출 결과) 가구특성별 복지급여 수급액

- J	3.7		-		=0		0=	(단위: 원, %)
급 여	N	mean	p5	p25	p50	p75	p95	max
전체가구								
모든 현금급여	17,565	2,940,065	0	1,181,570	2,503,750	4,148,420	7,498,280	20,443,580
기초보장관련급여	17,565	1,927,137	0	0	1,455,120	3,224,810	6,199,670	20,443,580
기초보장급여 제외 현금급여	17,565	1,012,927	0	0	1,074,000	1,680,000	2,886,000	9,459,370
긴급지원	17,565	65,479	0	0	0	0	0	6,638,400
노인관련급여	17,565	402,325	0	0	0	1,074,000	1,074,000	2,792,400
장애인관련급여	17,565	498,457	0	0	0	540,000	2,040,000	6,840,000
한부모가정 등 관련급여	17,565	24,753	0	0	0	0	0	3,343,20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17,565	18,171	0	0	0	0	0	3,99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17,565	3,743	0	0	0	0	0	2,330,000
수급가구								
모든 현금급여	9,666	4,171,805	910,100	2,786,970	3,914,695	5,038,740	8,730,960	20,443,580
기초보장관련급여	9,666	3,229,299	259,010	1,929,780	3,048,280	3,930,660	7,305,260	20,443,580
기초보장급여 제외 현금급여	9,666	942,506	0	0	1,074,000	1,434,000	2,754,000	7,914,000
긴급지원	9,666	53,589	0	0	0	0	0	6,638,400
노인관련급여	9,666	458,055	0	0	0	1,074,000	1,074,000	2,148,000
장애인관련급여	9,666	399,933	0	0	0	360,000	2,040,000	6,840,000
한부모가정 등 관련급여	9,666	2,075	0	0	0	0	0	3,078,00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9,666	25,633	0	0	0	0	0	3,99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9,666	3,221	0	0	0	0	0	2,330,000
신청탈락가구								

급 여	N	mean	<b>p</b> 5	p25	p50	p75	p95	max
모든 현금급여	3,781	1,203,900	0	90,000	1,074,000	1,596,900	3,690,800	15,028,140
기초보장관련급여	3,781	592,727	0	0	0	954,710	2,708,770	11,808,140
기초보장급여 제외 현금급여	3,781	611,173	0	0	120,000	1,074,000	2,078,400	7,774,000
긴급지원	3,781	126,628	0	0	0	0	865,780	6,000,000
노인관련급여	3,781	375,471	0	0	0	1,074,000	1,162,000	2,148,000
장애인관련급여	3,781	66,437	0	0	0	0	360,000	2,550,000
한부모가정 등 관련급여	3,781	28,059	0	0	0	0	0	2,100,60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3,781	11,855	0	0	0	0	0	2,30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3,781	2,724	0	0	0	0	0	1,810,000
차상위가구								
모든 현금급여	4,118	1,642,939	0	986,000	1,680,000	2,040,000	3,354,000	9,459,370
기초보장관련급여	4,118	95,839	0	0	0	0	777,400	7,958,900
기초보장급여 제외 현금급여	4,118	1,547,101	0	720,000	1,680,000	2,040,000	3,218,400	9,459,370
긴급지원	4,118	37,241	0	0	0	0	0	4,635,820
노인관련급여	4,118	296,169	0	0	0	0	1,718,400	2,792,400
장애인관련급여	4,118	1,126,383	0	225,000	1,440,000	1,800,000	2,160,000	4,680,000
한부모가정 등 관련급여	4,118	74,948	0	0	0	0	600,000	3,343,20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4,118	6,457	0	0	0	0	0	2,00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4,118	5,903	0	0	0	0	0	2,090,000

〈부표 IV-3〉(2차 추출 결과) 기구특성별 복지급여 수급기구의 급여액

							(단위: 천)	
급 여	N	mean	p5	p25	p50	p75	p95	max
전체가구								
모든 현금급여	16,309	3,166,487	1,550	1,520,000	2,754,000	4,273,440	7,608,440	20,443,580
기초보장관련급여	11,297	2,996,385	1,550	1,596,900	2,801,980	3,829,600	6,933,030	20,443,580
기초보장급여 제외 현금급여	12,367	1,438,673	360000	1074000	1,101,000	1,824,000	3,114,000	9,459,370
긴급지원	698	1,647,752	336,000	790,000	1,360,205	2,346,270	3,000,000	6,638,400
노인관련급여	6,256	1,129,610	859,200	1,074,000	1,074,000	1,074,000	1,718,400	2,792,400
장애인관련급여	7,328	1,194,786	210,000	360,000	1,320,000	1,824,000	2,280,000	6,840,000
한부모가정 등 관련급여	559	777,783	100,000	375,000	600,000	1,167,600	1,813,500	3,343,20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323	988,173	175,000	500,000	900,000	1,200,000	2,400,000	3,99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104	632,126	150,000	220,000	340,000	510,000	2,090,000	2,330,000
수급가구								
모든 현금급여	9,543	4,225,575	1,074,000	2,845,240	3,930,660	5,065,100	8,754,560	20,443,580
기초보장관련급여	9,375	3,329,536	629,220	2,052,840	3,079,480	3,936,250	7,379,940	20,443,580
기초보장급여 제외 현금급여	6,764	1,346,875	360,000	1,074,000	1,074,000	1,680,000	3,114,000	7,914,000
긴급지원	357	1,450,962	280,190	752,100	1,193,890	1,914,020	3,000,000	6,638,400
노인관련급여	3,942	1,123,177	1,056,400	1,074,000	1,074,000	1,074,000	1,718,400	2,148,000
장애인관련급여	3,663	1,055,351	315,000	360,000	360,000	1,800,000	2,400,000	6,840,000
한부모가정 등 관련급여	44	455,816	50,000	150,000	300,000	708,100	1,200,000	3,078,00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218	1,136,537	200,000	625,000	1,110,000	1,300,000	2,400,000	3,99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49	635,409	150,000	220,000	340,000	540,000	2,090,000	2,330,000

급 여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신청탈락가구			_					
모든 현금급여	2,869	1,586,597	270,300	1,005,660	1,077,210	1,864,010	4,049,470	15,028,140
기초보장관련급여	1,574	1,423,824	169,380	640,410	1,132,230	1,907,430	3,672,090	11,808,140
기초보장급여 제외 현금급여	1,948	1,186,266	180,000	804,000	1,074,000	1,296,020	2,894,750	7,774,000
긴급지원	247	1,938,381	345,400	929,500	1,640,110	3,000,000	4,457,220	6,000,000
노인관련급여	1,311	1,082,880	450,000	1,074,000	1,074,000	1,074,000	1,718,400	2,148,000
장애인관련급여	439	572,205	60,000	180,000	360,000	820,000	1,780,000	2,550,000
한부모가정 등 관련급여	148	716,821	100,000	331,100	600,000	1,101,350	1,917,500	2,100,60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69	649,638	100,000	400,000	600,000	900,000	1,200,000	2,30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19	542,005	189,520	189,520	189,520	480,000	1,810,000	1,810,000
차상위가구								
모든 현금급여	3,897	1,736,111	300,000	1,174,000	1,680,000	2,040,000	3,384,000	9,459,370
기초보장관련급여	348	1,134,090	80,600	124,145	1,078,100	1,609,700	3,135,700	7,958,900
기초보장급여 제외 현금급여	3,655	1,743,081	360,000	1,201,000	1,680,000	2,040,000	3,303,400	9,459,370
긴급지원	94	1,631,463	438,960	794,000	1,338,715	2,094,200	3,000,000	4,635,820
노인관련급여	1,003	1,215,977	859,200	1,074,000	1,074,000	1,506,000	1,718,400	2,792,400
장애인관련급여	3,226	1,437,831	250,000	840,000	1,680,000	2,010,000	2,200,000	4,680,000
한부모가정 등 관련급여	367	840,968	150,000	475,000	600,000	1,200,000	1,750,000	3,343,20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36	738,611	200,000	400,000	585,000	1,120,000	1,400,000	2,00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36	675,222	120,000	238,500	480,000	600,000	2,090,000	2,090,000

〈부표 IV-4〉(2차 추출 결과)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변화

人工百科	고기시기기중 1 도내된	<b>N</b> T		_	25	70	55	0.5	(인기, 전)
수급유형	공적이전전후소득변화	N	mean	p5	p25	p50	p75	p95	max
전체가구	공적이전전 소득	17,565	275,082	0	0	100,000	413,859	1,047,316	8,443,030
	기초보장 이후 소득	17,565	435,677	0	169,620	323,991	601,719	1,199,701	8,540,708
	공적이전후 소득	17,565	531,201	88,000	288,000	399,865	711,798	1,282,098	8,540,708
수급가구	공적이전전 소득	9,666	207,069	0	0	86,982	295,920	805,000	4,000,000
	기초보장 이후 소득	9,666	476,177	158,402	282,783	339,736	600,293	1,127,256	4,000,000
	공적이전후 소득	9,666	561,504	253,470	366,473	418,618	704,912	1,181,855	4,000,000
신청탈락가구	공적이전전 소득	3,781	425,284	0	17,396	200,000	659,329	1,470,000	8,443,030
	기초보장 이후 소득	3,781	474,678	0	97,746	270,978	700,544	1,501,813	8,540,708
	공적이전후 소득	3,781	548,470	4,990	140,800	343,187	806,717	1,600,278	8,540,708
차상위가구	공적이전전 소득	4,118	296,817	0	0	100,000	500,000	1,120,396	8,000,000
	기초보장 이후 소득	4,118	304,803	0	0	100,000	506,717	1,130,000	8,140,858
	공적이전후 소득	4,118	444,217	0	130,000	290,000	652,570	1,214,600	8,140,858

〈부표 IV-5〉(2차 추출 결과) 가구특성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변화

	\ - A - \									(원피. 전)
구분	수급유형	소득	N	mean	p5	p25	p50	p75	p95	max
		공적이전전 소득	2,396	70,193	0	0	50,000	105,558	236,982	618,265
	수급가구	기초보장 이후 소득	2,396	268,490	145,307	261,681	281,753	297,073	329,640	898,708
		공적이전후 소득	2,396	378,902	269,265	366,473	380,229	400,443	470,750	988,708
노인	신청탈락	공적이전전 소득	863	226,680	0	0	103,278	336,703	796,395	2,226,268
고인 1인		기초보장 이후 소득	863	244,131	0	17,396	158,169	337,303	815,205	2,226,268
11	기구	공적이전후 소득	863	354,431	88,000	137,536	272,446	488,793	942,537	2,535,788
	차상위	공적이전전 소득	285	101,240	0	0	50,000	118,762	423,000	879,533
	가구	기초보장 이후 소득	285	102,131	0	0	50,000	120,000	423,000	879,533
	751	공적이전후 소득	285	283,858	90,000	186,850	237,396	335,305	592,000	1,089,533
		공적이전전 소득	243	163,200	0	0	100,674	262,709	500,000	784,687
	수급가구	기초보장 이후 소득	243	454,865	237,179	415,833	482,933	511,288	582,618	928,771
		공적이전후 소득	243	662,292	394,737	629,720	663,837	720,881	796,864	1,072,771
노인	신청탈락	공적이전전 소득	131	373,276	0	45,870	240,185	596,988	1,103,920	4,165,316
고인 2인	기구	기초보장 이후 소득	131	398,658	0	90,307	297,915	596,988	1,103,920	4,165,316
2 년	/11	공적이전후 소득	131	623,729	140,800	288,904	524,733	821,677	1,300,084	4,575,056
	차상위	공적이전전 소득	121	216,158	0	0	169,380	325,470	660,833	1,362,859
	가구	기초보장 이후 소득	121	216,649	0	0	169,380	325,470	660,833	1,362,859
	751	공적이전후 소득	121	509,767	174,000	300,000	464,000	654,000	988,447	1,821,045
소년	, , , , , ,	공적이전전 소득	122	95,820	0	17,396	59,126	121,941	300,674	574,457
소녀	수급가구	기초보장 이후 소득	122	457,149	183,957	345,848	429,620	564,712	741,593	1,209,930

구분	수급유형	소득	N	mean	p5	p25	p50	p75	p95	max
		공적이전후 소득	122	532,444	211,400	383,410	475,492	655,154	878,064	1,409,930
		공적이전전 소득	19	215,923	0	17,396	120,000	260,674	848,104	848,104
	신청탈락 가구	기초보장 이후 소득	19	277,000	0	70,963	143,650	487,071	1,004,757	1,004,757
가장		공적이전후 소득	19	287,526	0	70,963	143,650	487,071	1,104,757	1,104,757
	차상위	공적이전전 소득	2	100,337	0	0	100,337	200,674	200,674	200,674
	가구	기초보장 이후 소득	2	154,958	109,242	109,242	154,958	200,674	200,674	200,674
	/r <del>T</del>	공적이전후 소득	2	354,958	329,242	329,242	354,958	380,674	380,674	380,674
		공적이전전 소득	448	348,699	0	95,567	350,000	550,674	791,154	1,000,674
	수급가구	기초보장 이후 소득	448	649,948	324,090	563,105	653,160	749,713	941,111	1,169,665
		공적이전후 소득	448	679,901	374,090	592,761	676,170	949,772	949,772	1,183,910
한부모	신청탈락	공적이전전 소득	166	604,818	0	148,104	535,000	875,292	1,363,743	4,300,000
2인		기초보장 이후 소득	166	670,083	0	266,163	615,208	900,000	1,385,964	4,300,000
20	가구	공적이전후 소득	166	726,623	0	342,019	696,600	958,136	1,437,333	4,300,000
	차상위	공적이전전 소득	338	583,436	0	333,333	670,705	820,674	1,000,674	1,164,010
	가구	기초보장 이후 소득	338	599,751	0	337,367	686,062	844,140	1,020,000	1,200,641
	/ / / / /	공적이전후 소득	338	635,687	36,067	400,000	700,000	881,920	1,063,242	1,409,477
		공적이전전 소득	528	542,506	0	300,000	600,000	763,766	1,003,540	1,622,152
	수급가구	기초보장 이후 소득	528	903,109	577,419	801,168	897,673	1,014,893	1,244,767	1,885,705
		공적이전후 소득	528	931,969	617,288	840,755	916,790	1,044,398	1,259,918	1,885,705
한부모	신청탈락	공적이전전 소득	179	876,272	0	520,000	800,000	1,133,883	1,673,157	8,443,030
3인		기초보장 이후 소득	179	940,913	13,305	600,000	880,559	1,178,800	1,732,995	8,540,708
31	가구	공적이전후 소득	179	992,624	104,105	650,000	920,000	1,229,632	1,791,138	8,540,708
	차상위	공적이전전 소득	424	760,695	0	500,000	754,000	1,000,000	1,351,595	8,000,000
	가구	기초보장 이후 소득	424	795,224	115,877	548,125	800,000	1,029,321	1,352,333	8,140,858

구분	수급유형	소득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공적이전후 소득	424	843,610	140,858	600,000	838,683	1,091,807	1,412,500	8,140,858
		공적이전전 소득	1,263	77,364	0	0	50,000	100,287	300,000	1,157,207
	수급가구	기초보장 이후 소득	1,263	306,039	134,346	276,140	330,110	348,155	402,978	1,157,207
		공적이전후 소득	1,263	408,153	223,565	358,833	402,202	470,246	533,676	1,287,207
장애인	x1-51-cl21	공적이전전 소득	176	208,920	0	0	86,982	300,000	917,292	1,800,000
1인	신청탈락	기초보장 이후 소득	176	254,730	0	52,806	167,512	315,466	917,292	1,800,000
	가구	공적이전후 소득	176	302,882	0	84,366	221,629	396,854	1,000,000	1,800,000
	차상위	공적이전전 소득	1,411	72,358	0	0	16,931	100,000	310,000	1,900,000
		기초보장 이후 소득	1,411	72,807	0	0	16,931	100,000	310,000	1,900,000
	가구	공적이전후 소득	1,411	206,377	0	130,000	159,621	256,701	524,989	2,020,000
		공적이전전 소득	343	167,497	0	0	100,305	272,093	583,263	844,769
	수급가구	기초보장 이후 소득	343	525,136	288,696	467,833	542,095	590,550	743,610	1,018,879
		공적이전후 소득	343	692,959	448,215	630,748	698,243	780,270	900,770	1,063,544
장애인	x1-31-121	공적이전전 소득	76	451,430	0	36,731	366,975	727,514	1,286,656	2,315,443
	신청탈락	기초보장 이후 소득	76	498,612	0	135,352	439,543	758,065	1,311,954	2,315,443
2인	가구	공적이전후 소득	76	676,844	90,000	317,558	610,335	903,206	1,493,305	2,315,443
	-5] x].6]	공적이전전 소득	482	279,900	0	0	159,499	488,319	942,200	1,461,155
	차상위	기초보장 이후 소득	482	281,545	0	0	164,090	488,319	945,723	1,629,343
	가구	공적이전후 소득	482	508,431	41,667	260,000	432,262	711,467	1,154,872	1,803,343
		공적이전전 소득	113	463,901	0	100,000	313,316	759,801	1,300,000	2,054,794
11-11 11	수급가구	기초보장 이후 소득	113	771,823	304,737	484,537	728,353	982,469	1,446,617	2,440,662
대학생		공적이전후 소득	113	830,805	325,509	506,145	804,155	1,049,870	1,504,667	2,470,662
가구	신청탈락	공적이전전 소득	51	870,462	0	466,000	800,000	1,180,246	2,190,585	3,105,269
	가구	기초보장 이후 소득	51	934,225	0	466,000	872,730	1,239,577	2,249,936	3,105,269

구분	수급유형	소득	N	mean	p5	p25	p50	p75	p95	max
		공적이전후 소득	51	1,033,316	0	484,234	935,622	1,442,603	2,370,000	3,105,269
	차상위	공적이전전 소득	11	960,852	368,565	562,976	1,000,000	1,200,000	2,070,000	2,070,000
	가구	기초보장 이후 소득	11	962,465	380,000	562,976	1,000,000	1,200,000	2,070,000	2,070,000
	/ / / / /	공적이전후 소득	11	1,062,101	380,000	700,000	1,200,000	1,247,835	2,070,000	2,070,000
		공적이전전 소득	65	397,278	0	38,319	360,000	645,920	1,000,000	1,449,237
	수급가구	기초보장 이후 소득	65	805,821	373,659	698,957	786,957	922,626	1,211,588	1,449,237
아동		공적이전후 소득	65	874,938	387,310	746,269	866,540	1,027,440	1,236,743	1,479,237
1인	신청탈락	공적이전전 소득	48	832,896	0	482,880	845,834	1,118,758	1,534,756	2,119,202
 포함	전성달닥 가구	기초보장 이후 소득	48	892,385	166,333	694,057	900,000	1,131,732	1,644,000	2,119,202
조염 3인		공적이전후 소득	48	903,093	166,333	706,403	902,094	1,142,960	1,644,000	2,119,202
31	차상위	공적이전전 소득	18	757,369	0	550,000	773,720	1,005,427	1,266,666	1,266,666
	가구	기초보장 이후 소득	18	763,340	0	550,000	814,103	1,005,427	1,266,666	1,266,666
	/11	공적이전후 소득	18	847,655	130,000	605,574	819,543	1,150,000	1,297,819	1,297,819
	수급가구	공적이전전 소득	48	628,652	0	256,661	641,954	903,337	1,309,908	1,595,250
		기초보장 이후 소득	48	1,020,533	751,492	911,734	1,023,968	1,147,613	1,327,440	1,595,250
아동		공적이전후 소득	48	1,096,767	751,492	1,008,650	1,069,743	1,208,232	1,444,185	1,595,250
2인	신청탈락	공적이전전 소득	17	1,004,454	427,440	754,069	912,436	1,163,862	1,682,235	1,682,235
- 2년 - 포함		기초보장 이후 소득	17	1,080,956	427,440	912,436	1,027,440	1,163,862	1,682,235	1,682,235
조염 4인	가구	공적이전후 소득	17	1,092,015	427,440	916,749	1,029,524	1,163,862	1,682,235	1,682,235
4인	차상위	공적이전전 소득	8	790,875	0	375,000	850,000	1,210,000	1,457,000	1,457,000
	가구	기초보장 이후 소득	8	791,715	0	378,358	850,000	1,210,000	1,457,000	1,457,000
	751	공적이전후 소득	8	850,637	0	428,358	915,000	1,330,690	1,457,000	1,457,000
		공적이전전 소득	4,097	262,570	0	0	107,391	400,000	969,220	4,000,000
미분류	수급가구	기초보장 이후 소득	4,097	554,033	159,756	321,007	377,234	726,219	1,307,882	4,000,000
1511		공적이전후 소득	4,097	620,088	215,410	352,189	457,555	823,257	1,366,619	4,000,000

구분	수급유형	소득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신청탈락	공적이전전 소득	2,055	452,357	0	17,396	190,413	689,000	1,637,500	4,916,611
	건강물력 가구	기초보장 이후 소득	2,055	513,549	0	109,054	282,102	764,409	1,687,440	4,916,611
	751	공적이전후 소득	2,055	565,967	0	119,356	316,806	846,632	1,788,595	4,916,611
	차상위	공적이전전 소득	1,018	373,092	0	0	133,153	620,992	1,361,920	2,589,116
	가구	기초보장 이후 소득	1,018	383,654	0	0	138,650	668,251	1,364,444	2,589,116
	/ 1 1	공적이전후 소득	1,018	533,824	47,396	130,000	339,563	816,738	1,550,000	3,349,028

## 〈부표 V-1〉(2차 추출 결과) 수급유형에 따른 근로능력유무별 소득인정액

수급유형	근로능력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수급가구	없음	92	421,549	0	65,000	372,356	601,725	1,273,979	1,321,659
	있음	423	712,820	25386	491400	700000	928439	1294560	2777440
비수급가구	없음	63	1,082,925	0	417,660	979,594	1,428,711	1,966,255	6,299,916
	있음	290	1,654,281	50,000	750,110	1,130,339	1,589,675	4,052,968	31,092,000

〈부표 V-2〉(2차 추출 결과)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근로능력유무별 복지급여 수급액

급 여	N	mean	р5	p25	p50	p75	p95	max	
근로능력 없음									
모든 현금급여	92	8,831,703	2,013,800	5,457,995	9,384,690	12,016,490	14,471,060	15,163,870	
기초보장관련급여	92	7,090,242	1,420,260	4,460,210	7,461,225	9,851,680	12,109,960	14,354,170	
기초보장급여 제외 현금급여	92	1,741,461	0	360,000	1,434,000	2,400,000	5,154,000	6,638,400	
긴급지원	92	148,852	0	0	0	0	0	6638400	
노인관련급여	92	385,239	0	0	0	1,074,000	1,718,400	1,718,400	
장애인관련급여	92	1,062,370	0	0	360,000	2,010,000	3,984,000	6,070,000	
한부모가정 등 관련급여	92	1,087	0	0	0	0	0	100,00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92	143,913	0	0	0	0	0	2,40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	-	-	-	-	-	-	-	
근로능력 있음									
모든 현금급여	423	5,420,175	577,920	3,144,800	5,048,040	7,528,420	11,278,860	16,999,010	
기초보장관련급여	423	4,808,929	251,150	2,706,160	4,494,600	6,847,340	9,790,300	13,773,220	
기초보장급여 제외 현금급여	423	611,246	0	0	0	900,000	2,754,000	5,750,000	
긴급지원	423	72,590	0	0	0	0	546,000	3,000,000	
노인관련급여	423	51,796	0	0	0	0	0	1,718,400	
장애인관련급여	423	433,735	0	0	0	360,000	2,400,000	5,750,000	
한부모가정 등 관련급여	423	13,701	0	0	0	0	0	3,078,00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423	35,225	0	0	0	0	0	2,40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423	4,200	0	0	0	0	0	1,776,500	

〈부표 V-3〉(2차 추출 결과)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근로능력유무별 수급가구의 급여액

			(인기. 전)					
급 여	N	mean	p5	p25	p50	p75	p95	max
근로능력 없음								
모든 현금급여	91	8,928,755	2,234,800	5,528,540	9,429,800	12,109,960	14,471,060	15,163,870
기초보장관련급여	91	7,168,157	1,468,100	4,543,060	7,491,540	9,859,760	12,109,960	14,354,170
기초보장급여 제외 현금급여	71	2,256,540	360,000	1,074,000	1,980,000	3,144,000	5,520,000	6,638,400
긴급지원	4	3,423,593	1,055,000	1,386,135	3,000,485	5,461,050	6,638,400	6,638,400
노인관련급여	27	1,312,667	1,074,000	1,074,000	1,074,000	1,718,400	1,718,400	1,718,400
장애인관련급여	57	1,714,702	360,000	360,000	1,790,000	2,400,000	4,440,000	6,070,000
한부모가정 등 관련급여	1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9	1,471,111	300,000	800,000	1,340,000	2,400,000	2,400,000	2,40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	-	-	-	-	-		-
근로능력 있음								
모든 현금급여	415	5,524,660	1,109,640	3,210,960	5,094,380	7,569,040	11,292,990	16,999,010
기초보장관련급여	412	4,937,322	577,920	2,823,425	4,645,515	6,865,675	9,964,760	13,773,220
기초보장급여 제외 현금급여	182	1,420,644	270,000	360,000	1,167,000	2,040,000	3,478,000	5,750,000
긴급지원	25	1,228,222	538,000	730,000	933,700	1,543,000	2,889,810	3,000,000
노인관련급여	18	1,217,200	1,074,000	1,074,000	1,074,000	1,074,000	1,718,400	1,718,400
장애인관련급여	137	1,339,197	270,000	360,000	1,200,000	2,040,000	3,360,000	5,750,000
한부모가정 등 관련급여	9	643,944	50,000	100,000	342,900	784,100	3,078,000	3,078,00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18	827,778	200,000	400,000	850,000	1,100,000	2,400,000	2,40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1	1,776,500	1,776,500	1,776,500	1,776,500	1,776,500	1,776,500	1,776,500

## 〈부표 V-4〉(2차 추출 결과) 기초보장 비수급 가구의 근로능력유무별 복지급여 수급액

7 ~	NT		_	25	70	7.7	0.7	(단키, 편, 70)
급 여	N	mean	p5	p25	p50	p75	p95	max
근로능력 없음								
모든 현금급여	63	1,516,086	0	360,000	1,434,000	2,078,400	3,982,540	6,113,111
기초보장관련급여	63	352,857	0	0	0	80,600	1,859,111	3,982,540
기초보장급여 제외 현금급여	63	1,163,229	0	360,000	1,109,300	1,800,000	3,126,320	4,254,000
긴급지원	63	124,233	0	0	0	0	954,880	3,000,000
노인관련급여	63	225,581	0	0	0	0	1,718,400	1,718,400
장애인관련급여	63	558,516	0	0	360,000	790,000	1,800,000	3,144,000
한부모가정 등 관련급여	63	210,454	0	0	0	0	1,569,500	3,343,20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63	44,444	0	0	0	0	100,000	1,20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	-	-	-	-	-	-	-
근로능력 있음								
모든 현금급여	290	1,377,332	0	80,600	1,100,000	1,900,400	4,246,840	8,736,140
기초보장관련급여	290	796,652	0	0	0	1,259,300	3,647,520	6,800,510
기초보장급여 제외 현금급여	290	580,681	0	0	0	1,100,000	2,070,000	3,158,400
긴급지원	290	64,108	0	0	0	0	0	2,334,700
노인관련급여	290	138,855	0	0	0	0	1,074,000	1,718,400
장애인관련급여	290	216,947	0	0	0	0	1,560,000	2,745,000
한부모가정 등 관련급여	290	122,943	0	0	0	0	1,150,000	3,012,50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290	35,655	0	0	0	0	0	2,14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290	2,172	0	0	0	0	0	350,000

 $\langle$ 부표 V-5
angle (2차 추출 결과) 기초보장 비수급 가구의 근로능력유무별 수급가구의 급여액

								(단위: 원)
급 여	N	mean	p5	p25	p50	p75	p95	max
근로능력 없음								
모든 현금급여	58	1,646,783	161,200	440,600	1,486,500	2,258,400	4,273,200	6,113,111
기초보장관련급여	17	1,307,647	80,600	500,000	1,032,610	1,576,400	3,982,540	3,982,540
기초보장급여 제외 현금급여	49	1,495,580	360,000	500,000	1,434,000	2,006,400	3,144,000	4,254,000
긴급지원	4	1,956,675	954,880	1,001,400	1,935,910	2,911,950	3,000,000	3,000,000
노인관련급여	11	1,291,964	894,000	1,074,000	1,074,000	1,718,400	1,718,400	1,718,400
장애인관련급여	37	950,986	360,000	360,000	540,000	1,560,000	2,562,500	3,144,000
한부모가정 등 관련급여	9	1,473,178	229,800	1,109,300	1,200,000	2,000,400	3,343,200	3,343,20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4	700,000	100,000	300,000	750,000	1,100,000	1,200,000	1,20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	-	-	-	-	-	-	-
근로능력 있음								
모든 현금급여	228	1,751,870	80,600	911,090	1,404,197	2,269,000	4,501,240	8,736,140
기초보장관련급여	130	1,777,146	80,600	702,793	1,475,825	2,516,200	5,233,690	6,800,510
기초보장급여 제외 현금급여	138	1,220,271	180,000	540,000	1,100,450	1,718,400	2,680,000	3,158,400
긴급지원	14	1,327,942	395,000	932,730	1,200,450	1,792,310	2,334,700	2,334,700
노인관련급여	33	1,220,242	624,000	1,074,000	1,074,000	1,560,000	1,718,400	1,718,400
장애인관련급여	72	873,814	75,000	325,000	570,000	1,500,000	2,160,000	2,745,000
한부모가정 등 관련급여	32	1,114,174	100,000	449,300	1,100,000	1,806,750	2,062,960	3,012,500
아동,청소년관련급여	12	861,667	200,000	400,000	700,000	1,050,000	2,140,000	2,140,000
기타급여(자활인건비, 의료급여)	2	315,000	280,000	280,000	315,000	350,000	350,000	350,000

 $\langle$ 부표  $V-6 \rangle$  (2차 추출 결과) 수급유형에 따른 근로능력유무별 공적이전전후 소득변화

										(인기. 전, 70)
수급유 형	근로 능력	공적이전전후소득 변화	N	mean	p5	p25	p50	p75	p95	max
	없음	공적이전전 소득	92	356,096	0	0	235,085	555,000	1,295,920	1,527,382
		기초보장 이후 소득	92	946,950	467,111	831,487	944,770	1,073,996	1,300,000	1,662,699
수급		공적이전후 소득	92	1,101,568	723,050	1,024,691	1,097,518	1,232,215	1,437,525	1,692,699
가구	있음	공적이전전 소득	423	703,857	0	463,250	700,000	909,790	1,294,560	2,927,440
		기초보장 이후 소득	423	1,104,601	666,485	991,578	1,090,273	1,220,723	1,478,878	2,991,218
		공적이전후 소득	423	1,161,755	783,753	1,034,644	1,136,938	1,282,182	1,535,883	3,021,218
	없음	공적이전전 소득	63	843,261	0	400,000	800,000	1,320,000	1,554,932	1,999,316
		기초보장 이후 소득	63	872,665	94,406	400,000	820,852	1,320,000	1,554,932	1,999,316
비수급		공적이전후 소득	63	1,011,514	171,396	554,558	1,000,000	1,457,000	1,788,595	2,029,316
가구	있음	공적이전전 소득	290	1,028,601	0	625,000	985,186	1,358,332	2,192,859	3,791,071
		기초보장 이후 소득	290	1,094,989	94,500	713,433	1,030,120	1,400,000	2,311,345	3,791,071
		공적이전후 소득	290	1,166,972	140,858	799,077	1,097,753	1,466,533	2,324,036	3,791,071